

탐정사(매니저급 / 1급) 자료집

01

대한탐정연합회
연혁

1. 연혁

- 2006 후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논문 (민간경비(탐정) 활성화 방안 연구)
- 2010. 7. 13. 세계일보 기고 “민간탐정 법제화 시급하다”
대한민국 언론 기고 최초 탐정 명칭사용(신용정보법 공개 대응)
- 2012. 10. 15. 조선일보 기고 “공인 민간탐정시대 열려야”
- 2014. 08. 11. 서울신문 기고 “공인탐정 법제화 시급하다”
- 2015. 10. 21. 『명경찰 명탐정』 출간/ 사회안전도서관(소년탐정관) 개설(고양경찰서)
 - 04. 04. 대한공인탐정연구원 개설(중로)
 - 04. 20. 대탐연 중앙회장 일본조사업협회 연수 방문(동경)
- 2016. 06. 13. 탐정 「로고 오가미」 「캐릭터 탐도리」 특허권 상표등록(특허청)
 - 06. 13. 탐정업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헌법소원(청구인 정수상)
(연합뉴스, MBN, 매일경제 등 보도)
 - 07. 05. 신용정보법 헌법소원 적격심사(예심) 통과 및 본안심리 개시
 - 12. 10. 일본조사업협회 회장단, 대탐연 방문(일산)
- 2017. 04. 04.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출간 및 대한탐정연합회 출범
 - 06. 17. 대한공인탐정연합회 출범(강화 경찰수련원)
 - 07. 01. 대탐연 중앙회 서울사무소 개소 및 대탐연 홈페이지 개설(www.kpda.net)
 - 07. 15. 대탐연 중앙회 제2사무소 개소(일산)
 - 08. 31. 대탐연 정관, 윤리강령, 불법배제 선언문, 신조 확정
 - 09. 13. 문화일보 35면 전면보도
『셜록홈스 꿈꾸는 전직 경찰서장.. “한국도 탐정제 도입할 때 됐다.”』
 - 09. 25. 대탐연 창립 이사회(중앙회 일산 제2사무소)
 - 11. 30.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증보판(2쇄)출간
 - 12. 10. 대탐연 창립 총회 및 송년의 밤 개최
 - 12. 13. 경인일보 “공인탐정 법제화는 국제적 대세”
 - 12. 13. 대한탐정연합회 창립 총회 개최

- 2018.01. 29. 대탐연 최초 공개 정기인사 단행(국내외 지회 지부장 172명)
- 02. 05. 아주경제 기고 “탐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 02. 12. 아주경제 기고 “탐정은 가정비상약이자 통증치료제”
- 02. 20. (사)실종아동찾기 협회 MOU체결
- 02. 28. 한국민간조사협회 MOU체결
- 03. 03. 아주경제 기고 “조선공인탐정 vs 한국불법탐정”
- 03. 22. 대탐연 주사무소 서울(마포)이전 및 정회원 200명 돌파
- 04. 17. 정기 이사회 개최(경찰 공제회 회의실)
- 04. 25. 비영리 사회단체 국세청 고유번호 부여
- 04. 27.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3쇄 발행
- 05. 08. 탐정업 민간자격시험 주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초 접수)
- 06. 12. 대탐연 헌법소원 2주년, 대탐연 출범선언 1주년 기념 간담회
(경찰공제회 하늘채, 수도권 임원 40명 참석)
- 2018. 6. 28. 헌법재판소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심판 결정(선고)**
- 사실조사 등 일부 탐정업 현행법 내 기능 판시(사법해석)**
- 07. 03. 기호일보. 아주경제 아시아뉴스통신 기고
-공인탐정제도 추진 반대 변호사 기고에 부쳐
- 07. 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민간자격 최종접수/국정원 발송
- 10. 31. 정회원 창립포럼 및 제2회 정기총회 개최
- 11. 13. 경찰청장 탄원서 접수(생활정보지원탐색사 운영규정 심사 촉구)
- 11. 14. 동국대 법무대학원 업무협약 체결
- 12. 12. 필리핀 법무·탐정법인 QUANTICO(퀀티코) MOU체결 (경찰공제회)
- 2019. 01. 18. KPDA 탐정가 작곡**
- 03. 22. 문체부 한국콘텐츠진흥원 주최/주관 <콘텐츠 스타트업 리그>참가
- 04. 18. 소년 탐정가 작사

- 04. 05.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 “정보공개활성화와 정보조사 탐정의 역할”
- 05. 17. [데일리한국 전문가칼럼] “공인 탐정(探偵)제”가 도입돼야 하는 까닭
- 06. 17. 생활정보지원탐색사(탐정사) 경찰청 등록결정**

- 07. 05. 생활정보지원탐색사 문제 해설집 출간(초판 500부)
- 08. 14. 생활정보탐색사(정탐사) 감독관 운영회의 (경찰공제회 하늘채)
- 08. 14. 경찰소방안전후원연합회 MOU체결
- 08. 22. 양천 사회적기업지원센터 교육장 탐정사 특강
- 08. 30. 제1회 자격검정시험 시행(경찰공제회)
- 09. 04.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제1회 자격검정시험
- 09. 05. 가나에듀아카데미 원격교육시스템 협력 원격교육 론칭
- 09. 09. 대한탐정연합회 홈페이지www.kpda.net 구축(업그레이드)
- 09. 21. 서강대 탐정사 최고위과정 개설
- 10. 03. 제2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수도권, 서강대학교)
- 11. 02. 이주민 서울경찰청장 서강대 제1기 탐정사 최고위과정 특강**

- 11. 8.~ 성북경찰서 진주경찰서 영등포경찰서 서초경찰서 진주경찰서 남대문경찰서
송파경찰서 노원경찰서 성남수정경찰서 광명경찰서 단체검정시험
- 12. 20. 2019 정기총회(경찰공제회)
- 12. 14. 제3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서강대학교)
- 2020. 02. 04. 국회 신용정보법 탐정업 금지조항 삭제(신용정보법 제40조 현재 판시 근거)**

- 04. 19. 제4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진주)
- 05. 24. 제5회 자격검정시험 시행(광주)
- 05. 29. 광주교통방송 특별 인터뷰
- 05. 30. 서강대 탐정사 제2기 최고위과정 개강(12주 과정)
- 07. 03. 탐정명칭 사용 기념 유튜브 제작(일산 JH PLUS스튜디오)
- 07. 08. 서울동부지회 발대 및 합동 탐정사무소 We Serve 개소
- 07. 25. 탐정사 제6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서강대)
- 08. 01. 탐정사 수험서 개정판(6쇄) 출간(신용정보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 관련)

- 08. 05. 탐정 명칭 공식 사용 건인(국회 신용정보법 제40조 본문 하단 삭제 시행)
- 08. 15. 광주광역시지회 발대 및 탐정법인 유성 개소식
- 08. 29. 탐정사 제7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진주경찰서)
- 09. 05. 서강대 탐정사 제3기 최고위과정 개강(12주 과정)
- 10. 21. 탐정사 7쇄 발행(75주년 경찰의 날 기념)
- 11. 21. 탐정사 제8회 자격검정시험 시행(서강대)
- 11. 25. 경찰청 대탐연 탐정사 자격 종목변경 회신(탐정 자격증 발급 승인)
- 11. 26. 고양 일산 경찰서 검정시험
- 11. 28. 서강대 제3기 탐정 최고위과정 수료식
- 11. 29. 창원 중서부 경찰서 검정시험
- 12. 05. 서대문경찰서 검정시험
- 12. 26. 탐정사 제9회 창원권 검정시험
- 2021. 01. 04. 탐정사 수험서 8쇄 출간(1차/2차 시험과목 최초 분권) 및 김정훈 前 서울경찰청장 추천사 게재
- 01. 09.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 제4기 입학
- 01. 18. 고양 일산 경찰서 검정시험(5인 이상 집합금지행정명령 관련 드라이브인 방식)
- 02. 18. KPDA 직할 고양특례시협회 준비위 발족
- 02. 23. 김정훈 서울경찰청장 KPDA 제2대 명예회장 추대(추대패 증정)
- 02. 27. 서강대 제4기 탐정 최고위과정 수료
- 02. 28. 탐정사 제10회 창원권 검정시험
- 03. 02. 대한탐정연합회 직할 고양특례시협회 발족(교육장 시험장 행사장 설치)
- 03. 13.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 제 5기 개강(입학)

35년간 법의 수호자 봉사... 명탐정으로 '제2의 인생' 정수상 고양경찰서장 퇴임식 거행 탐정 법제화 준비·출범식도 가져

정수상(58·사진) 고양경찰서장 퇴임식이 최근 청사 4층 고양마루에서 최성 시장을 비롯해 소속 경찰관, 협력단체장 및 회원, 지역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정 서장은 1980년 서울 마포서에서 경찰에 입문해 2009년 총경 승진과 함께 경북청 의성경찰서장, 대구청 생활안전과장, 경기청 일산경찰서장, 경기2청 정보보안과장을 거쳐 지난해 1월 제54대 고양경찰서장으로 부임했다.

온화한 성품에 합리적 판단을 겸비한 정 서장은 고양시 재임 1년간 청사내 안전도서관 개관, 행신3 파출소 개소, 전국 치안체감 15위 평가 등 치안 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정 서장은 35년간의 경찰 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는 퇴임식과 함께 오래전부터 틈틈이 준비한 대한민국 탐정 법제화 준비 등 인생 2막을 여는 명탐정 출범식을 거행, 참석자들로부터 갈채를 받았다.

국내 공인 탐정 1호를 준비 중인 정 서장은 지난해 10월 '명경찰 명탐정'을 발간하고 국내 언론에 기고문 게재를 통해 탐정의 법제화 조기 도입을 요구했다.

정 서장은 “일선 치안현장에서 함께한 선·후배 동료에게 깊이 감사 드린다”며 “35년간 몸담은 경찰 조직은 떠나지만 경찰과 윈윈할 수 있도록 탐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인탐정 법제화는 국제적 추세”

대한탐정연합회, 서울 등 전국 각지 회원 500여명 모여 창립 총회

김재영 기자 발행일 2017-12-13 제11면 저작권자 © 경인일보

전국 조직망을 갖춘 대한탐정연합회(이하 대탐연, 중앙회장·정수상)는 10일 서울 용산KTX 역사 내 아이파크몰 컨벤션홀에서 전국 각 지회장, 지부장, 회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탐정시대를 선언했다.

창립 총회장에는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의 명예회장 추대사 및 수락사로 시작됐고 서울·부산·대전·대구·충청·경기 남부·경기 북부 지회 등 전국 각지 회원들이 대거 참석해 화합과 우의를 다졌다.

특히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해 전·현직 경찰 가족들의 축하 화환이 총회장 안팎을 가득 메워 대탐연의 단합을 과시했다.

총회는 공인 탐정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대탐연 신조, 불법배제 선언문 낭독에 이어 지난 4월 대탐연 출발에서 전국 조직망 가동까지 숨가쁜 일정을 보낸 대탐연 발자취 동영상 상영으로 진행됐다.

대탐연은 기존 경기북부 등 4개 지회 출범과 함께 전국 도시에 11개 지회를 결성하면서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고의 탐정시대를 준비할 기틀을 마련했다.

정수상 중앙회장은 “대탐연 창립총회는 공인탐정 법제화를 앞둔 전국 3천여 회원 동지들의 결집을 위한 장이었다”며 “대한민국 탐정 시대는 시간 문제 일뿐 OECD 대세를 거스를 수 없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 이행, 현재는 신용정보법 위헌결정 선고, 국회는 발의된 공인탐정법안을 하루빨리 법제화”하라고 촉구했다.

대탐연 전국 조직망 가동을 진두지휘한 김동식 중앙자문위원장은 “앞으로 불법탐정 위험에서 벗어나 합법탐정을 통해 대국민 서비스 만족과 안전을 보장받는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제 및 재배포 금지>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2

탐정사
로고 캐릭터
특허자료

2. 탐정사 로고 캐릭터 특허 자료

대한민국 명탐정 'OGAMI' 로고

기본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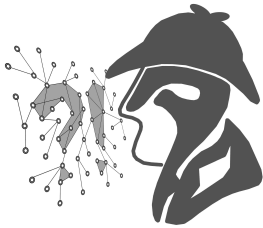


홈즈의 사냥모자(범죄사냥)와 명탐정의 “名”을 조합,
어떠한 문제(?)도 해결(!)한다는 이미지를 형상화

응용형



기본형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기계를 적용,
컴퓨터 사회에서의 탐정을 의미



기본형에 물음표와 느낌표를 네트워크 정보망으로 이미지화,
정보화 시대의 탐정을 의미

- ※ 명탐정의 오감미(오가미) 문제(?)를 해결(!)한다.
→ ‘오감미’의 발음상 편의성과 호칭상 친근성 감안,
명탐정 로고명이, 오감이 → 오가미로 진화된 것임.

대한민국 제1호 소년탐정 캐릭터

탐도리



특허 제41-0362256호

※ 탐도리는 탐정의 ‘탐’과 PODORI의 ‘도리’를 결합. 도리는 총명하고 야무지며 씩씩한 느낌이 들어 피도리 등 명사 뒤에 붙여 국민이 편하게 부르는 호칭



유튜브주소 <https://youtu.be/8AQOwZaHDMY>

탐도리 사건해결 범인검거 필살기 15단계

 출동	 탐문	 추적	 미궁	 좌절
 잠복	 채증	 관찰	 탐색	 발견
 추리	 해결	 신고	 체포	 완수

특허 제41-0362256호

탐도리 필살기 15 해설

출동	현장으로 달려가서	탐색	냉철한 통찰력으로
탐문	목격자를 찾고	발견	결정적 단서 포착
추적	도망자 입장에서 생각	추리	명석한 추리력으로
미궁	풀리지 않더라도	해결	드디어 퍼즐 완성
좌절	포기하지 말고	신고	범인은 112신고
잠복	인내와 끈기로	체포	경찰과 같이 체포
채증	증거를 수집	완수	정의는 반드시 승리
관찰	예리한 관찰과		

大探聯 탐정가

作詞 정수상

1절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오늘도 감춰진 사실을 찾는다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오늘도 숨겨진 진실을 쫓는다

아! 우리는 이름난 명탐정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

2절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내일도 못다한 난제를 헤치다
오감이 떠올라 오가미 떠올라
내일도 한맺힌 미제를 쫓는다

아! 우리는 이름난 명탐정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희망의 등불

1절

도리 도리 도리 탐도리
도리 도리 도리 찌도리
도리 도리 도리 포도리

아 천하무적 탐도리
탐도리 가는 곳에 정의가 있다

2절

도리 도리 도리 탐도리
도리 도리 도리 날쌔도리
도리 도리 도리 해결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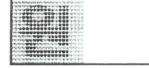
아 천하제일 탐도리
탐도리 가는 곳에 승리가 있다







발급번호 : 5-5-2016-059826032



서비스표등록원부

서비스표 등록번호	제 0362255 호
-----------	-------------

[권 리 란]

표시번호	등 록 사 항	상 표
1번	출원연월일 출원번호 공고연월일 공고번호 등록결정(심결)연월일 상품류구분수	OGAMI
	2015년 10월 23일	
	2015-0050787	
	2016년 03월 07일	
	2016-0024451	
	2016년 05월 20일	
	1	
	상표권의 취지	일반상표
	상표권 설정등록일	2016년 06월 13일 등록
	존속기간(예정)만료일	2026년 06월 13일
	지정상품 또는 지정 서비스업	제45류 :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 개인의 경력조사업, 도난차량추적업, 도난품추적업, 미아위치추적업, 시설탐정업, 사전고용 배경조사서비스업, 실종견위치추적업, 실종지위치정보제공업, 실종자조사업, 실종자추적업, 탐정조사업, 감시서비스업, 개인경호업, 경찰 및 감시서비스제공업

[상 표 등 록 료 란]

전액납부 10년분 (2016.06.13 ~ 2026.06.13)	금 액 211,000 원	2016년 06월 13일 납입
-------------------------------------	---------------	------------------

[서 비 스 표 권 자 란]

(최종권리자)	
정수상 (56022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종로 30, 503동 1004호 (일산동, 산들마을) 박동수 (7604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48, 503동 1009호 (행신동, 소만마을)	
순위번호	등 록 사 항
1번 (등록권리자)	정수상(560221-*****)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일종로 30, 503동 1004호 (일산동, 산들마을) 박동수(760422-*****) 경기 고양시 덕양구 소원로 48, 503동 1009호 (행신동, 소만마을) 2016년 06월 13일 등록
이 등본(초본)은 등록원부와 틀림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제 000193507 호)	

발급일자 : 20160810

1/2

대한탐정연합회 정회원증 ■ 정회원 증서



특허 : 제41-0362253호 (대한민국탐정로그1호)

소 속 _____
 직 위 _____
 성 명 _____
 생년월일 _____-****-****

상기자는 대한탐정연합회
정회원임을 증명함.



(유효기간 발행일로부터 1년)



www.kpda.net
 고양특례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20-38 로데오타 404호
 Tel. 02-704-1274 Fax. 02-704-1275



OGAMI 깃발 / 뱃지

120×80cm



특허 41-0362253



※ 대한민국 상징 무궁화와 오가미의 결합으로 대한민국 명탐정 로고임을 국내외에 친명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3

탐정사
창업자료(하드웨어)

3. 탐정사 창업자료(하드웨어)

1) 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의 역할

- 탐정사 국내외 플랫폼(platform) 구축
 - 탐정사 행정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변호사 경비지도사 등 간 커뮤니티 형성, 네트워크 형성 등 상호작용 견인을 위한 인프라(정보 자료 기법 등) 제공 및 참여 독려
 - ※ 행정사법 제22조 금지행위(타인의 소송이나 권리관계분쟁에 개입하는 행위) 관련
 - 탐정사 교육훈련과 등급별 자격수여
(검정시험 합격 및 대학 최고위과정과 원격교육 수료과정)
 -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자율규제(약관 및 윤리강령, 신조, 불법배제선언문 제정 배포)
 - 탐정업자 고충 처리 및 합동사무소 설치 지원
 - 탐정사 연수회(총회) 개최
 - 탐정업에 대한 홍보 및 계발
 - 탐정업에 대한 기법연구 및 수입 분야별 통계 배포
 - 탐정업 소요물품(깃발 휘장 핀셋지 엠블럼 등 제작 및 각종 서식 제작 배포)
 - 전국 지회 지부 복리 후생 지원
 - 주무부처(경찰청)에서 실시하는 방법활동, 폭력퇴출 캠페인 등 치안에 대한 협력
 - 대탐연 정관에 규정한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한 필요사업(교육사업 등) 추진
- ☛ 생활정보탐정사 등록신청(→서류보완요청 → 재신청)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접수완료 → 경찰청 등록심사 → 경찰청 등록결정(관리대장 등록)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회신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번호 부여(제2019-003312호) → 등록번호 대한탐정연합회 통보(2019년 6월17일) 및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에 따른 이행 조건 통보 및 연합회 중앙회 지도 점검 → 자격종목 명칭 변경(생활정보지원탐색사 → 생활정보탐정사, 탐색사1급 → 탐정사1급, 2020-11-25)

2) 탐정사 위임계약서(표준양식)

갑 의뢰인 성명() 주소()
을 탐정사 상호() 성명() 탐정사등록번호(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 2019-003312)
사업장소재지()

제1조(계약총론)

갑은 000 건 관련된 정보수집(분석) 및 사실조사를 을에게 위임하며 을은 탐정사 운영 규정 제7조 및 경찰청 탐정업 관련 이행조건 및 대한탐정연합회 윤리강령에 의거 위임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2조(위임내용)

- 1.
- 2.
- 3.

제3조(위임기간)

제4조(자료협조)

갑은 을의 위임업무 수행을 자료요구나 질문에 적절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비용)

자료협조의 적절성 감안 사안별 사건별로 달리 책정할 수 있으며 지불 시기는 계약서 작성과 동시 착수금을 지불하고, 추가비용 발생 시 중도금을 지불할 수 있으며, 보고서 통보와 동시 잔금을 지불한다.

제6조(보고방법)

보고서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의뢰인 요청 시 구두 통보를 병행할 수 있다.

제7조(위탁사항)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의 탐정사에게 위탁할 시 갑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위임사무의 전부 위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8조(자료반환)

을은 보고서 통보 시 갑이 제출한 자료 일체를 반환해야 하며 을의 동의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제9조(보안관리)

을의 위임사무에 대한 보안 관리는 수임 기간 중은 물론 수임종료 후에도 무기한이며 이는 을의 사무원이나 을의 위탁 탐정사 및 그 사무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제10조(계약해제)

위임업무 처리 중 계약해제 시 착수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착수금을 초과한 소요경비 발생 시 는 그 증빙서를 전제로 그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갑과 을은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간 사회상규나 법질서를 따르며 의뢰인 다짐서는 별도로 작성한다.

2020년 01월 01일

갑 의뢰인 (인)

을 탐정사 (인)

3) 비윤리기업 정보조사 보고서작성기법

의뢰·목적

○○사가 홈페이지에 그간 운용치 않던 철야 근무조를 채용, 1월 중 투입한다고 하여, 개인 투자자들이 업황이 양호한 것으로 보고 투자했으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개인투자자 모임에서 사실조사 의뢰

정보조사 범위 및 대상

- 생산 공장 및 주변 요식업소 종사자
- 출근 시간대 퇴근 차량
- 주변 야식 배달업소 배달원
- 생산 공장 내 야간 소등 점등 상황
- 청소원 경비원 등 비정규직 회사원

중간보고

유가치 정보

배달원으로부터 “심야 야식 배달 없다” “저녁 배달 시 평소 숙직 직원 외에 못 보던 얼굴 없다” “공장 쪽에 불이 켜 있으나 인기척 없다” 는 정보 수집

- 1차 정보조사 결과 회사 공고는 허위 사실로 추정되나 철야 조는 생산 공장에 투입 되는 것으로 소수 투입 시 눈에 띄일 정도의 변화가 없을 수도 있음
 - 회사에 문의 정확한 철야 조 투입 인원 및 근무 시간 확인 요망
- ※ 문의 내용 증거 자료화 및 제출 요망

최종보고

- 회사의 홈페이지 공고는 허위 사실로 판단(90% 내외 확실시)됨
 - 유 가치정보, 정보조사 결과 사실로 판명
 - 아침 출근시간대 공장에서 나가는 승용차 20대, 10일 간, 각 각 추적 한 바 철야 조 퇴근 차량이 아니고 외근 직원 차량으로 판명 (채증)
 - 의뢰자 제출 녹취록(20명 투입 운운 회사 주담 답변 통화 내용) 사실 조사 결과 모두 허위 사실로 판명

2021 - 01 - 01 오가미 탐정사합동사무소 대표탐정사 오가미

첨부: 채증 자료 30건(외근 직원 차량 등)

- ※ 보고 사실 정도 구분→판단됨 > 예상됨 > 추정됨 > 배제할 수 없음
- ※ 당사의 보고서는 귀하의 의사결정을 돕기 위한 한시적 조사 자료임으로 의뢰 건에 대한 법적 사실적 판단과 결정은 귀하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진행되오며 당사와는 무관함을 알려 드립니다.

4) 소행 정보조사 보고서 작성기법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소행조사 보고서는 공개장소에서의 장면과 배경을 촬영하고 일시, 시간, 장소를 적시하는 사진첩을 만들어 매 사진 하단에 상황 설명서를 붙이고 최종 정보조사 판단을 기재하는 형식이다.

이는 경찰 채증 사진첩과 유사하나 법규에 어긋나는 조사는 금해야 한다.

또한 촬영 시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전신 촬영이나 인물 특징을 포착하는 촬영 기법으로 대상자가 특정되는데 그쳐야 할 것이다.

5) 기업 상업 고용정보조사 보고서

- ① 직장에 제출된 대상자 성명 주소 상위여부조사 개명여부조사 실거주지조사 등
- ② 전전 직장 조사
- ③ 최종직장(의뢰인 제출)
퇴직사유조사(개인사정, 회사사정 등), 동료평가조사, 상사평가조사 등
- ④ 사회경력(의뢰인제출)
고용회사에 제출한 내용과 상위여부조사
- ⑤ 근무태도
전 직장, 전전 직장 등 상대 세평조사
- ⑥ 사상이념
중도를 주축으로 좌우경도현상 조사
- ⑦ 생활정보탐색
이성 관계, 동호회 활동, 인맥, 이혼 재혼 동거 별거 및 자녀 등 가족관계 조사
- ⑧ 경제상태 조사
주택 자동차 소유, 무주택 전월세 여부 등
- ⑨ 건강상태
병의원 출입, 요양원 입원 전력 등
- ⑩ 종합소견(정보판단)
1page 보고서 원칙

6) 탐정사 사건처리부(표준양식)

대한탐정연합회 탐정사 사건처리부(표준양식)

구분 일자	의뢰인 인적사항			처리영역				처리결과			처리내역	범죄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개인	기업	공익	국외	미결	완결	위탁	개조식 1page작성 별첨	신고	통보

※ 처리내역은 개인정보 삭제 후 3년 보관(경찰청 지도 점검 시 제출) 여타 사항은 1년 보관

7) 탐정사(매니저급/ 1급) 수입금지사항

-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사실
- 기업의 영업비밀과 독창적인 연구개발 사실
- 헌법상 보장되는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등에 대한 조사
- 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 사생활침해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
- 동일 건 쌍방 동시 수입

8) 탐정사(매니저급/ 1급) 준수사항

- 자격증 양도 대여 금지
- 개업 폐업 휴업 시 대한탐정연합회에 신고
- 적정비용 청구
- 사건부 작성보관
- 계약내용 서면 교부
- 교육의무
- 대외비 자료 보안만전
- 업무내용 보안만전
- 대탐연 정관 윤리강령 신조 불법배제선언문 숙지 및 준수
- 경찰청,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운영규정 숙지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탐정업 관련 직역

구 분	업 무 범 위
자격관리기본법 (제17조 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 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2. 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찰청 및 직능원 등록 (제2019-003312호)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 7 조 직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代行) ▶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신고 등의 대리(代理) ▶ 행정 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 및 확인
변호사 (변호사법 제3조, 제109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임 또는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사무 ▶ 변호사가 아니면서 대가를 받고 소송사건·비송사건·가사조정 또는 심판사건·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기타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사건, 수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수사사건 또는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중인 조사사건 기타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대리·중재·화해·청탁·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작성 기타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 알선 금지

구분	업무범위
<p>법무사 (법무사법 제2조 제3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2. 법원과 검찰청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작성 3. 등기나 그 밖에 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4.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5.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사건과 「국세징수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공매사건에서의 재산취득에 관한 상담,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무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사무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법무사가 아닌 자는 법무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p>손해사정사 (보험업법 제188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손해발생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제출의 대행 5. 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회사에 대한 의견의 진술
<p>신용조사업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용조회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2.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3.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4.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행사하는 행위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한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업자에게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에 한함) ▶ 신용정보업자등의 금지사항(제40조) 2020.2.4. 탐정업 금지조항 삭제 공포 및 2020.8.5. 시행
<p>변리사 (변리사법 제2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하여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한 대리 및 그 사항에 관한 감정 기타의 사무

일본 탐정 수임 필수서식

1) 수임계약체결 전(前) 의뢰인 상담 시 서면교부 설명용 서식

- 탐정업자의 상호 성명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
- 탐정회사의 광고 및 선전 명칭 과 광고내용
- 탐정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는 일
- 탐정업자와 사무원의 비밀준수의무 규정 사항
- 제공가능한 탐정 업무
- 수임업무의 타 탐정업자 위탁에 관한 사항
- 수임업무의 처리비용 등 의뢰인이 지불해야 하는 금전의 개괄 산출액과 지불시기
- 계약해제에 관한 사항 및 환불규정
- 수임업무에 관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2) 수임계약체결 후(後) 위임계약서 서식(영구보관)

- 탐정사의 상호 명칭 주소 및 법인의 경우 대표자
- 수행계약을 체결한 탐정사의 성명
- 조사내용(별도의 사건부 작성은 선택사항) 기간 및 방법
- 조사결과의 보고방법 및 기한
- 타 탐정사에 대한 위탁 사항
- 의뢰인이 지불해야하는 수임비용 지불시기 방법
- 계약해제조건 및 환불규정
- 수임업무 중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한 사항
- 법령준수 및 비밀유지

3) 고용 정보조사 보고서 작성기법

- 인적사항 → 주소 등 기재(신고)사항 확인
- 최종학력 → 고교·대학·대학원 입학, 졸업, 중퇴 등 기재(신고)사항 확인
- 최종직장 → 입사, 퇴직, 근무기간 기재(신고)사항 확인
- 퇴직이유 → 개인사정, 회사사정, 해고, 불명 등 4단계
- 사회경력 → 상위없음, 거의 상위없음, 일부허위, 거의 허위 등 4단계
- 사상이념 → 극우, 보수, 중도, 진보, 극좌 등 5단계
- 근무상황 → 초양호, 양호, 보통, 불량, 초불량 등 5단계
- 인품평판 → 상 동
- 생활상황 → 상 동
- 경제상황 → 상 동
- 건강상황 → 상 동
- 가족상황 → 상 동

조사 소견(정보 판단)

지장 없음, 우선 지장 없음, 지장 있음, 초지장 있음, 무 판정 등 5 단계

조사소견(정보 판단) 근거 → 3S 보고서 작성 원칙 의거 1P 이내 압축

가정환경 ↑ 배려심 ↑ 근면 성실 ↑ 자로서 고용에 지장 없는 자라고 판단함

4) 보고서 및 관련자료 보관확인서

수입자: 매니저급 탐정사 홍길동

나는 조사 수입자를 상기의 자로 정하고 조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를 아래와 같은 기한 내에 보존(보관)을 의뢰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상기 자의 파기권한을 인정합니다. 이에 본 확인서에 서명날인 합니다.(단,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까지

- 의뢰인 성명
- 주소
- 연락처
- 2020년 1월 1일

5) 조사보고서 수취확인서

나는 이번의 조사보고서 및 관련하는 자료를 「 」에 한해 확실히 받았으므로 본 확인서에 서명 날인 합니다. 「보고서 매, 사진 매, 기타()」

2020년 1월 1일 의뢰인(서명날인)

6) 표명확약서

나는 조사 위임계약서에 서명 날인 함과 동시에 조사보고를 제1항의 사항에 이용하지 않는 것과 제2항 기재대로 확약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1항

1. 프라이버시 침해
2. 스톡커 행위 등
3. 공익침해행위
4. 이적 행위
5. 각 종 법령에 저촉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6. 치안교란행위
7. 범죄 행위
8. 그 외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

제2항

1. 조직폭력의 구성원 또는 이적단체나 반사회적세력과 관련 없음

※ 이 확약이 허위인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또는 이 확약에 반하는 상태에 이르렀을 경우는 위임계약을 해제하여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아울러 나는 이 표명확약서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아 이해했으므로 서명날인합니다.

주소

2020년 1월 1일

전화번호

의뢰인(서명날인)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4

탐정사
창업자료(소프트웨어)

4. 탐정사 창업자료(소프트웨어)


1) 창업 분야 총론

- 스톡 데이터 폭력 정보조사
- 실종자 미아 추적조사
-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정보조사
- 도난 분실물 장물 은닉재산 추적조사 및 범죄원인 증거조사
- 보복범죄 정보조사
- 보험사기 정보조사(보험회사, 우체국과 협업)
- 기업 개인의 고용 평판 정보조사
- 가정사 소행조사(양육 후견 교제 등 사실관계 조사)
- 공익침해정보조사(국가 지자체 등 보상금 포상금 전제)
- 변호사의 정보조사 의뢰 수입
- 행정사의 사실조사 의뢰 수입
- 국정원과 경찰의 정보조사 의뢰 수입
- 기계경비업 출동현장 정보조사 수입
- 국외출장 여행지 정보조사 수입
- 개인 기업의 현안사 정보분석 및 판단서 제공
- 장기미제사건 추적조사
- 사건사고 현장 증거찾기
- 기업보안유출감시(용의자 추적 및 오프라인 접촉현장 촬영 등)
- 기타(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 수행

2) 창업분야 각론(국내외 네거티브 탐정제 실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비교분석】



- 주관 : 대한탐정연합회/  서강대학교 | 게임&평생교육원 탐정 최고위과정
- 후원 : 실종아동찾기협회(사)/ 연세경찰행정연구회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입니다.

오늘 토론회를 마련해주신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에 참여하시는 각계각층 전문가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대한탐정연합회의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청구인 정수상)으로 경찰청 등록 탐정 시대가 열리고 이어 국회에서 동 법 탐정 금지조항이 개정(삭제)됨으로서 수십 년 탐정 흑역사를 마감하고 지난 8월 5일 학수고대하던 탐정업이 열렸습니다.

따라서 오늘 탐정업 관리법 입법 촉구 토론회는 8월 5일 이전의 슬한 탐정허용을 촉구하는 토론회와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으로 허용된 탐정을 어떻게(소관청과 직무범위 등) 관리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공청회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탐정 관리 시행착오 최소화 방안으로 우리보다 100여 년 이상 앞선 탐정 대국 일본의 탐정 관리법(적정화 법)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탐정사범이 국민친화적으로 보완되어 역울하고 답답한 공권력 소외 지대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친근한 상담역이 되도록 기원하면서 발제자 토론자 참여자 제위의 분발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대한탐정연합회장 정수상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5157
------	------

발의연월일: 2020. 11. 10.

발 의 자: 이명수·강기운·김희국
성일중·최형두·정희용
홍문표·추경호·박덕흠
윤상현·허은아·조경태
김형동 의원(13인)

제안이유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실종된 가족의 소재탐지를 의뢰하거나 지적재산권 피해자가 신속히 범인과 피해상황을 파악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려는 경우 등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 또는 고소하여도 만족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런 경우 속칭 ‘심부름센터’에 의뢰해 문제해결을 시도하여 각종 불법행위가 자행되거나 자력구제를 도모하다가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빈번함.

현실적으로는 소재불명인 미아나 실종자에 대한 조사,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재산의 회수 외에 변호사의 의뢰를 받은 민·형사사건의 소송준비자료 수집과 조사 등의 분야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적 수요로 인해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민간조사사)는 8,000여명이며, 탐정관련 20여개의 민간단체가 난립하고, 그 단체에서 30여개 종류의 각종 탐정관련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2020년 2월 4일 탐정사무소 설립을 가로막아 온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가 개소되고, 관련 단체가 우후죽순 난립하여 탐정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할 우려가 있음. 또한, 일정한 자격기준이 없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가 있어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가 심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위와 같은 국민의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립해 있는 탐정(민간조사사), 심부름센터의 불법 조사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탐정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탐정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탐정업자들의 활동을 지도·관리·감독하고, 탐정사의 권한 오남용에 의한 불법행위 시 가중처벌을 통해 업무의 적법성을 담보하여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절한 지도·관리·감독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탐정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함(안 제2조제1호).
- 다.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안 제6조제1항)
- 라. 탐정사가 탐정업을 하려면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탐정사와 탐정법인은 탐정사 협회에 가입하여야 함(안 제10조, 제13조 및 제38조).
- 마. 탐정업자의 권리·의무로서 의뢰건조사부의 작성·보관, 계약서의 작성 및 교부, 수집·조사의 제한, 손해배상책임, 비밀누설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
- 바.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3조).

- 사.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사협회를 둠(안 제37조).
- 아. 경찰청장은 탐정업자 및 탐정사협회를 지도·관리·감독하도록 하고, 탐정사의 자격 취소 및 정지, 탐정업자의 등록이나 설립인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법률 제 호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률은 탐정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정한 지도·관리·감독을 통해 업무수행의 적법성을 담보함으로써 국민의 권리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탐정업무”란 탐정사가 기업이나 개인 등 타인의 의뢰를 받아 계약을 맺고 보수를 받으며,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의뢰받은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을 통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정보 등을 수집·분석하여 그 결과를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2. “탐정사”란 제6조에 따른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3. “탐정업”이란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4. “탐정업자”란 제10조제1항에 따라 탐정업을 등록한 탐정사와 제13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탐정법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탐정사 및 탐정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원칙) 탐정사는 탐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하여야 하며, 헌법상의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타인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탐정사의 자격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탐정사가 될 수 없다.

1. 19세 미만인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제41조제1항에 따라 탐정사의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6조(탐정사 자격시험 등)

- ① 탐정사가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등록심사·결정하여 등록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시험시기·시험과목·시험방법·시험의 일부면제 및 자격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 ① 탐정사 자격취득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를 둔다.
 1. 탐정사 자격시험의 과목, 문제 등 시험에 관한 사항
 2. 시험 선발인원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일부면제 대상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탐정사 자격의 취득과 관련된 중요사항

- ② 탐정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격증 등의 양도·대여 금지)

- ① 탐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탐정업무를 행하게 하거나 탐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탐정사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탐정사가 아닌 사람은 탐정사,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장 탐정업의 등록

제10조(등록)

- ① 탐정사가 탐정업을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된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경찰청장은 등록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등록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41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폐업 신고를 한 경우로서 업무 정지기간(폐업에 불구하고 진행되는 것으로 본다)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③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자가 그 영업을 개업·폐업하거나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휴업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휴업한 탐정업자가 2년이 지나도 업무를 재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폐업한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 개업·폐업 및 휴업 신고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무소 설치 및 명칭 등)

- ① 제10조에 따라 등록을 한 탐정사는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
- ② 탐정사는 2개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 ③ 탐정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탐정사무소라는 문자를 포함시켜야 한다.
- ④ 탐정사가 아닌 사람은 탐정사무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장 탐정법인

제12조(탐정법인의 설립) 탐정사는 탐정업을 조직적·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탐정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제13조(인가) 탐정법인을 설립하려면 구성원이 될 탐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구성원 등)

- ① 탐정법인은 3명 이상의 탐정사로 구성한다.
- ② 탐정법인은 구성원이 아닌 탐정사(이하 “소속탐정사”라 한다)를 고용할 수 있으며, 소속탐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탐정법인은 제1항에 따른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15조(정관기재사항) 탐정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탐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출자(出資)의 종류와 그 가액(價額) 또는 평가의 기준
4. 구성원의 가입·탈퇴와 그 밖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6. 탐정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6조(설립등기)

- ① 탐정법인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2. 구성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탐정법인을 대표할 구성원의 주소
 3. 구성원의 출자의 종류·가액 및 이행 부분
 4. 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5. 존립기간이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또는 사유
 6. 설립인가의 연월일
- ③ 탐정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7조(법인 명칭)

- ① 탐정법인은 그 명칭 중에 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② 탐정법인이 아닌 자는 탐정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분사무소) 탐정법인은 분사무소임을 표시하고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업무집행방법)

- ① 탐정법인은 법인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며 구성원 중에서 그 업무를 담당할 탐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정사는 지정된 업무를 수행할 때에 그 탐정법인을 대표한다.
- ③ 탐정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법인명의를 표시하고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탐정사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20조(설립인가의 취소) 경찰청장은 탐정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수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해산)

- ① 탐정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구성원 전원의 동의
 3. 합병
 4. 파산
 5. 설립인가의 취소
- ② 탐정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협회를 경유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합병)

- ① 탐정법인은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면 다른 탐정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13조, 제15조 및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3조(준용규정)

- ① 탐정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장을 준용한다.
- ② 탐정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合名會社)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탐정업자의 권리·의무

제24조(수수료)

- ① 탐정업자는 탐정업무 수행의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③ 탐정업자는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뢰건조사부의 작성·보관)

- ① 탐정업자는 의뢰건조사부를 비치하고, 의뢰받은 내용을 의뢰건조사부에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뢰건조사부의 기재내용·보관방법·보존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뢰인의 확인) 탐정업자는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받은 경우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의 제시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뢰인이 본인이거나 그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확인방법 및 내용 등을 의뢰건조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7조(계약의 체결)

- ① 탐정업자가 의뢰인과 탐정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뢰인이 계약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1. 탐정업자의 성명(탐정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사무소의 명칭(또는 상호) 및 주소
2. 계약을 체결하는 탐정사의 성명 및 계약 연월일
3. 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4. 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5.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6. 수수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7. 계약의 해제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8. 의뢰인으로부터 해당 의뢰내용에 관한 조사결과를 범죄행위 또는 기타 위법한 행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내용
9. 작성하거나 취득한 자료의 처분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경찰청장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탐정업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탐정업자에게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제28조(수집·조사의 제한) 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사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9조(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 등)

- ① 탐정업자는 사실조사를 의뢰 받은 내용에 위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거부하여야 한다.
- ② 탐정업자는 의뢰받은 내용의 사실조사 결과가 범죄행위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것을 안 경우에는 해당 사실조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제30조(탐정업의 수행원칙)

- ① 탐정업자는 탐정사가 아닌 사람에게 탐정업을 수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탐정업자는 당사자 한쪽의 의뢰를 받아 사실조사한 것에 관하여는 상대방을 위하여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양쪽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③ 탐정업자는 의뢰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또는 업무완료 시에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탐정업자는 탐정업무를 수행할 때에 가출인·실종자 등 소재 파악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는 그 대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그 소재에 관한 사실조사 내용을 의뢰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탐정업자는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려서는 아니 된다.
- ⑥ 탐정업자는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의뢰범위 초과행위의 금지) 탐정업자는 그 의뢰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무원)

- ① 탐정업자는 그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무원을 둘 수 있다.
- ② 탐정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1항에 따른 사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 1. 19세 미만의 사람
 -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③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이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④ 사무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탐정업자의 행위로 본다.
- ⑤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손해배상책임)

- ① 탐정업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탐정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보장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에 따른 탐정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또는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4조(등록증 등의 게시) 탐정업자는 등록증(탐정법인의 경우에는 인가서를 말한다), 의뢰건조사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5조(비밀의 준수 등)

- ① 탐정사와 그 사무원 또는 탐정사이었거나 그 사무원이었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탐정업자는 탐정업무 수행 시 생성되거나 취득한 문서, 사진, 그 밖의 자료(전자적·자기적 방식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을 포함한다)가 유출되거나 불법 도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탐정사 및 사무원 교육)

- ① 탐정업무를 수행하는 탐정사와 그 사무원은 전문성과 윤리의식 향상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탐정사협회

제37조(협회의 설립 등)

- ① 탐정업자의 자질 향상, 품위 유지 및 윤리경영을 위하여 탐정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협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칙을 정하여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⑤ 경찰청장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가입의무) 제10조에 따라 등록한 탐정사 및 제13조에 따라 인가받은 탐정법인은 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9조(공제사업)

- ① 협회는 제33조에 따른 탐정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규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장 지도·감독

제40조(지도·감독)

- ① 경찰청장은 탐정업자의 업무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탐정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청장은 탐정업자의 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탐정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1조(자격취소 등)

- ① 경찰청장은 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탐정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탐정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한 경우
 - 4. 제2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경찰청장은 탐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탐정업무 수행 중 부정이나 비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부정 또는 비위행위의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등록취소 등)

- ① 경찰청장은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탐정사가 사망하거나 폐업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탐정업 등록을 한 경우
 3.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4.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5.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 중에 탐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 ② 경찰청장은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40조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③ 경찰청장은 탐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수료의 명세서를 의뢰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경우
 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건조사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3.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의 신원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계약서의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를 위반하여 각 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한 경우
 6. 제29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사실조사에 대하여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 결과가 불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사용될 경우 알고 있음에도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를 위반하여 탐정업을 수행한 경우

- 8. 제31조를 위반하여 의뢰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9. 제3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사무소에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 10.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
- 11. 제36조를 위반하여 탐정사 또는 그 사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43조(청문)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1. 제20조에 따른 설립인가의 취소
- 2. 제41조에 따른 자격의 취소
- 3. 제42조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 ① 이 법률에 따른 경찰청장의 권한은 관할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36조에 따른 탐정사 및 사무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협회 또는 관계 교육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임·위탁과 협회 또는 교육전문기관의 선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벌칙

제45조(벌칙)

- ① 제28조제1호를 위반하여 국가의 안보 또는 기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 조사를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관련 상대방을 폭행·협박, 체포·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 또는 위력 등을 사용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에 따른 탐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탐정업을 한 사람
2. 제8조를 위반하여 탐정사 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사람 또는 이를 양수·대여 받은 사람
3. 제28조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 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한 사람
4.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거짓을 알린 사람
5. 제31조를 위반하여 업무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사람
6. 제35조를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탐정업을 한 사람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은 사람
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외의 명목으로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청구한 사람
3. 제29조를 위반하여 위법한 업무를 거부하지 아니하거나 사실조사를 중단하지 아니한 사람 및 그 의뢰인
4. 제32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업무를 보조하게 한 사람
5. 제4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한 사람

제46조(양벌규정) 탐정법인의 사원인 탐정사, 소속탐정사 또는 탐정사의 사무원이 그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탐정법인 또는 탐정사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 제11조제4항 또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사람
2.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탐정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탐정법인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8조를 위반하여 탐정법인의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
6. 제25조를 위반하여 의뢰건조사부를 작성·보관하지 아니한 사람
7. 제26조를 위반하여 의뢰인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람
8. 제30조제2항을 위반하여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실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9. 제34조를 위반하여 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10. 제36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경찰청장이 부과·징수한다.

탐정사 직무범위와 소관청 중심 입법 전략



특허 제41-0362253

정수상(대한탐정연합회장/ 탐정사(PM/PD) 자격시험관리단장)

1. 들어가며

칼국수에 칼이 없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일본 탐정법에는 정작 탐정의 직무 범위가 없다. 왜 그럴까? 한국과 같이 공권력 사각(소외)지대나 경찰 공공의 원칙이나 무기 대등의 원칙이나 정보 비대칭 사회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정보조사 서비스 수요 중 핵심 분야인 수사 재판 중 사건에 대해 변호사법의 확대 해석을 무기로 탐정의 직무 범위에서 차단해 버리는 反 OECD 的 과잉금지로는 탐정제도 도입의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탐정 50명이라는 양적 측면과公安 경찰, 언론, 내각조사실(국내외 공개정보수집 분석), 대기업 전략기획실, 군 정보기관, 세계탐정협회 등과 공조하는 질적 측면에서 일찌감치 탐정 대국으로 부상했고 경찰, 탐정, 경비업(세콤) 간 이른바 치안 3륜이 구축되어 동경 치안이 세계 최고 반열에 올라선 것이다.

우리 탐정 관리법도 일본의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변호사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변호사의 업무 범위 절대 불가침이라는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되어 수십 년 전부터 인권유린, 사생활 침해를 침소봉대하며 업무 범위 최소화 초점을 맞추고 탐정을 옥죄려 하지만 100여 년 탐정 역사를 가진 OECD 36개국은 일본과 같이 업무 범위 최대화(네거티브 制)로 국민의 애환을 같이하고 있음에 지목해야 하며 OECD 탐정과 교류하고 협업해야 하는 지구촌 시대에서 우리 탐정 제에 대한 답을 도출해야 한다.

○17대 이후 국회는, 탐정관련 법안의 소관청 지정에 있어 탐정이 일체의 수사권이 없음에도 관리감독 기관을 경찰청(수사국)으로 고착하는 우를 범함으로서 부지불식간에 마치 탐정이 수사를 하는 양 인식되어 대한변협에게 탐정의 100가지 장점은 뒤로 한 채 인권과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빌미만 제공하게 되었고 법무부에게는 소관청 주장 명분만 제공

- 이러한에도 경찰청은 비권력적 정보조사 탐정업에 걸맞는 담당부서(수사국→생활안전국) 이관이라는 당연한 해답은 도외시한 채, 매년 형식적으로 반복되는 공청회(수사국 주관)를 통해 직무범위 최소화(포지티브 시스템)에만 올인
- 한편 대한탐정연합회는 탐정업 금지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헌법소원에 대한 전원재판부 결정(헌재 2016헌마 473, 2018.6.28. 청구인 정수상) 선고(사법해석)를 견인해 가운데 이에 근거한 경찰청 심사 및 결정으로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등록(직능원 2019-003312)되었고 이에 근거 2020년 2월 4일 신용정보법의 탐정(업) 금지조항이 국회에서 개정 공포되어, 지난 8월 5일(시행)됨으로서, 한국도 OECD처럼 탐정 명칭을 업무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대열에 합류
- 이에 21대 국회는, 경찰청(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탐정업 등록(민간자격 발급기관 운영규정)¹⁾ 이후 흥신소 등 미등록 탐정 발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피해확산이 우려되자 등록제(경찰청)와 손해배상 및 처벌규정 등을 명시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 이에 본 발제는, 경비업법 개정을 통한, 시행령 제정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역대 국회 탐정법(안)에 명시된 소관청과 직무범위의 문제점을 적시하고 특히 소관청의 담당부서를 일본과 같이 경찰청 수사국이 아닌 생활안전국으로 정함으로서 법무부와 소관청 논쟁을 불식시키는 동시에 네거티브 탐정제를 견인하고자 함.

1) 경찰청 등록 탐정사 운영규정 제7조(직무범위)

①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 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따른다.

2. 국내외 네거티브 탐정제 실태(직무범위 및 소관청 중심)

1) 발원 및 변천

인류의 역사는 ‘정탐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구약성서 민수기는 모세의 가나안 땅 정탐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종교적 관점은 논외로 하고 민간에 의한 생존(생활)정보 정탐의 기원은 기원 전으로 아득히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중국도 기원전 6세기 손자병법의 백미 용간 편에 정탐의 중요성과 그 기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 정탐 DNA는 최근 중국 전역에 인기리 방영되고 있는 추리 미스터리 드라마 탐정사로 이어지며, 트럼프에 의해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이 전부 간첩이라고 지칭되고 있으며 푸틴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직업은 탐정과 매춘이라 했으며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탐정 활동이 인정되고 있다.

영국의 최초의 탐정기관은 1748년 런던의 보스트리트의 치안판사였던 H.필딩이 창설한 ‘보스트리트러너’라고 하는 자치체(自治體)에 속한 조직이다.(1829년에 창설된 스코틀랜드 야드 즉 런던 경시청에 흡수되면서 첩보 수집 임무 수행)

아서 코넬 도일이 만들어낸 명탐정 ‘셜록 홈스’가 활동한 영국에선 1748년부터 탐정 기관이 들어선 이래 1만7000여 명의 탐정들이 활동하고 있다. 2001년 탐정 제도가 포함된 ‘민간경비산업법’이 제정돼 국가에서 탐정 활동에 대해 관리 감독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소송 중인 개인이나 기업 등이 사실 조사를 위해 탐정을 고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861년 링컨 암살 계획(볼티모어 음모사건)을 막아낸 국제탐정회사 핑커튼(정보장교 출신) 전미탐정사무소가 탐정·경호·경비업을 망라하며 급성장했고, 1996년 한국의 OECD 가입을 계기로 기업 보안관리·지적재산권 보호 컨설팅 명목으로 국내에도 진입하고 있으며 탐정의 일종인 언더커버(정규직 외 비밀 요원)가 연방정부 등 40여개 국가기관에 고용되어 주로 신분 은닉·위장이 필요한 단속이나 감시 및 정보 수집에 활용되고 있다.

한편 조선은 국가에 봉사하고 임방(본부)으로부터 모종의 통문을 받으면 시전(시장)을 견어치우는 등 모든 일을 중단하고 탐정(정탐), 운반, 통신 등에 나서는 상인이 있었다.

이러한 조선 보부상은 순수한 상인조직이라기 보다 보따리상에 편승한 탐정으로 임진왜란(1592) 이후에는 중앙의 세도가나 지방의 호족들에게 고용 의뢰되어 하명(의뢰)된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 조사하거나 재정 및 사병보유 상태, 혼사 계약 등 관련 인물 정보, 사람과 물건의 소재, 민심 등 각종 현장 정보를 수집하여 하명(의뢰)인에게 보고하는 등 사설탐정 역할도 일본보다 일찍이 수행하였다.

왜란 재란 호란 등 전쟁 시에는 공인탐정인 보부상들이 적정을 정탐하여 관가에 보고 하였으며 홍경래 난등 민란 시에는 조정으로부터 이를 정탐하는 임무가 부여되었고 특히 윤봉길 의사의 항일 독립 운동에 이르러 예덕 상무사(조선 말기→1954년 까지 조직 유지) 등 보부상 조직은 전국 각지의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 및 각종 자료, 군자금 모금 대상 및 매국세력 인적사항 등을 수집한 후 일제의 눈을 피해 만주 독립군에 전하였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조선 총독부(1911)가 전국 1000여 곳의 장시(5일장) 및 주막, 가가 호호를 떠돌며 정보를 수집하는 보상과 부상(보부상)을 단속키 위한(정보수집 및 사실 조사 봉쇄) 신용고지업 취체(단속)규칙을 선포하고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조선 명탐정 보부상의 상거래 활동에 편승한 정탐 운반 통신 등 공인탐정 역할은 침체에 접어든다.

해방 후 산업 활동이 증가하고 경찰력이 대공수사와 정권유지에 편중되면서 사적안전이 소홀해 지는 틈을 타고 흥신업이 성행하며 사회 문제화 되자/ 5.16 군사정권이 일제의 신용고지업 취체규칙을 문제의식 없이 계승한 흥신업 단속법을 제정(1961)하고/ 그로부터 60여년이 흘렀음에도 조선 공인탐정을 계승하는 한국 공인탐정은 여전히 어디에도 없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선 사이버 탐정인 불법심부름센터 등이 온오프라인에서 한국 대표 탐정을 자처하면서 일본 등 다국적 탐정 회사, 국내외 묻지 마(의뢰 목적) 고객과 거래하며

즉 일제가 조선 보부상을 교묘하게 말살하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역사적 부활을 우리 군사정권이 원천봉쇄한 것이다.

이렇듯 여말선초 행상꾼 보부상이 조선 중후기에 이르러 호족들의 가정사 및 당파싸움 정보조사와 전쟁 시 조정의 통문을 받고 적정을 정탐하는 등 주변국에 필적할 사설탐

2) 국내 시장 분석과 전망

8월 5일부터 드디어 국내에도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서비스 대행 등록 탐정 시대가 열린다.

이는 「2018 현재의 사법해석(2016헌마473 청구인 퇴직경찰 정수상) → 2019 경찰청의 행정해석(탐정업 관련 민간자격 등록결정) → 2020 국회의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 삭제 공포(법률 제16957호)」를 순차적으로 거쳐 시행된 것으로 수십 년간 불법의 흑역사에 갇힌 한국 탐정이 봉쇄와 쇄국의 빗장을 풀고 국내외에 출사표를 던지는 것이다.

탐정업 수요측면에서는 최숙현 선수(철인3종 국가대표) 같이 수사나 소송 관련 자구행위 적(的) 증거수집이나 사실조사에 내몰려 고군분투하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좌절하고 절망(자살)하는 정보(증거)적 사회적 약자들의 방어정보나 증거수집 및 분석을 대행하는 정보구매 시장(미 영 일 불 독 등 OECD 35개국 성행)이 열리는 것으로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조 3륜의 한계가 노정 되는 공판중심주의의 보강(증거수집 등)/ 비 범죄성 실종 가출 잠적 등 행방조사 및 학교폭력 데이트폭력 보험사기 소행조사 등 공권력 소외지대 치안의 보완(OECD형 치안 3륜 구축)/ 나아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공공의 이익 등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등 이른바 사적(사익) 탐정과 공적(공익) 탐정의 시대가 두루 동시적으로 구현되는 것이다.

탐정업 공급측면에서는 수십 년 국비로 연마된公安직 공무원이 퇴임과 동시 무대 저편으로 사라지지 않아도 되며 출구 잃은 수많은 청년 학생들의 출구(자격취득 및 창취업)가 가시화되고 경비업과 어우러지는 블루오션 민간보안산업시장이 형성되는 가운데 미래 직업으로 탐정을 꿈꾸는 아이들에게 “우리나라는 탐정이 불법이라 안 돼”라는 가슴 아픈 교시(敎示)는 하지 않아도 되고 오히려 아이들의 동경의 대상인 코난 류(流)의 탐정을 장려해 추리력과 정의감에 충만한 명탐정 배양과 고부가가치 캐릭터 개발을 견인하고 부수적으로 학교폭력을 억제하는 등 사회적 경제적 교육적 측면을 망라한 다각적 효과가 창출되는 것이다.

반면 묻지마수입과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에 기대는 사이버 탐정들은 —일본 프랑스 독일 등을 비롯한 OECD 대다수 국가와 한국 탐정은 수사권도 조회권도 없고 비권력적 취재방법에 의존하는 기자의 역할과 유사함에도— 비공개 사생활 조사, 위치추적기 부착

3) 치안보완 분야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인 스토킹, 데이트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은 경찰의 사전 개입 곤란(신고가 접수되더라도 범죄행위나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면 가해자 피해자를 분리할 법적 권한이 경찰에 없음)/ 경찰승진의 동력인 인사고과 점수가 낮은 보험범죄나 민원성 고소 고발 사건 등은 경찰의 수사 의지가 미약/ 비긴급 112신고는 경찰의 즉응 대응 사실상 불가/ 경찰공공의 원칙(민사관계 불간섭의 원칙)상 민사성 고소 고발 처리 불가

→ 경찰의 치안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체고 (가정상비약/ 기생충 박멸제 기능)

① 스토킹 분야

미국 독일 일본 등 OECD는 일찌감치 스토킹을 구애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1990~2000년)하여 단순 스토킹에 대해서도 1~5년의 징역형에 처하며 스토킹에 수반하는 형법 범죄나 정보통신망법 등 특별법 위반 시는 추가 형량으로 가중 처벌하는 등 스토킹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여성 스스로 할 수 없는 현장증거수집과 사실조사를 탐정에게 대행시켜 스토킹 사후 처벌에 나서도록 하는 동시 스토킹 수반 범죄 현장 대응(피해자 신변안전 조치 등)에도 나서게 하는 등 스토킹 직간접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상호보완적 입법(스토킹법과 탐정법)으로 보장한 반면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스토킹에 대한 유일한 처벌 근거는 경범죄처벌법 뿐이며(지속적 괴롭힘→ 10만 원 이하 범칙금·구류·과료) 그나마도 입법 미비로 인해 3회 이상 이성교제를 요구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 불가하며 특히 이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과 주위의 평판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는 피해자나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는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는 엄두도 못 내며 적극적으로 반복적 괴롭힘을 증명하려는 피해자들도 오히려 스토킹을 격분시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러다보니 지난해 가락동 스토킹 살해 사건(2017- 05-30 무기징역 선고) 같은 충격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독신여성가구의 증가, 여성음주인구의 증가, 만남계열 사이트의 증가 등과 맞물려 스토킹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스토킹은 피해여성만의 개인적 문제를 넘어 가족이나 직장에도 직간접 피해를 미칠 뿐 아니라, 스토키가 해당여성의 관심을 끌기 위해 사회지도층 인사를 공격하는 등 제3자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스토킹은 온오프라인 어느 곳에서도 상시적으로 발생할 뿐 아니라 피해여성들이 해코지가 두려워 신고를 주저하는 암수(暗數)범죄에 해당된다. 앞서서와 같이 스토키는 우발적 폭행 협박 살인이나 납치 등이 수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벼이 넘길 범죄가 아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만 해도 스토키 피해상담 240건 중 강력범죄 51건으로 무려 21%)

실상이 이러함에도 사법당국은 스토키를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해 고작 8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증요법으로 일관하고 있다. 장난전화 범칙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스토키를 대하니 스토키 사례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셈이다. 현실적으로 강도, 절도 등 매일매일 긴급 신고에 쫓기는 경찰 입장에서는 피해사실의 입증도 곤란하고 모호한 스토키 피해신고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있다.

그렇다면 선진외국들은 스토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한 예로 스토키가 2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미국의 경우, 일찌감치 반(反)스토킹 법을 제정해 스토키 중형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국회가 열릴 때마다 입법 발의 단골 메뉴에 이름만 올릴 뿐 사실상 입법 후순위로 밀려 ‘공회전 공청회’만 몇 차례 하다가 4년을 허송세월한 뒤 국회 폐회와 동시 자동으로 용도 폐기되는 상황이 쳇바퀴 돌 듯 이어지고 있다. 특히 사회 문화적 환경이 한국과 유사한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 제정된 스토키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통해 스토키를 여덟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며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다. 우선 쫓아다니기, 잠복하기, 쳐들어가기 등을 유사행위로 보고 있다. 아울러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전화 문자 전단지 등)나 집요한 면회나 교제요구도 스토키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난폭한 언동(언어폭력, 자동차경적 연속취명 등)이나 무언전화, 장난전화, 팩스전송 등도 스토키의 변형된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지속적 오물 송부나 명예훼손(유언비어 유포 등)을 비롯해 성적 수치심 침해(외설적 글 사진 전송 등) 등을 스토키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에는 이처럼 세분화된 규정이 있으나 피해여성 스스로 증거 확보가 어려워 스토키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을뿐 아니라 법률의 실효성도 떨어지고 있다. 다만 이같은 상황에서 스토키 규제법의 보완입법 성격인 ‘탐정법’이 지난 2006년 제정되면서 상황이 변하고 있다. 즉 스토키 처벌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증거 수집과 스토키 위

해방지나 위기관리가 탐정사의 대표적 업무로 부각되면서 피해여성들의 스토킹에 대한 조사 의뢰가 경찰서보다 탐정사무소로 향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생겨났다는 얘기가.

이는 2018년 경찰의 스토킹 피해상담 7만7000건(전년대비 6.9% 증가) 가운데 피해접수가 2만1000건에 그친 점에 비춰 볼 때, 나머지 5만6000 건의 상당수는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증거)수집 등을 의뢰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찾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결과 피해자는 여성이 87.9%로 압도적이며, 남성 피해자는 12.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본의 국한된 사례일수도 있지만 스토킹은 교제상대 등 92.5%가 지인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탐정’에 대한 시대적 요청이 본격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스토킹 처벌을 위한 증거수집이나 의뢰인의 위해방지(신변안전)를 위해 스토킹의 신상정보나 소행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 통지하는 신 직업인 생활정보탐정사가 최근 경찰청 심사를 통과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을 마쳤다.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관행적 불법을 전문적으로 제압하는 탐정사가 한국에 등장하게 되면 스토킹의 증가세는 몸추고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요컨대 미완의 대기인 ‘탐정사’는 스토킹 등 사회적 기생충이나 공공의 적 킬러로서 제 기능을 다할수 있게 될 것이다. 즉 국민이 공격수를 원하면 자격시험이나 교육에 참여해 탐정사로 거듭나고, 반대로 수비수를 원하면 피해증거수집 보고서나 피해방지 서비스에 주력하는 두가지 모습으로 구체화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스토킹법이 제정되더라도 스토킹 예방이나 처벌은 탐정의 합법적 미행 감시 추적 및 채증(촬영 등)에 의한 사실조사와 증거수집 없이는 쉽지 않다.

※ 사실조사: 과학수사와 달리 의뢰인의 사회현상 중 의뢰건과 부합하는 명제(기초자료)와 가설(예측적 해답)을 도출하고 이를 체계적 통계적 비판적 객관적 등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조사결과와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고시키는 것으로 이와 접목되는 정보수집 분석 판단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경륜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며 사회 곳곳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전제로 하는 것 (탐정사의 분석적 판단보고서는 행정사의 기술(記述)적 서술보고서 작성과 차이)

② 데이트폭력 분야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데이트폭력으로 8367명이 검거됐고(전년대비 8.8% 증가) 매년 평균 47명이 과거 또는 현재의 연인 손에 목숨을 잃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물리적 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데이트폭력 가해자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OECD는 일찌감치 물리적 폭력이 아닌 성희롱, 협박, 언어폭력, 정신적 폭력, 사회적 매장,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도 구애가 아닌 범죄로 규정하고 처벌법규를 제정하여 일반범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등 데이트폭력 중형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OECD는 여성 스스로 할 수 없는 데이트폭력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를 경찰이 아닌 탐정에게 대행시켜 데이트폭력 사후 처벌은 물론 현장 위해방지도 하는 등 데이트폭력 직간접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보장한 반면 탐정이 불법인 우리나라의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대응은 “폭행 피해를 당하면 112 신고를 하고 다시 오라” “직접적으로 협박 흔적이 없어 입건이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도움을 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는 등 데이트 폭력에 대한 즉흥적 대응에 급급하며 데이트폭력 정의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미비와 탐정 부존재로 인한 경찰의 한계적 대응이 결국 데이트 폭력의 강도를 키우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으로 피해자들은 이에 절망하고 경찰을 불신하면서 탐정법제화를 촉구하거나 데이트폭력 방지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물리적 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경찰의 법리적 입장과 “데이트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공포와 사실상 고통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피해자의 현실적 입장은 평행선을 긋고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지 않는 데이트폭력의 유일한 처벌 근거인 경범죄처벌법(지속적 괴롭힘 → 10만 원 이하 범칙금·구류·과료)으로는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기대난망인 반면 적시한 대로 OECD는 이를 탐정이 적절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다.

그나마도 우리 경범죄처벌법은 입법 미비로 인해 3회 이상 이성교제를 요구하고, 신고를 당했음에도 지켜보거나 따라다니는 행위가 반복돼야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거절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 불가하며 이 같은 피해 사실과 증거를 피해자 스스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에 움츠린 피해자, 주변평판(피해자 비난)에 대

한 두려움이 앞서는 피해자, 가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는 피해자는 증거수집과 사실조사는 엄두도 못 내며 적극적으로 반복적 괴롭힘을 증명하려는 피해자들도 오히려 스토킹이나 데이트 폭력 가해자를 격분시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거나 정보(증거) 수집의 한계에 봉착하여 무고죄나 명예훼손죄로 몰리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상이 이러함에도 국회는 탐정법이나 데이트폭력 처벌 특별법은 아주 뒷전이다.

스토킹 등 데이트폭력 처벌법이 대한민국 보편적 남성을 잠재적 범죄 군으로 인식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면 이는 일단 유보하고 20대 국회 대기 중인 공인탐정법안을 먼저 심의 통과시켜 OECD와 같이 공인탐정들이 공권력 사각지대에 방치된 데이트폭력 범죄에 실시간 대응토록 해야 할 것이다.

적시했듯이 데이트 폭력 예방이나 처벌은 탐정의 미행 감시 촬영 탐문 등에 의한 정보(증거)수집과 사실조사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적시한 바와 같이 데이트 폭력의 사실상 방지는 공인탐정에 의해 그 실효성을 보장받는 것이어서 탐정업이 불법인 상태에서 경찰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탐정업을 불법으로 규정짓는 신용정보법 위헌결정과 20대 국회 발의된 공인탐정법안의 조속한 입법으로 데이트 폭력 등 안전사각지대의 여성 안전을 공인탐정들이 견인해야 한다.

어느 국가에 법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선언적 정의에 그칠 수 있고 피해자가 직접 탐정을 고용하여 자신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사실상 봉쇄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 OECD는 데이트폭력 방지법 규정과 공인탐정이 공히 존재하고 대한민국은 데이트폭력 방지법 규정도 공인탐정도 없다.

요컨대 여성이나 피해자가 스스로 안전 비용을 지불하고 공인탐정에게 의뢰하여 위해 방지 및 피해회복 권리구제에 나서도록 공인탐정을 허용해야 대한민국도 여성안전강국 나아가 치안강국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③ 학교폭력 분야

학내외를 넘나드는 학교폭력의 양태가 폭행 협박 강요는 물론 SNS 언어폭력, 비언어적 따돌림, 성폭력, 약취·유인, 정보통신망 음란폭력, 악성소문 유포, 문자폭탄 배달 등 다양한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통상적으로 학교 측의 사실조사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교폭력대책위) 개최 → 처분결정 통보로 이어지고 있으나 처분결정에 대한 피해, 가해(간접가해 포함) 학부모의 불복이 과거와 달리 재심과 행정심판청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으며 학교 측의 소극적 편파적 비전문성 사실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의 부당 결정에 대한 인권위 진정 건수 역시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교와 학교폭력대책위의 실상이 이러함에도 변호사는 피해 학부모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져오면 법률상담을 해 주겠다는 한가한 소리나 하고 있고 학교 측은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제정법상 기본원리를 간과, 피해자 입장에 서서 가해자나 간접 가해자를 특정하여 일방적 편파적 사실조사를 하거나 낙인찍거나, 업무 과중으로 불충분한 사실조사에 그치거나, 학교 측의 대외적 입장만을 고려 사실조사를 축소하거나, 학교 측의 재량이나 판단으로 선도가 가능한 사건임에도 면피성 학교폭력대책위를 개최하는 경향이 노정되고 있으며 경찰도 사생활 부분의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나 치료비 위자료 손해배상 합의 등 원만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민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 한계가 노정되고 있다. 또한 재심청구서나 행정처분청구서를 대리 작성·접수해 주는 행정사는 직무 성격상 현장 사실조사보다는 의뢰인의 자료에 기초한 문서 작성에 치우쳐 역시 역할 한계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라는 사이다 성 홍보로 학교폭력 해결사임을 자임하는 불법 심부름센터(홍신소 등 유사 업종 망라)는 학교폭력 피해에 분노하고 억울해하는 학부모들의 궁박한 심리를 파고들면서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 구조를 낳고 있다.

요컨대 학교폭력 사실조사는 - 가해자가 100% 잘못된 일반 범죄수사와 달리 - 피해자의 유발요인에 의한 사건, 결투 등 쌍방 과실이 경합하는 사건, 100% 가해자 잘못에 의한 사건 등을 세세히 분류하여 교통사고조사와 같이 쌍방과실 비율을 규정지어야 실질적 정의에 부합하며 처벌보다 선도라는 본래의 취지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2003년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학교 측과 학교폭력대책위에서는 가해학생(간접가해학생 포함) 징계와 피해학생 보호강화라는 이분법적 잣

대로 학교폭력을 재단하고 대응함으로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제정 15년여 지난 지금 작금의 학교폭력 사실조사와 학교폭력대책위는 전문성 형평성 부당성 효과성측면에서 가해자 피해자 쌍방으로부터의 불신에 직면 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 문제해결 컨설턴트 즉 학교폭력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공인(사설)탐정이 필요 시 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실 조사는 先 가치중립적이며 현재 진행되는 일이나 행동을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後 가치 부정적인 이미 해 놓은 일이나 짓을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는 일본 등 OECD에서 보듯이 전형적으로 탐정의 행동 소행 조사 영역인 것이다. 즉 탐정과 궁합이 잘 맞는 캐릭터 활용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학교폭력대책위 회의록·녹음파일 등 제반 정보 공개 촉구→학교 측 사실조사를 믿고 서면심리만 하는 행 정심판위원회에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자료 제출 대행 등 탐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사실조사 소년탐정 캐릭터 1호 TAMDORI →2016 특허청 특허 확정 공고」



특허 제41-0362256(소년탐정 캐릭터)

탐정의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와 탐정의 대중성을 견인하는 기법 중 하나인 미스터리 방식의 캐릭터 개발과 활용은 캐릭터 홀릭, 키덜트 문화 시대에 편승, 그리고 명탐정 코난 에서 보듯이 사실조사에 대한 거부감은 줄이고 관찰력 추리력 통찰력 상상력 학습력 호기심 정의감을 제고시켜 청소년의 인성 창의성이 자연스럽게 계발되고 학교폭력을 원천적으로 예방하며 사실조사 정확도도 높이는 것이다.

④ 보험사기 분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로 인해 국민 전체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범죄가 과연 있을까?

우리 주변에서 빈발하는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는 보험 사기가 바로 그것이다. 보험업계와 보험 연구원 및 언론에서는 “보험사기로 인한 추정 지급액이 년 4조 5천억 원에 달하고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9만 여원의 부담금이 발생하는 등 보험사기가 보험료 인상률 20%의 주범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발표·보고하고 있다. 이에 작년부터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신고 포상금을 최대 10억까지 내걸며 금융감독원이나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경찰 검찰 등이 공조하는 보험 범죄 전담 합동 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오히려 보험사기는↑ 신고 건수는↓ 있으며 그 수범마저 고도화 지능화 조직화 흉포화 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설상가상 외국인 체류자 200만 명 시대를 넘어서고 불법체류자가 증가하면서 이들도 보험사기 범죄 대열에 끼어들고 있다.

이러한 보험사기 범죄의 유형은

- ✓ 음주운전,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진입제한도로 주행, 중앙선침범, 차선변경, 횡단보도 교차로 안전거리미확보, 골목길 과속 주행 등을 대상으로 — 교통법규 위반 약점 포착 — 외제 차량, 자전거, 오토바이, 신체 등을 이용하여 고의로 인적·물적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교통사고 위장 보험사기
- ✓ 자기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노약자, 여성운전, 음주운전 차량을 노려 접촉사고 후 약점을 잡아 합의금을 챙기거나 다수가 타고 탑승자 전원이 보험금을 타내거나 가해자·피해자가 사전 공모하는 자해 공갈 보험사기
- ✓ 나이롱환자 등이 보험금을 더 타내기 위해 보험사고를 과대포장하고 병원은 장기 입원을 묵인하여 보험사기를 방조하며 차량 정비업체는 견적을 부풀리고 택시기사는 목격자로 보험사 직원이 최종 마무리하는 등 보험 전문 사기단에 의한 뺑뚱기 보험사기
- ✓ 노약자나 어린이를 태우고 경미사고 유발 후 사고 뒤처리가 미흡한 차량을 대상으로 뺑소니 신고 협박을 하며 입원하는 보험 전문 사기

✓ 불법심부름센터, 불법 체류자, 외국인, 조직폭력을 끌어들여 살인 방화 상해치사 등을 획책하는 중범죄 수반 보험사기 등이 있다.

이에 사기죄의 형량을 강화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제8조)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피해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자, 이를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자 등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험금을 반환토록 규제하고 있으나 헐리우드 액션으로 공돈 맛을 들인 사기범들은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다니 계속 먹겠다는 심산이다. 그러함에도 경찰, 경제 경찰, 검찰, 보험업계의 대책은 저들의 저위험 고수익 전략과 헐리우드 액션 전술을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이의 근원적 해결책은 OECD의 탐정이다.

가까운 일본도 상습 보험사기 범죄로 골머리를 앓았으나 나이롱환자 외에는 탐정의 견제구에 아웃 당해 현재는 자해 공갈 및 고의 사고 유발 보험 사기나 중범죄 수반 보험사기 등 전문 보험 사기단은 거의 발목이 잡혔다.

어느 국가나 보험사기는 상습범으로 선언적 법규나 한시적 특별단속만으로 제압되지 않는다. 365일 24 시간 감시 추적 적발해야 발본색원이 가능한 것이다.

일본과 OECD는 바로 탐정이 그 일을 대행하고 있다. 이의 의뢰인은 피해자 보험회사 경찰 경제경찰 검찰 등 다양하다. 탐정은 소행 조사 전문가로서 그 대표적 기법은 미행 감시 잠복 추적 관찰 추리 촬영 탐문 등을 통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적발)이며 보험사기 등 소행 조사는 일본 등 OECD 탐정 시장의 50%를 상회하고 있다.

이렇듯 탐정은 보험사기를 잡는데 유효한 공개 비공개 기법도 부지기수이거나와 기초 사실조사의 수월성과 정보 수집을 위한 신분 은닉성도 가미되고 있어 보험사기 사후 민사소송에서도 편취 금액을 돌려받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자 이제 선량한 모든 국민이 피해자인 보험사기 분야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탐정을 허용하자!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보험사기 피해자를 줄이고 치안력의 낭비를 줄이고 국민적 국가적 피해를 줄이자 요컨대 실정법상 개인의 피해회복 구제 절차나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선언적) 정의에 그칠 수 있다.

⑤ 112 출동 분야

- ‘음식점에서 구두가 없어졌다’,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렸다’, ‘주차 중인데 뒤차에 막혀 나갈 수가 없다’ 등 어이없는 112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출동한 사이 ‘강도가 들었다’, ‘퍽치기 당했다’, ‘살려주세요’ 등 절박한 신고 현장에 출동할 순찰차가 없는 경우가 간혹 있다.

물론 지구대(파출소)순찰차나 형사기동대, 교통순찰차가 지원 출동하지만 먼거리 출동이나 교통체증 등으로 소위 골든타임(5분) 내 현장 도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미국, 영국, 일본 등 OECD국가는 어떨까? 그들은 긴급을 요하는 출동은 경찰이, 그렇지 않은 민원 상담이나 비긴급, 비출동을 요하는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탐정에게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그래서 경찰의 112가 긴급 신고에만 응답(출동)하고 비 긴급 신고 다수와 비 출동 신고 전부는 사실상 아웃소싱되는 패러다임의 대전환기에 접어들었다.

즉 “경찰은 시민과 3분 거리에 있습니다”라는 기간의 캐치프레이즈는 그 막을 내리고 “112는 국민이 위급할 때만 달려갑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것이다.

이제 년 중 900만 건 정도의 112 비 긴급신고 일부와 여타 900만 건 정도의 민원 상담성 비 출동 신고 전부는 미 영 일등 OECD와 같이 탐정이 나서는 시대가 도래된 것이다.

- 탐정이 불법이라고 해서 탐정 수요가 없어지지 않는 것은, 공기가 보이지 않으나 실재하는 것과 같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며 위와 같이 탐정 수요는 오히려 증가 일로에 있다.

세계 최고의 치안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일본 경찰 이면에는 세계 최고의 민간 경비와 탐정이 있다.

“경찰·민간경비·탐정”은 치안의 3대 축으로 OECD는 이 축이 상호보완적으로 잘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경찰·민간경비” 2대 축만 있고 탐정이라는 치안의 나머지 축은 불법심부름센터가 끼어들고 있다는 것을 새삼 직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탐정 범제화를 지원하는 한편 불법심부름센터 단속을 최고수위로 올려 그 불법성과 폐해를 공론화해야 한다.

실정법상 개인의 피해회복 구제절차나 법 규정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선언적 정의에 그치고 있으며 개인이 탐정에게 의뢰하여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법률상 사실상 차단되어 있어 국민이 불법과 거래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⑥ 공개수사 분야

OECD 탐정은 국가기관·공사단체·개인이 수배자 등 사람찾기를 의뢰해 오면 (공권력에 근거한 국가 수사기관 대비)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 우월성으로 피의뢰자 주변 협조자 구축, 피의뢰단체 직간접 가입, 현장맞춤형 미행·잠복·탐문·채증·대면조사 등 단서 포착이 보다 용이하기 때문이다.

⑦ 정보경찰 축소 분야

검경 수사권 조정 2라운드(대통령령 제정)를 앞두고 정보경찰 폐지(축소)론이 대두되고 있다. 폐지(축소)론자들에 의하면 정보경찰이 치안정보란 모호한 개념과 국정 수행을 뒷받침한다는 명분으로 특정 인사의 사생활을 다루거나 단체의 동향을 수집하거나 여론(정부) 시각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경찰의 관행적 역할에 대한 쇠신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각설하고 국가정보력은 국력의 바로미터로 국가정보기능은 오히려 강화해야지 축소해야 할 대상이 결코 아니며 백번 양보해 폐지(축소)한다 치더라도 반드시 그와 맞물리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검찰정보파트, 경찰정보파트 폐지가 능사가 아니라 국가 어딘가에 이의 대체재가 있어야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인한 정보적 격차가 해소되고 국가정보력의 제고가 촉진된다.

이와 관련 OECD는 오래전부터 탐정 등 전문적 정보조사 민간기관이 그 역할을 상당대행하고 있다. 일본 등 OECD는 국정 운영에 수반되는 정보조사 관련한 정치적 부담이나 정보수집 과정에서의 정보원 노출로 인한 외교적 마찰 등을 감안하여 일찌감치 민간연구소나 탐정 회사 등 민간영역을 통해 국정 운영에 필요한 인사정보와 정책정보를 보완하거나 상대국의 민심과 기업의 맥점까지도 꿰뚫어 보는 것이다.

우리도 사실상 경찰 정보 부재 상태에서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한 공공의 적 정보수집,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을 위한 민심 세평 유언비어 등 정책자료 수집, 전염병 등 공권

력 사각지대의 보건안보 자료수집, 기업보안유출 실시간 정보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 국가정보에 더해 - 민간탐정을 활용해야 하는 일대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때마침 2018 현재의 결정을 근거로 2019 경찰청이 등록 결정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 생활정보지원탐색사(탐정사) 자격시험에 다수의 공안직 공무원들이 응시하여 자격을 취득하고 창업에 나서고 있다.

언급했듯이 탐정사 자격취득자는 대다수 전·현직 경찰들이고 공안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기본윤리도 있고 사물을 꿰뚫는 안목과 숙련된 정보 감각도 있다.

이들이 민간의 신분으로 공권력 사각지대의 밑바닥 정보를 썩치고 국가정보기능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에 만연된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타개하고 OECD 선진국 정보력 캐치업에 나서야 한다.

언필칭 경찰도 검찰도 국정원도 이러한 민간의 정보력 토대 위에서 국가정보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며 정부도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조사 영역을 커버하는 민간탐정을 통해 세평 등 공개정보의 수집 분석 및 검증에 나서는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보듯이 청와대 민정이나 경찰 정보에 관행적으로 의존해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나 명예로운 퇴진은 기대난망인 것이다.

요컨대 OECD 탐정이 그러하듯이 탐정사의 업무범위도 가정상비약 통증치료제를 넘어 공익 파수꾼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의 정보경찰 역할축소와 탐정사 법제화는 반드시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는 공인탐정을 100대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의 실현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야 할 것이다.

.....
.....
.....
.....
.....
.....
.....
.....

⑧ 기타 치안보완 분야

포탈사이트에 법조 3륵을 치면 “변호사 판사 검사로 법조의 3대 축”이라는 설명이 있는데 치안 3륵을 치면 그 개념에 관해 뜨는 것이 없고 대한공인탐정연합회장의 기고문만 쪽 뜨면서 “경찰 탐정 민간경비”가 치안 3륵 임이 기고문에서 적시되고 있다.

한국의 법조 3륵은 세 바퀴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반해 한국의 치안 3륵은 “공인탐정”이라는 한 바퀴가 썩 빠진 채 불량품인 불법 심부름센터가 대체되어 세 속도를 못 내고 있으며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치안도 경찰의 노력에 비해 저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특히 탐정과 상호보완적이어서 탐정과 뿔레야 뿔 수 없는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 경비업법에 의해 스타트한 이후 2017년 말 현재 직업 경찰관 수를 능가하면서도 업무수행 상 필수불가결한 신고출동 정보수집 사실조사 등 측면에서의 경찰 의존도가 높아 국내외 평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비업의 파트너인 탐정의 정보수집이나 사실조사 없이 현장경비를 하고 있는 한국 경비업이 절름발이 형태로 추구에 있어서 공격은 포기하고 수비나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공격에 해당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 없이 수비에 해당하는 경비경호를 하다 보니 정보부재에 놓여 경비업 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고 양적 질적으로 공경비인 경찰을 능가하는 미국 일본 등의 초고속 성장 민간경비에 비해 한국의 민간경비는 외화내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및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경호, 다중운집 시설 안전 경비, 집회 시위 군중행사 등의 혼잡 경비, 시설 내(內) 절도 손괴 경비, 교내외 학교폭력 감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방지 신변보호와 경호, 선거유세 경호경비 등에 있어 관련 정보 없이 의뢰 현장이나 인적 물적 대상을 수비한다는 것은 야구 축구 등 각 종 경기에 있어 감독이나 코치 등 사령탑 없이 선수들로만 경기에 임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1962년에 시작된 일본 경비업이 64년 동경 올림픽 선수촌 경비, 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경비 및 88 서울 올림픽 경비(SECOM)를 계기로 그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양적 질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가운데 72년 일본 경비업법 제정과 76년 한국 경비업법 제정 시간 차가 4년 차에 불과함에도 그 성장속도가 엄청난 격차를 보이는 것은 일본은 민간경비를 보완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업이 실재하고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 OECD는 100여 년 전부터 법조 3륜(판사, 검사, 변호사)과 치안 3륜(경찰, 경비업, 탐정)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법조와 치안의 동반발전 및 국가 사회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의 실태를 보면, 법조 3륜은 1945 해방 직후 일찌감치 구축된데 반해 치안 3륜은 해방 이후 경찰 홀로 버티다가 경비 수요의 급증으로 1976년이 되서야 용역 경비업법에 의한 민간 경비업이 태동되면서 치안 2륜이 형성된 이후 40여년이 지나 탐정 수요(정보수집 및 사실조사)가 급증하고 있지만 치안 3륜 바퀴 하나(탐정)는 아직도 빠져 있는 미완의 상태로 이른바 OECD형 완제품인 치안 3륜 구축은 마냥 요원해만 보인다.

세계사적으로 법조와 치안은 3륜이 최적의 상호보완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음을 볼 때 한국 치안은 세 바퀴 중 한 바퀴가 빠진 채 수 십년을 지탱함으로써 나머지 2륜인 치안과 경비업의 과부하 심화 → 치안과 경비업의 고비용저효율 심화 → 치안과 경비업의 외화내빈 심화로 이어지고 있다.

OECD는 치안에 있어서의 경찰과 민간의 상호보완 및 역할분담이라는 측면에서 치안 3륜이 100여년 이상 발전적으로 계승되고 있으며 최첨단 민간경비와 탐정업의 장비나 기법을 수출한 지도 오래이다.

한편 이의 수입국인 한국은 경비업은 법제화 후 시행착오를 거쳐 그나마 발전되고 있으나 탐정은 여전히 불법으로 규정한 채 불안정한 치안 2륜에 머무르다 보니 불량품인 불법 탐정(심부름센터, 홍신소 등)이 정품인 양 국민을 현혹하며 치안 3륜에 끼어 들고 있다.

경찰이 개인의 부름이나 물음에 즉각 응답하기 힘들고 경비업의 외화내빈 현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에 목타는 탐정수요가 급증하자 그 틈을 비집고 자연발생적으로 불법탐정이 태동된 것이다.

OECD는 “사 경비인 탐정과 경비업”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민간경비는 주거나 구역 등을 수비하는 개념으로 공격형 정보조사 탐정의 지원이 필수) 질적이나 양적으로 “공 경비인 경찰”에 필적하는 가운데 치안 3륜이 상호보완적으로 구축되고 공경비와 사경비 간 적절한 긴장관계 형성 및 상호보완적 민경협력치안으로 치안 완성도를 높임으로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탐정(정보력)이 없는 우리나라 경비업(특히 기계경비)은 경찰의 112에 의존하며 외형적 성장만 치중할 뿐 정작 현장 경찰들은 민간경비가 별로 도움이 안 된다며 불만족 대상으로 여기는 기현상이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법적 절차적 규정 준수나 대내외 보안 및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찰과 사익을 추구하는 민간경비의 협업은 상호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보다 유연하고 비관료적이며 대가성을 추구하는 탐정과 경비업의 협업이 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급기야 이러한 절름발이 치안 2륜의 문제는 치안의 불안정은 물론 탐정시장 불법화 심화와 다국적 탐정회사 의존도 심화(민간과 기업정보 국내외 유출 ↑) 역올하고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국민의 고충 심화로 — 이대로 가다가는 통일 전후 치안 수요 폭주로 — 치안 불안정국, 국민생활정보지원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요컨대 경비업과 탐정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상호 선택적 관계가 아닌 필수적 관계로 OECD와 같이 하나의 컨트롤타워 아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에 40년 앞서 제정되어 시행착오와 법 개정을 거친 경비업 법의 일부나 전부를 재개정하여 탐정 조항을 접목하는 가칭 민간보안산업법(영국의 민간보안산업법 벤치마킹)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는 뒤 늦게나마 한국의 치안 3륜이 제 속도를 내 안전성과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다.

⑨ 민간보안산업 분야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경제부총리의 “탐정 등 9개 신 직업 도입 추진” 발표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어두운 곳 밝히는 사설탐정의 사회적 기여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기여에 거는 국민적 기대감이 상승하는 가운데 신 직업사설탐정과 경비, 경호, 교육, 애니메이션 시장 등이 어우러지는 신산업의 태동이 감지되고 있다.

이른바 신 직업 탐정 허용으로 가시화되는 신산업은 우선적으로 탐정과 민간경비가 어우러지는 OECD형 민간보안 산업을 들 수 있다. 탐정업의 허용은 정보조사 시장의 발전은 물론/ 정보조사 기능이 없어 경찰에 의존하며 한계적 상황에 직면한 경비업의 발전촉매제로 작용해/ 고비용저효율 민간경비업의 외화내빈 현상이 개선되는 가운데/ 방

대한 경찰 업무의 아웃 소싱(탐정 이관)이 촉진되어/ OECD 선진국과 같이 사적안전과 정보조사를 담보하기 위한 인원·장비·영역(업무) 적 측면에서/ 사경비(탐정과 경비업)가 공경비(경찰과 특별사법경찰관)를 능가하는 거대한 민간보안 산업 시장의 형성이 가시화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장년 추리물 만화의 범람과 애니메이션 제작이 상호 연동되어 시너지 효과가 발생되면서 애니메이션 시장의 규모화와 산업화가 촉진될 것이다. 인종 언어 국적을 초월하는 코난 김전일 등 캐릭터를 활용한 애니메이션 왕국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정의 구현이나 궁금증을 해결하는 탐정캐릭터가/악의를 추적하는 추리 만화시장을 견인하고 액세서리 장난감 등 완구용이나 전시용으로 보급되어 청소년의 창의성 인성 계발 등 교육적 효과를 거양하거나/ 성인들의 키덜트(kidult → kid+adult의 합성어로 어른아이라는 뜻) 문화의 확산에 부응하면서/애니메이션 제작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타게 되는 것이다.

또한 전문탐정배출 실용교육을 위한 각종 학과가 개설되어 정규교육과정 및 평생교육과정, 성인 대상 사설교육과정, 청소년 대상 탐정추리학교 개설 등 신 교육시장의 형성과 탐정장비업 탐정소설출판업 탐정영화업 탐정광고업 국내외탐정대전 탐정박람회 소년탐정대 등 사회 다방면으로 연동되어 탐정 관련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이다.

탐정대국 일본에 1억 2500만 인구의 한시적 공공재 소외 상태를 케어 하는 6만 명(인구 10만 명 당 50명)의 탐정과 사무원 관련업종사자 및 세콤 등과 접목되는 민간보안 산업에 수십만이 종사하고 있음에 비춰 볼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이 일본과 유사한 한국도 인구 5100만에 2만5천여 탐정과 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무원 등 5만여 명의 일자리에 더해/ 관련 신산업의 형성으로 10만에 육박하는 일자리가 창출되고/ 북한 개방 시 북한 인구 및 정보조사 수요에 비례하는 탐정 일자리의 추가 창출과 / 대기 수질 환경오염원 실시간 감시를 비롯한 공적분야 정보조사 일자리 창출 등 사설탐정의 일자리 과급력은 정부의 전망이나 향간의 예상을 초월한다.

대한변협은 직역이기주의적 반대 끝내고 정부와 국회도 탐정의 당위성 및 일자리와 관련된 OECD사례는 물론 대한탐정연합회, 연세경찰행정연구회 등의 수년에 걸친 언론 기고와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을 찾는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 심정에 보다 다가가 열린 자세로 살펴보기를 권하는 바이다.

변협은 일자리 창출 필요성 등 경제적 측면에 기인해 탐정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일자리창출은 탐정 허용의 본래적 효과가 아닌 부수적 효과임은 공지의 사실에 가까우며/ 어느 국가가 근원적 효과를 차지하고 부수적 효과에 매몰되어 국가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답변을 요하며 (탐정의 본래적 당위성은 OECD가 100여년 검증하고 있고 국내 불법탐정의 범람이 역설적으로 입증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법제는 니즈에 따라 제정되고 여론이나 사회적 환경에 맞춰 개정을 거듭하고 있음)

아울러 변협 등의 흥신소 등 불법탐정업 양성화 반대 주장도/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공인탐정제나 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인(사설)탐정제에 대한 몰이해로/ 신 직업 탐정제도는 이른바 불법탐정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전과자가 다수이며 불법을 일삼는 그들을 법률상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임에/ 이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당부하는 바이다.

요컨대 정부는 민간주도 탐정제가 OB 공무원, 청년학생 등 기능적 윤리적으로 검증된 자원을 체계적으로 선발→교육→투입→재직자 훈련→관리감독으로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임을 명확히 공지하여/ 비생산적인 반대명분을 불식시키고/ 사설탐정을 비롯한 연관 산업의 연착륙과 파생되는 일자리 창출을 적극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

.....

.....

.....

.....

4) 재판보강 분야

경찰의 기소의견이나 불기소 처분은 통상적으로 증거의 유무에 기인하다. 증거재판주의와 배심원의 사실인정에 관한 심증 형성도 법리가 아니라 증거가 관건이다.

특히 혐의없음 처분의 대다수는 법리로 인한 것이 아니고 고소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의 사건 관련 정보(증거)수집 및 사실조사의 비전문성으로 인한 증거불충분에 기인하는 것이다. 기실 법리적 모순과 불충분을 조사하는 변호사는 사건 현장의 증거(정보) 불충분까지 조사하는 만능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그 분야는 아마추어에 가깝다.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고충이나 수사의 사각지대는 OECD 경우 사회과학적, 뇌과학적 정보조사(증거 찾기)를 필살기로 하는 탐정이 해결하고 보완한다.

이제 검찰과 경찰의 관계가 상명하복이 아닌 역할분담에 의한 대등한 상호협력관계로 정상화되었듯이 변호사와 탐정의 관계도 그리 정립되어야 하며 그래야 수사단계의 비법률적 영역조차 변호사의 상담과 선임이 필수인듯한 모순적 논리가 배제되며 변호사 선임비에 내몰리는 서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치유할 수 있다.

① 소재탐지 분야

현재는 탄핵 심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으로 강제구인마저도 어려워지자 최후적 조치로 경찰에 소재탐지를 촉탁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 2017-01-15 CHANNEL A 뉴스 등

경찰은 긴급신고 출동이나 범죄수사 예방순찰 교통소통 등 본연의 치안 활동에도 손이 모자라고 행방 추적은 단연 탐정의 대표적 업무이다.

즉 날로 증가하는 미야, 가출인, 실종자, 숨어버린 악성채무자 등 사람 찾기 조사 분실 도난 재산 및 도피 자산의 소재파악 등 물건 찾기 조사, 잃어버린 반려 견·묘 찾기 등 애완동물 찾기 조사, 사실 진실 소행 평판 소문 등 정보 찾기 조사, 법원의 증인 참고인에 대한 소재탐지 촉탁 조사는 OECD 탐정의 일상이며 경찰은 범죄 수사와 연관되지 않는 한 사실상 관여하지 않는다.

OECD 탐정은 법원의 인·물적 소재탐지 의뢰를 받으면 - 공권력에 근거한 수사기관 대비 피 의뢰인 주변 협조사 구축, 피 의뢰인 온오프라인 소재 동선 미행·추적·잠복·감시·탐문·면담 등 비권력적 기초사실조사 및 현장 정보수집이 수월하고 국내외 적 탐 정 네트워크 구축에 힘입어 실시간으로 국내외 탐정협회, 세계 탐정협회와의 공 조 시스템을 가동 할 수 있다.

의뢰인으로부터 “피 의뢰인이 프랑스에 있다”라는 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다국적 탐정 회사(핑거튼, 크롤 등)의 탐정들을 매개로 피 의뢰인이 있는 국가의 탐정회사들과 피 의뢰자 찾기 국제 탐정 공조에 나서는 등 국가수사기관의 국제사법공조를 앞서는 광범 위하고 신속한 행방 정보조사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해외 은닉 재산 사설탐정이 찾아냈다. 예보공사 8년간 8,900만 원 주고 162억 원 회수’ 2015-09-21 조선경제

이렇듯 소재 탐색 탐정의 관찰력과 정보수집 능력 및 기초사실조사 수월에 힘입어 국 내의 사람찾기(범죄, 비범죄 망라) ↑ 물건 찾기 ↑ 각종 안전사고 위험성 ↓ 할 것이다.

이렇듯 탐정이 인·물적 소재탐지 등에 있어서 치안기능을 보완하고 재판기능을 보강 해 주고 있음은 OECD 100년 탐정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널리 공지된 사실이다.

② 국선 변호 분야

국선 변호의 취지는 사선 변호에 견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대변하는 실질 변호에 있다. 그러나 국선 변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실효성 기대난망이며 무혐의 주장이나 꼭 승소해야 한다면 개인(사선) 변호사를 사야 한다는 데 이론이 없다. 이의 외형상 요인은 수입 경쟁 없이 국가(법원)로부터 과잉 수입을 받을 뿐 아니라 결과와 관계없이 국가(법원)에서 지급하는 약정수입료를 받기 때문이며 내면적 요인으로는 정보(증 거)수집 및 사실조사 파트너(국선 탐정)없이 탁상공론식 법리검토로만 일관하기 때문 이다.

미, 영, 일 등 OECD 선진국의 형사사건 대다수는 국선전담변호사가 해결하며 특히 국 선변호사는 국비 지원을 받아 국선 탐정에게 현장 정보조사를 의뢰하고 공판중심주의 에 부합하는 증거(정보)를 제시함으로써 무죄나 감형의 견인 등 실질 변호를 수행한 다. 이의 실효성에 비추어 우리도 법원 위촉 국선전담변호사나 법무부 위촉 국선변호

사(성폭력 특례법)의 수박 겉핥기식 변호를 타개하기 위한 국선 탐정제의 도입이 절실하다.

마침 경찰청의 등록결정을 마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 생활정보지원탐색사(탐정사)라는 탐정업 관련 등록민간자격시대가 열려있고 대다수가 경찰관 출신인 탐정사 자격 취득자들은 국선변호사가 범접하지 못하는 현장 정보력과 조사력을 겸비하고 있어 수입료 분배 등 국선변호사(인)들의 인식 전환만으로 특별한 법제 개정 없이 지금 당장이라도 국선 탐정제도 도입이 가능한 것이다.

국선 탐정은 국내 만연된 유전 무죄·무전 유죄라는 사선(개인) 변호 제도의 불신을 타파하고 변호 사각지대의 인권수호를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제도로 국선 변호인에게만 필요한 대상이 아니고 다각도의 국정운영 자료수집에도 매우 유용한 제도이다. 근래 변호사 수입 흉년 시대에 접어들면서 수입 걱정 없는 국선변호사의 선호도가 상승하고 있으나 시대를 불문하고 국선 탐정 없는 한국식 국선 변호는 절름발이에 불과하다.

정성적(定性的) 데이터에 기반한 사회과학에 의하면 국선 변호와 국선 탐정은 따로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이며 세상 모든 일은 협업과 분업이 기본이다. 따라서 대다수 변호사의 수십 년 점철되어온 유아독존식 사고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이 영구 종식되어야 마땅하다.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는 국선 여부를 떠나 탐정(탐정사)의 고유영역임은 OECD 탐정 100년사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제2019년-003312)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운영규정이 웅변하고 있다.

요컨대 변호청 설치에 버금가는 변호사각지대 해소 방안으로 OECD와 같은 국선 탐정제도 도입을 정부나 법원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국선변호인이 손해 볼 것 없는 작금의 관행을 뒤로하고 스스로 탐정에게 정보조사를 의뢰해 실질 변호에 나선다는 선의를 절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밥그릇 무서워 탐정제를 반대하는 대한변협측은 탐정이 펌프의 마중물처럼 증거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간과하는 듯 싶다.

사생활침해 우려를 침소봉대하며 탐정을 반대하는 변협측은 눈을 밖으로 돌려 검증된 OECD 탐정의 다양한 매직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필시 세상사는 법전에만 명시되고 법리적으로만 해결되는 것은 아닐터이다. 탐정제 재판을 보장하는(증거수집 등)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③ 민·형사 변호 분야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이 전격적으로 무효화 됐고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을 강타한 이 판결과 의결은 형사사건의 근간을 흔드는 획기적 사건으로 가히 혁명적이라 할만하다.

‘어느 국가도 피해회복 절차와 법 규정, 수사기관이 존재한다는 것은 형식적 정의에 그치며 개인이 직접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길 (민·형사 재판 증거수집 및 민원·분쟁 정보의 비대칭성 해소 등)이 법률상 차단되어 있다면 그 국가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하다.

국내를 돌아봐도 변호사는 법률 전문지식에 비해 소재 탐지나 현장정보수집기법이 미약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도 현장증거부족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들다는 것이 세간의 중론이다.

이렇듯 대한민국에 탐정은 없고, 변호사는 증거수집 여력이 없고, 경찰도 인력부족과 각종 현안에 쫓기고... 그럼 법적 코너에 내몰린 전문성도 없는 개인이 직접 자신에게 유리한 단서나 정보를 찾으려 직장도 내팽개치고 길거리에 나서란 말인가? 아니면 불법 심부름센터에라도 의뢰하란 말인가? 이제는 ‘울며 겨자먹기식’이라도 과도한 성공보수금을 주고 변호사에게 매달릴 수도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한가지. 미국 등 OECD와 같이 탐정과 변호사가 협업해서 현장증거를 찾아 재판에 이기는 길밖에 없다. 탐정 역사 200여년에 육박하는 미국은 탐정의 도움이나 연관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는 드물다.

따라서 사법정의 실현은 변호사와 탐정의 협업으로, 장기미제 살인과 시신없는 살인사건(실종사건) 등은 경찰과 탐정의 협업이라는 신 패러다임으로 대한민국 탐정시대를 열어야 한다.

※ 탐정 법제화 놓고 경찰-변호사업계 힘겨루기

사설탐정제 도입을 추진하는 ‘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의 정수상 회장은 2016년 6월 13일 ‘신용정보의 이용·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일부 조항이 위헌인지 확인해달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용정보법 제40조는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설탐정업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탐정업이 도입되면 1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기대된

④ 무기대등 분야

불법심부름 센터와 OECD 다국적 탐정들이 개인 기업정보와 사생활 침해를 조장하고 미아 실종자 가족들의 장기간에 걸친 국내외 직접 탐문으로 가정 붕괴 현상이 가속화 되는 등 헌법 10조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심히 침해당하는 것과 탐정업을 준비 중인 퇴직 경찰 등 수십만에 달하는 공안직 공무원과 청년학생,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가 심히 침해당하는 것과 정보수집 대행업인 탐정업의 불법화로 인해 극소수 정보적 강자와 무수한 정보적 약자(국민일반)의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이 심히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 탐정사법의 제정 이유이다.

특히 헌법상 평등권과 맞물리는 무기 대등 원칙은 OECD 탐정의 존재 근거로 대한민국 헌재 국회 정부 및 대한변협이 지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무기 대등의 원칙은 형사절차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검사와 맞서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이 법률적 측면에서의 약자라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데 비해 정보 비대칭 심화로 인한 범외지대의 무수한 정보적 약자는 사실상 측면에서의 약자임에도— 변호사는 현장 정보조사와는 거리가 멀고 — 정보조사 전문가인 탐정은 불법이라 도움을 청할 수 없어 OECD수준의 무기대등의 원칙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대한민국도 아노미 的 사회 구조와 경제적·사회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갈수록 심화시키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불균형·편중·부익부 빈익빈으로 정보부족에 시달리는 의뢰인의 고충 해결을 대행해 줄 정보조사 탐정 수요가 확산일로에 있다.

요컨대 갑 vs 을 민사 형사 민원 관계에서 관련 정보는 갑에게 치우쳐 있고(월등히 큰 무기 소지) 을은 정보 부재이거나 오류·허위·역 정보를 검증치 못해(작고 부실한 무기 소지) 자구행위나 생존 경쟁이나 투자 전선에서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인간사(행동, 행방, 고용, 계약, 결혼, 약혼, 이혼)에 있어서도 국민의 알 권리(생존정보)는 부익부 빈익빈의 비정상적 자본주의 흐름에 지배당하고 있다

특히 억울한 수사나 소송을 당했을 때 누명을 뒤집어졌을 때 그 입증책임은 지는 개인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체포, 금융거래내역조회, 통신자료조회, 참고인 조사 등 공권력에 의한 정보수집 앞에 무력해 질 수밖에 없고 경찰이 사실상 개입할 수 없거나 형식적 개입에 불과하거나 내수사 종결했거나 수사기관이 불기소 또는 편파적일 수 있는

사건 사고에서 개인이 사건 사고 정보수집에 나선다 해도 개인정보보호법의 견제를 받게 되어 정보 수집의 한계에 봉착하는 것이다.

요컨대 우리 헌법 최고의 원리이며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 충족 차원에서 무기대등의 원칙 실현을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관계 확인 대행업(공인탐정)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대한변협은 탐정업을 호도하며 심지어 대의기관인 국회의 탐정법 입법을 좌시하지 않겠다고도 하고 있다.

(변협은 탐정이 가진 자에 유리한 제도라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변호사 제도야 말로 빈부격차에 따른 사법서비스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폐지하자는 사람은 없음)

이를 무기 대등의 원칙이 삶의 현장에 일상화된 OECD 잣대로 보면 변호사가 할 수 없는 탐정의 비법률적 현장 정보조사를 변호사가 문제 삼는 것은 마치 도둑이 목격자를 문제 삼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탐정 법제화나 위헌결정의 결정적 장애물은 국내외적 법적 사실적 논리나 국민 반대 여론이 아닌 신용정보법을 수비하는 대한변협의 강력한 탐정반대 블로킹에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다.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이 변호사를 찾아가면 우리나라 변호사는 되레 정보, 증거, 단서, 자료를 의뢰인에게 찾아오라고 하고 OECD 변호사는 탐정에게 의뢰하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은가!

대한변협이 우려하는 사생활 침해와 개인 정보 침해는 탐정이 없는 지금 오히려 불법 탐정들에 의해 최고 정점을 치닫고 있지 않은가 교통사고 우려 때문에 자동차 퇴출 운동이나 감산 운동이 전개 되는가

무기가 살상용이라 해서 무기 생산이나 수입을 반대하는 국가가 있는가 어떤 법이든 제도는 완벽한 것은 없지 않은가 OECD가 100여년 이상을 검증한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애용하는 그 상품을 수입해서 국산화하는 것이 대원군의 쇄국정책에 어긋나서 반대하는 것인가. OECD는 정보조사 탐정이 없는 대한민국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특히 한국에 있어 가진 자는 굳이 탐정이 없어도 재력이나 인맥 또는 편법을 동원해 고충이나 애로 및 사적 현안에 대한 궁금증(정보욕구)을 해결하기 때문에 오히려 甲 vs 乙의 乙이고,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배제된 정보적 약자이며, 변호사 문턱 넘기가 어려운 서민들이야 말로 저비용 고효율 탐정이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탐정은 의뢰 목적의 정당성을 충족하면 남녀노소, 내외국인, 빈자부자, 탈북자 등을 가리지 않고 그 고충과 궁핍증을 상시적으로 풀어 주는 상설 민원 대행업으로 국민의 생활필수품이나 다름없으며 유연하며 익명성과 즉응성이 강해 공권력 한계와 관료주의 극복 및 공공 안전 보완에 기여한다.

- 무기대등의 원칙이 삶의 현장에 일상화된 OECD는 무기대등의 원칙이 형사 절차의 변호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민사 민원 절차, 계약, 투자, 일상사 등에서 공인탐정이나 사설탐정에 의해 광범위하게 대행되고 있어 범죄 피해자, 소송 당사자, 민원 제기자, 정보적 약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평등권이 보장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헌법 제11조 1항)실현을 위한 형사절차상 무기대등의 원칙만 강조될 뿐(검사에 대응하는 변호사) 민사 재판이나 민원 절차 및 상거래 투자 등에 있어, 정보비대칭에 놓여, 억울 답답하거나 피해를 보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기 대등의 원칙과 접목되는 제도적 시스템은 사실상 요원하다.

우리나라는 아노미 的 사회구조와 경제적 사회적 격차가 정보격차를 날로 심화시키는 가운데 정보의 비대칭 편중 불균형 등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에 내몰리는 경제적 약자 층의 고충해결 대행 서비스업인 탐정업이 어느 국가보다도 절실함에도 탐정 공급 루트는 1961년 이후 60여 년간 원천 차단된 상태이고 특히 1977년 이후는 제정법 원리에서 벗어나 탐정업과 관계도 없는 신용조사법 및 신용정보법(신용조사법의 후신)에 의해 탐정 공급 루트는 전 방위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변호사는 법률조사에 걸 맞는 사실조사를 못(안)하고” “민간경비는 위해방지 활동에 걸 맞는 위해정보 수집을 못하고” “행정사는 사실조사에 걸 맞는 정보수집(분석)을 못하고”“판사는 재판 전문에 걸 맞는 정보(증거) 수집을 못하고” “기업은 특허 등 무역 외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보호 정보조사를 못하고” “보건당국은 AI 메르스 등 국가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사람 가금류 등 이동감시를 제때 제대로 못하고” “외교부는 해외 여행객의 신변 안전을 위한 현장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를 못하고” “경찰은 민사관계불간섭의 원칙에 의해 민사관계 사실조사는 못하고” “검찰도 민사관계 조사는 못하고”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된 수많은 정보적 경제적 약자들은 안정적 생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광범위한 이 틈을 브로커(broker), 불법 심부름센터, 다국적 탐정회사 등이 끼어들어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어 그로 인한 피해자는 증가일로다.

실상이 이리함에도 법률조사 전문가인 변호사가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를 허용하는 탐정법제화”를 문제 삼는다면, 마치 도둑이 목격자를 문제 삼는 이치와 다를 바 없다. 이는 민사 민원 당사자의 증인탐색, 증거수집, 민원정보탐색 등 정보수집 및 사실관계 조사에 있어 100여년 이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OECD 탐정 사례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정보는 곧 재화로, 국가의 가장 필요한 역할은 정보 비대칭성 해소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 심화는 국민 일반의 그릇된 판단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저하, 국민 불안증대 및 사회적 비용 증대 등이 수반되어 정부에서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리를 얻는 직업(탐정)을 두어 날로 심화되는 경제/ 사회적 정보 비대칭 해소에 나서야 한다.

변호사의 문턱(고비용 저효율)이 버거운 경제적 약자나 재판과 무관한 행동정보, 행방정보, 고용정보, 계약정보, 결혼정보 등 일상생활에서의 광범위한 정보적 약자들의 무기가 되어 줄 수 있는 저비용 고효율 탐정이야 말로 변변한 무기(변호사)를 갖지 못한 서민들의 든든한 무기(버팀 뭉)가 되어 정보(증거) 비대칭 해소 → 국민 일반의 경제적 사법적 불안해소 및 사회적 비용 감소 → 국가의 경제 사법 정의 실현 등 국가 사회 발전 및 국민 행복 추구권(헌법 제10조) 실현에 기여하는바 지대할 것이다.

요컨대 개인이 탐정에 의뢰하여 직접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신용정보법이 차단하고 그로 인해 국민이 법외지대, 정보소외지대에 놓이거나 불법 심부름센터 등 불법과 거래하고 있는 한 무기대등의 원칙(헌법 제11조 평등권)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정의는 요원한 것이다.

※ "민사소송 72.6%가 변호사 없는 나홀로 소송, 약자위해 법률시장 문턱 낮춰야"

(서울=연합뉴스) 최재서 기자 2020.10.5.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않는 이른바 '나홀로소송' 비율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5년~2020년 6월) 민사본안 소송 529만건 가운데 원고와 피고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는 384만건이었다.

⑤ 평등권 구현 분야

변호사는 법률조사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사실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민간경비는 위해방지 활동이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위해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사는 사실조사라는 전문 분야에 걸 맞는 현장 정보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기업은 무역외 거래 증가에 걸 맞는 시장 보호 정보조사를 제대로 못하고 보건 당국은 국가 전염병(AI, 구제역, 메르스 등) 관리라는 임무에 걸 맞는 보건 감시를 제대로 못하고 경찰은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에 따라 민사관계 조사를 못하고 검찰도 민사 조사는 못하며 형사법원은 국민 참여 재판에 걸 맞는 정보(증거) 수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밀려난 수많은 정보적 약자들은 답답함 억울함 불안함으로 안정적 생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통일예비경찰이 없는 대한민국으로서는 불시통일이 된다면 북한지역의 치안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도 제대로 할 수 없다.

년 간 해외 출국자 2천만 명 시대의 재외 국민 보호 시스템이 취약하여 여행객과 재외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데도 국가는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영사업무지침(외교부 훈령 제110호)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고 외교부 훈령으로는 범정부 차원의 유기적 협조가 제한되어 있어 재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와중에 이 틈을 비전문가인 인접 직역과 그에 편승하는 브로커(broker)와 수천 개의 불법 심부름센터와 다국적 탐정회사 등이 비집고 들어서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가와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의 역할은 정보비대칭 해소에 있다. 정보의 비대칭은 그릇된 판단과 부작용을 초래하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신뢰저하 및 불안증대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이 급증한다. 따라서 정보의 비대칭이 심화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국가는 전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영리를 얻는 직업(탐정)을 두어 사회에 만연된 정보비대칭을 해소하여야 한다.

그래서 OECD 34개국은 범죄수사 영역에 종사하는 탐정보다/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및 사실 조사(이하 정보조사) 즉 정보비대칭 해소에 종사하는 탐정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며/ 정보 소비자인 국민이 이들 중 저비용고효율 사설탐정을 찾아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는 것은 일 상화되어 있고 특히 판사와 변호사도 OECD 정보조사탐정의 최대 고객층인 것이다.

- ✓ 언필칭 태생적으로 사설탐정은 경찰의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제이거늘 사실상 대체재로 주장하는 즉 경찰이 부족해서 사설탐정을 허용한 OECD국가는 어디에도 없다.
가출청소년, 치매노인, 실종자 등 사람 찾기(강력범죄대상 제외)정보조사와 민·형사 소송자료 정보조사 등을 아노미 현상이 급증하는 현대국가와 변호사가 대응하기에는 이미 한계가 노정된 지 오래이며/ 이를 선제적으로 인지한 OECD 는 100여 년 전 부터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정보조사 사설탐정을 허용
- ✓ 정보조사 사설탐정은 흥신소 등 불법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들을 퇴출시키고 자격을 취득한 공안직 공무원, 청년학생 등 양질의 탐정자원으로 그 자리를 대체시키는 것이다. 정보조사 사설탐정제도가 생기면 OECD와 같이 변호사의 수입료는 현실화되고 민·형사 재판의 정보(증거)수집 ↑등으로 변호사의 승소율이 크게 증가하는 동시에 무기대등의 원칙에서 소외된 국민은 크게 감소되는 것이다.
- ✓ 우리나라는 1970년대 들어 사회복잡성의 증대로 정보조사 사설탐정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불법 탐정의 사회질서 법질서 문란행위 만연 등 사회적 국가적 피해가 속출함에도 1999년 이후 20여 년째 입법 공회전으로 스트레스 공해만 발생시키며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 정보편중 → 정보비대칭은 심화일로에 있다.
- ✓ 1996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후 국내 진출한 다국적 탐정회사나 외국탐정회사들 흥신소 등에 사적 공적 정보조사를 의뢰하자 국내 불법탐정은 입수한 정보를 스스럼없이 제공하고 심지어 이적 심부름도 마다하지 않는 가운데 OECD와 한국의 국가적 정보비대칭도 심화되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이치(정책이나 법제 등)는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것이어서 변호사 제도나 탐정제도를 가릴 것 없이 세상사 완벽한 것은 어디에도 없다.

헌법재판소도 평등권과 맞물리는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구현 차원에서 탐정 공론화를 통한 국회입법을 적시(2016헌마 473)하고 있다.

OECD 각국에서 보듯이 탐정제도는 네거티브한 영역에서 정보비대칭과 정보결정 장애를 해소하고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인 평등권(헌법 제11조 1)의 실질적 구현을 위한 관점에서 필수불가결하다.

- 모든 국가에는 피해 회복절차와 법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형식적인 정의에 그친다. 영화 ‘변호인’이나 드라마에서처럼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한 증거수집

에 적극적으로 뛰는 사례는 보기 어렵다. 있어도 변호사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한 데다 정보수집 기법이 부족해 성과를 얻기 힘들다. 결국 비전문가인 의뢰인이 직접 증거 등을 수집해 변호사에게 줘야 한다.

민·형사 사건을 겪는 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증거나 정보 수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누군가’ 도와줘야 한다. 그 누군가는 법률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합법적인 신분이어야 한다. 누군가가 없으면 지인에게 부탁하거나 심부름센터와 같은 불법 흥신소를 이용해야 한다.

방법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들처럼 변호사와 탐정이 협업하는 것이다. 탐정 역사가 200년에 가까운 미국에선 탐정 도움 없이 형사사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드물다.

- 자경주의는 국가 수사기관이나 치안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이나 단체가 그 기능을 대신하며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데서 생겨난 미국 서부 개척 시대의 산물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스마트폰 인구가 90%에 육박하고 SNS가 대중화되면서 법 위반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 특정인을 온라인상에서 시민 스스로 응징하려는 분위기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자경주의에서 변이된 디지털 자경주의가 팽배하고 있다.

이러한 자경주의와 디지털 자경주의 공통점은 국가 수사기관을 불신한 나머지 시민들이 나서 증거나 정보를 수집하고 범인을 추적하여 수사를 촉구하거나 범인을 검거하게 하는 것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네티즌 수사대가 수사기관이 놓친 현장증거를 포착하여 범인이나 차량을 특정 지움으로서 디지털 자경주의의 성가를 높인 바 있으나 최근 고(故) 김광석 사건에서 보듯이 네티즌이 수집 제시한 증거가 각 각 단편적으로는 사실이고 사실일 수 있으나 각 각 증거들의 상관관계에서 오류, 착오, 추리의 비약 및 수집된 정보의 분석, 해석 능력 미흡으로 네티즌 수사대의 공개 고발이 수사기관에 의해 무혐의 종결됨으로서 애꿎은 시민이 피해를 보거나 수사기관의 수사에 혼선이 생기는 등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

즉 네티즌 수사대의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에 의한 고발이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거나, 호기심에 치우치고 의욕이 앞서거나, 어설픈 탐정 홀릭 등 영웅 심리에 매몰될 시 자칫 마녀사냥 식 보복으로 비화될 수 있고 → 애꿎은 피해자 양산 → 공권력 실추 및 법치주의 약화 → 국민 체감 치안 저하 → 다국적 탐정회사 국내 진출 증가 → 국가 정보, 개인정보 유출 심화 → 국가 신인도 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이의 타파를 위해 우리나라도 OECD 형 탐정제도를 도입해 정보수집과 사실

조사 전문가인 탐정이 나서 증거, 정보를 수집 분석 종합 해석하거나 네티즌 수사대의 의뢰를 받아 네티즌 수사대가 수집한 증거와 정보를 양적이나 질적으로 보완하고 평가 분석 등 검증을 강화함으로써 네티즌 수사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재판 기관의 한계 역시 보강해야 할 것이다.

※ “한국도 탐정제 도입할 때 됐다”

2017년 09월 13일(水) 문화일보

정수상 대한탐정연합회 회장의 사무실 탁자에는 만화 ‘명탐정 코난’, 소설 ‘명탐정의 규칙’이 놓여 있었다. 정 회장에게 탐정을 다루는 만화와 추리소설은 국내 탐정제도의 정착을 꿈꾸게 하는 일종의 교과서였다. 정 회장은 고양경찰서장을 끝으로 퇴직한 베테랑 경찰 출신이다. 정 회장은 현직 경찰 시절 받은 각종 표창장을 가지런히 세워둔 사무실 창가에 서서 탐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정 회장은 “요즘 잠자는 시간만 빼고 탐정에 대해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며 종일 고민을 계속한다”며 “이제는 국내에도 탐정 제도가 도입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처음 탐정에 관심을 두게 된 건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연세대 행정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준비하던 정 회장은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민간경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연구했다. 민간 영역에서의 조사·경비 활동을 다루면서 탐정에 대해 알게 됐다.

여기에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일본의 상황은 탐정이라는 직업에 폭 빠지게 만든 계기가 됐다. 현직 경찰 생활을 하면서도 탐정 제도에 관심을 기울이던 정 회장이 실제로 탐정을 처음 만난 건 은퇴 후 일본에서였다. 지난해 4월 탐정 제도 도입을 위해 연수차 일본을 방문했을 때, 100여 명의 탐정을 고용해 도쿄(東京)에 있는 빌딩의 7~8층 전체를 사무소로 쓰는 기업형 탐정 회사도 보게 됐다. 이 회사는 특별 조사실과 첨단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세련된 사무실은 국내의 대형 로펌을 연상시켰고, 직접 만난 ‘명탐정’들은 만화에서 본 것처럼 카리스마가 넘쳤다.

정 회장은 낮에는 연수를 받고 밤에는 일본에서 존경받는 ‘선배 탐정’들을 만나 생생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동안 궁금했던 탐정의 세계에 대해 전해 들으면서 탐정 제도를 한국에 반드시 도입해야겠다는 확신을 더욱 다지게 됐다.

정 회장은 “일본은 과거 메이지(明治) 시대 때부터 시작해 탐정의 역사가 150년이 넘

는데 기업의 신용을 조사하거나 변호사의 의뢰를 받아 소송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하며 하나의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탐정을 “사실조사를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다. 탐정은 직접 법률적인 판단을 하거나 옳고 그름을 정의하진 않지만, 이런 판단에 근거가 되는 사실을 현행법의 테두리 아래에서 수집하고 조사하는 일을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탐정은 ‘홍신소’ ‘심부름센터’ 등에서 불륜 뒷조사를 하는 불법적인 직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미궁에 빠진 사건을 파헤치는 경찰보다 월등한 해결사로도 비친다.

정 회장은 “대중문화에 비치는 탐정의 모습은 왜곡되었거나 실제와 많이 다르다”며 “탐정은 오히려 기자나 행정사와 비슷한 직업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합법적인 범위에서 발로 뛰고 사람을 만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이 탐정 도입을 고민하게 된 건 그의 경력과도 관련이 있다. 1980년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순경으로 첫발을 댄 정 회장은 1년여의 파출소 생활을 한 뒤 정보경찰관으로 경찰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다. 공권력을 활용해 수사를 펼치는 형사들과 달리, 정보관은 치안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민간과 경찰 사이의 소통을 담당하기도 한다. 정 회장은 “경찰 중에서는 정보관들이 탐정과 비슷한 측면이 있다”며 “정보 경찰로 오래 활동한 것이 탐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귀띔했다.

한국에서 탐정제도 도입의 장래는 밝은 편이면서도, 해결해야 할 큰 과제가 남아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생각이다. 우선 탐정제도 도입에 정치권과 법조계 등 관련 기관의 공감대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래도 정식으로 도입되려면 탐정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신용정보법부터 개정해야 한다. 또 하나는 탐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입법이다.

정 회장은 지난해 7월 “탐정 제도의 도입을 가로막는 신용정보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현행 신용정보법에선 신용정보회사가 정보원·탐정 등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특정인의 소재·연락처·사생활을 조사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직업적인 탐정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받아들여지면 자유업으로서 탐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여기에 더해 탐정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탐정은 또 하나의 전문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다. 정 회장은 탐정제도의 도입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탐정 자격시험의 틀과 정보조사를 위한 개론서 집필을 마무리한 상태다. 정 회장은 “탐정제의 경제적

효과는 2조 원에 달하고 일자리는 1만5000개가 생길 것이다” “변호사 단체가 반대하고 있지만,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불황에 시달리는 법조 시장도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 회장은 탐정제도 도입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기억 나는 사건이 하나 있다. 정 회장은 “충남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과장을 맡던 2002년 관내에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수사 인력의 한계 등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를 살인죄로 처벌할 수 없었다”며 “탐정이 있어 조금만 더 파헤칠 여력이 있었다면 억울함을 호소했던 피해자 가족들이 실제적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았겠느냐”고 회고했다.

정 회장이 이 사건을 강조하는 이유는 공권력의 경우 시간과 인력 등에 한계가 있어 억울함을 호소하는 모든 사람의 바람을 들어줄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경찰이 종결했거나 사실상 손을 뗀 사건을 탐정이 계속해서 추적한다면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며 “또 경찰에 고소·고발되는 사건의 70~80%는 민사로 분류되는데, 형사처벌하기 어려운 이런 사건들을 탐정이 맡으면 경찰은 업무 부담을 덜고, 피해자들은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탐정은 경찰과 직접 마주칠 일은 거의 없다고 정 회장은 강조했다. 탐정이 할 수 있는 일은 로펌·언론사·기업의 의뢰를 받은 조사 활동에서부터 사람 찾기, 평판 조사, 물건 찾기, 보험 조사 등 매우 광범위하다. 정 회장은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이혼 소송을 위한 뒷조사로 탐정이 주목받은 적이 있지만, 관련 조사는 탐정이 하는 일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탐정이 정식으로 등장하면 법조계와 기업에 필요한 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맡게 될 것으로 정 회장은 기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법조계에선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찾던 이들이 탐정사무소를 이용해 더욱 쉽게 법에 호소할 수 있게 될 것이기에 결과적으로 법률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기업의 경영 활동을 위한 조사 업무 역시 탐정 회사와의 연계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고, 일부 대기업이 정보수집을 위해 탐정 업계 진출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탐정제도가 도입되면 경찰관들에게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경찰은 공무원 조직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인원도 많다. 지난해 기준 전국 경찰관은 총 11만 2842명이고, 같은 기간 퇴직자 수는 2815명에 달한다. 매년 수많은 경찰이 제복을 벗지만,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다.

정 회장은 “알고 지내던 경찰 선배를 길에서 우연히 뵈는데, 주차타워 관리인으로 일하고 있었다”며 “은퇴한 경찰이 30년 이상 일한 분야의 전문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수사·정보 전문가인 경찰들의 경력을 생각할 때 국가로서도 손해”라고 꼬집었다.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정 회장은 그동안의 경찰 경력과 연구 경험을 살려 탐정 교육과 관리에 힘쓸 예정이다. 정 회장이 생각하는 탐정의 자질은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 집중력과 관찰력, 추리력, 그중에서도 사람의 오감(五感)을 활용해 사실관계를 본능적으로 파악하는 능력이다. 정 회장이 직접 만든 대한탐정연합회 로고의 이름을 ‘오가미’로 정한 것도 오감을 이용한 문제해결 능력이 탐정의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정 회장은 “일부 법조계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를 보면 경찰과 탐정이 전혀 부닥치지도 않고, 법조계에서도 탐정의 조사 활동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며 “탐정 제도가 우리나라에 정착돼 높은 자질을 갖춘 명탐정들이 하나둘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에선 기업형 사무소나 개인 사무실을 개업해 탐정들이 활동한다. 일본의 탐정은 우리나라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경시청에서 관리한다. 다만 한국 경찰청이 탐정제도 도입을 수사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본은 경시청의 생활안전국에서 탐정 관리를 맡는다. 탐정의 역할이 형사사건을 수사하는 일은 거의 없다. 민간영역의 각종 의뢰를 전담하기 때문이다. 또 전국에 걸쳐 지부를 둔 각종 탐정 관련 협회가 경시청과 함께 자체적으로 탐정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일본에서 활동 중인 탐정의 숫자는 약 6만 명. 이들이 벌이는 탐정 활동은 매년 250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탐정이 의뢰인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비밀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 등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법을 정비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국제적 탐정 회사들은 한국에 컨설팅이나 리서치 명목으로 지사를 꾸리고 탐정 활동을 하고 있다”며 “한국인은 한국에서 탐정이 될 수 없고, 외국인은 가능한 웃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munhwa.com

5) 피해회복(권리구제)

자고이래 스스로 겪었던 일을 비롯 그 현장이나 사람, 사물 현상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거나 자구행위(권리구제)를 위한 미행, 추적, 관찰, 감시, 탐문 등 당사자의 직접적 기초 사실조사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로 용인되어 왔으나 사회 복잡성이 증대되고 첨단IT 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은 촬영(몰카), 녹음 등 자구행위의 방법과 대상이 통상적으로 사생활 침해 등 불법 경계선을 넘나들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원 재판 수사 등 유사시에 대비한 녹음 촬영 당위성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확산됨에 따라 개인이 증거확보 정보수집 등을 위해 직접 녹음, 촬영하거나 음성, 영상 자료의 증거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자구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제3자 간의 대화, 전화내용 녹음은 수사기관이나 형사 법정에 공개하거나 제출할 수 없어 불법 녹음된 원천 자료와 정보를 이용한 결정적 증거와 정보를 찾기 위해 사이버 불법 탐정을 찾는 사례도 증가)

OECD는 억울하고 답답한, 곤경에 처한 국민이 자연스레 탐정사무소를 찾아가지만 한국은 탐정이 활성화되지 못해 공여지책으로 사법 피해자 모임, 관청 피해자 모임, 실종가족 찾기 모임, 소액주주 피해모임, 의료사고 피해 모임, 학교폭력 피해 모임 및 편법을 수반하는 피해자 지원 단체 등 사적 자구모임을 찾는 한편 불법심부름 센터를 노크하고 있으나 문제 해결은커녕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자칫 불법의 공범 화 되어 불법 측의 의뢰비 과다청구, 부실조사, 공갈, 협박 등에 직면하고 있다.

국내 실상이 이러함에도 OECD 탐정이 억울하고 답답한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라는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업으로 국내외에 널리 알려 지면서 탐정 서비스업의 국내 수요는 갈수록 ↑ 신용정보법에 의해 합법(공인) 탐정 공급처가 막혀 있다 보니 편법탐정, 불법 탐정과 거래하는 국민 ↑ 그 피해 역시 날로 ↑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요컨대 불법심부름 센터에 국민의 신상을 맡겨 놓는 것 보다, 사적 피해구제 모임에 편법적으로 국민의 문제 해결을 의존하는 것보다, 탐정을 법제화시켜 국가가 관리하고 공인탐정이 국민의 불안과 불만, 걱정 및 정보 결정 장애를 해소시키도록 하는 것이 백번 낫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지만 유독 대한변협만 모른 체 하고 적반하장 공인탐정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문제 해결 출구가 막힌 국민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가족들이 미아가출인 치매노인 실종자를 찾아 전국을 헤매다 직장도 건강도 재산도 잃고 가정마저 붕괴되고 년 간 수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로 애꿎은 피해자 양산은 물론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은 전 국민이 피해자다.

학교폭력 대책 위원회의 부실한 사실조사에 많은 학부모가 재심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억울 답답하며 기댈 곳 없는 정보적 약자인 Z은 정보적 강자인 甲에 이끌리며 소송정보, 생존정보 등 각 종 정보(증거)부족에 애타고 신음하고 있다.

또한 탐정의 공급적 측면에서의 대표적 피해 사례를 보면 OECD는 탐정이 하는 일을 우리는 가뜰이나 부족한 경찰이 도맡아 하면서도 퇴직 경찰의 전문성은 사장되고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는 철저히 침해당하는 등 절대다수의 퇴직 경찰과 공안직 공무원이 실직 상태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현실에 직면하고 공안 관련 학과를 나온 수십만 청년학생들도 탐정을 할 수 없어 청년실업의 한 가운데 놓여 있다.

OECD 국가들의 탐정은 국가기관·공사단체·개인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전문기법을 동원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수배자에 대한 주변 협조자를 손쉽게 확보한다거나 수사기관보다 훨씬 지능적인 미행·잠복·탐문·채증이 가능하다. 이들은 특히 20대 국회 포지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소화)이 아닌, 네거티브 방식(탐정 업무범위 최대화)을 취하고 있어 1861년 링컨 대통령 암살 사건과 1998년 클린턴-르윈스키 성추문 사건 당시 단서를 포착하는 등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일부에서 탐정 법제화로 사생활 침해를 우려한다. 그러나 이미 국내에는 3000여개 심부름센터가 탐정 흉내를 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행, 도청, 위치추적, 폭행, 살인, 납치 등 탈법적 활동을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국내는 등록탐정이 활동해도 감내할 수 있을 만큼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안전장치가 충분하다. 미흡한 점이 있지만 국가관리 등록탐정의 국제적 검증 시스템을 국내에 철저히 적용한다면 그리 우려할 만한 일은 아닐 것이다. 오히려 국가의 관리를 받는 등록탐정 시대가 열리게 되면 불법 심부름센터, 흥신소의 난립과 탈법이 크게 위축됨은 자명하다.

- 학교폭력 현장에 “돈 주면 때린 애 때려줍니다.” 라는 사이다성 광고로 불법탐정들이 학교폭력 해결사를 자임하고 나서는 웃지못할 기현상이 벌어지면서 국격 훼손마저 우려되고 있다.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불법탐정(심부름센터, 00컨설팅, 00민간 조사관등) 광고에서 보듯이 돈만 주면 의뢰자가 원하는 사적 응징 행위(폭행·협박·납치·살인·채권추심·위치추적 등)와 개인정보수집(약혼자·배우자·선거후보자 등)을 대행해 준다는 치명적 유혹은 불법·불량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두터운 수요층을 이루고 있음은 믿고 싶지 않지만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로 인해 불법탐정의 공략대상으로 전략한 피의뢰자들의 직간접 피해가 확산됨은 물론, 의뢰자의 불법탐정 공범화, 의뢰과정에서의 정보유출로 인한 의뢰자 피해소출, 불법탐정 약점에 편승한 갈취폭력배 등장 등 의뢰자와 불법탐정마저 직간접 피해자가 되고 있는 지경이다.

이에 경찰은 불법탐정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의 시장원리에 의해 온·오프라인상에서 은밀하게 이뤄지는 음성적 거래를 발본색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탐정법이 없고 탐정수요는 넘치는 대한민국 현실을 감안할 때, 불법탐정 폐해를 국민에게 알려 예방하는 데도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 수사권은 물론 제한적 수사권도 없이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의존하는 탐정은 경찰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라는 일반적 특성마저 애써 간과한 대한변협은 만약 탐정과 경찰을 대체적 관계로 잘못 알고 주장을 했다면 -미아 가출인 실종자 수색 및 장기미제 사건 등 극히 일부 영역의 공조를 제외하고- 탐정이 있을 곳에 경찰이 있지도 않고, 경찰이 있을 곳에 굳이 탐정이 기웃거리지도 않는 다른 OECD 국가의 탐정과 경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경찰도 스텝이 꼬였다. 2016년 경찰은 112 신고의 패러다임을 대전환했다. 비 긴급 신고(년 간 900여만 건)와 민원 상담성 신고(년 간 900여만 건)는 긴급 출동 대상에서 제외하고, 생명 신체 재산에 중대한 위협이 야기되는 신고만 긴급 출동하는 것이다.

다른 OECD 국가의 경우, 탐정이 자연스럽게 비 긴급 신고나 민원 상담 성 신고를 의뢰받아 해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찰은 연간 1800여만 건에 달하는 비 긴급, 민원 상담 성 신고 건에 대한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담당 직역 없이 선언적으로 사실상 아웃소싱해 버린 것이다.

물론 그 이면을 보면 비 긴급 신고 출동으로 인한 긴급신고의 출동시간 지연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경찰청 수사국에는 탐정 법제화를 위한 TF팀이 있기는 하다.

② 공권력 사각지대 분야

중국 발(發) 미세먼지가 전 국토를 뒤덮어 국민은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또 다른 국내 발(發) 미세먼지가 국민의 답답함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권력 소외지대의 각종 피해 이른바 사회적 미세먼지인 것이며 이 미세먼지가 더 강하고 독하게 느껴지는 것은 중국 발(發) 물리적 미세먼지처럼 며칠 건너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65일 실시간 국내에서 국민 곁에서 발생되기 때문이다.

OECD 자본주의국가는 누구나 접근 가능한 방법으로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수집 대행서비스를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다는데 이론은 없다.

억울하고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국민들은 대다수가 정보적 약자로 자구행위를 위한 정보조사와 분석에 목말라 정보조사 전문가인 탐정의 대행서비스를 받고자 하나 국내에 합법 창구가 비좁다 보니 알게 모르게 불법창구 속으로 유인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적 약자의 절박함에 편승하는 고비용저효율 불법탐정들은 사회적 미세먼지가 되어 국민을 옥죄고 있다.

그 미세먼지는 돈 주면 때린 애 때려 준다는 학교폭력해결사, 증거조작 공갈 협박 위 치추적 일삼는 불법심부름센터, 284개 공익신고 관련 법률이나 부패신고 법률 등에 편승하고 악용하는 신고과파라치, 유흥정보 등 민감정보 판매 악덕탐정, 불법채권추심 흥신소, 이혼 이별조장 등 편법 탈법 민간조사 등으로 실로 다양하다.

경찰 검찰 판사가 못하고, 변호사가 못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못하는, 국민권익위원회 가 못하는 국민의 고충 민원은 무수히 많다, 그래서 OECD는 탐정을 허하는 것이다.

탐정의 무수한 순기능은 애써 외면하고 극소수 역기능만 부각시키는 변협이나 이에 동조하는 국회의원, 정부당국을 보면 그들의 방임으로 인해 발생하는 작금의 사회적 미세먼지에 대한 제거대책은 안보이고 탐정불모지대로 인한 불편함이 없어 보이는 그들의 이대로 좋다는 속내만 엿보인다.

당장 탐정업무 중 옥석을 가려 허용할 것은 허용하고 사회상규 공서양속에 반하는 영역은 막아야 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③ 변호 사각지대 분야

대한변협은 변협신문 사설을 통해 “공인탐정법안은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하겠다는 법안이며 프라이버시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크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공인탐정 법제화가 마치 주로 전과자이며 돈만 주면 다하는 음성적 불법적 심부름센터의 구성원을 탐정으로 양성화하는 듯이 얼버무린 가운데 기존 심부름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미래 탐정 시장의 절대 다수를 점할 퇴직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 탐정·경찰학 등 전공 청년학생, 경비업 종사자, 탐정 구직 국민 등 몇 십만에 달하는 탐정 탐구 계층의 엄연한 존재를 애써 무시해 버렸다.

누차 강조했지만 탐정은 심부름센터의 음성적 불법행위를 양성화(합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불법탐정을 퇴출시키고 그 빈자리에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에 의한 합법적 기법과 직업윤리를 갖춘 우량 자원인 공안직 공무원 등 공인 탐정을 신규로 대거 투입하는 것이다.

즉 환부의 고름(불법 탐정)을 짜내고 새 살을 돋게 할 저비용 고효율 치료 약물(공인 탐정)을 주입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특하면 정치사찰에도 악용될 수 있다는 변협의 주장은 OECD 국가나 그 국가의 탐정이나 변호사가 들으면 실소를 금치 못할 3류 코미디만도 못한 실언인 것이다.

그 언급의 저의는 아마 정치권에서 공인탐정을 입법화하지 못하도록 미리 췌기를 박기 위함으로 보여 지나 탐정은 오히려 혼탁한 지방 선거판을 정화하고 국가기관의 기능적 인력적 한계를 보완해 국가운영의 순기능에 이바지함은 더 이상 강조할 나위도 없다. (아주경제 2015, 2016, 2017 및 2018년 1월 12, 19, 26, 2월 2일 탐정 릴레이 기고 참조)

특히 공인탐정의 업무가 사건에 관한 사실조사 등 법률사무에 해당됨으로 변호사법에 저촉된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은 과연 무소불위나 기고만장의 끝이 어디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현행법하에서 소송 관련 사실조사는 그렇다 치자. 그런데 소송도 아니고 법률 행위 개연성도 없어 변호사와 무관한 위해방지, 위기관리, 고용 혼사 상거래 등 일상 정보 수집 분석 서비스, 사람찾기, 물건 찾기 등 비 법률 영역도 변호사법으로 규율하겠다는 발상인지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6) 위해방지 (위기관리) 영역

① 불법탐정 분야

국가공권력이 못 미치는 국민(의뢰인)의 각 종 고민 해결을 위한 “대응 정보수집과 사실조사”라는 국민 생필품(탐정)이 판매 금지된 사회에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시장 경제 속성상 이의 음성적 구입은 증가일로다.

이의 유일한 공급처임을 자임하는 “각 종 불법심부름센터”는 경찰의 단속 정도는 불법 심부름 보상인 고액 베테에 비할 바가 아니라는 듯 아랑곳 하지 않고 성업 중이다.

이들에게 조세 정의·사법 정의는 먼 나라 얘기다.

심지어 온라인상에서 경찰신분증·경찰복·경찰청장표창 등을 내걸거나 검찰·국정원 등 국가기관 근무 경력을 내걸고 그 진위여부가 베일에 가린 채 마치 정의의 사도인 양 거리낌이 없다.

물론 1950년 말 이후 70 여년 간 불법홍신소나 불법심부름센터라고 스스로 커밍아웃 하면서 영업하는 곳은 전국에 단 한곳도 없다.

또한 그림자 조직으로 존재는 하되 실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그러나 심부름센터가 사전적 정의대로 의뢰인의 잔심부름만 해주는 곳이라고 믿는 성년국민 또한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영·미 등 OECD 국민들은 억울하고 답답하거나, 결백을 아무도 믿어 주지 않거나, 甲vs 乙 정보 비대칭에 놓여 상대방의 공개·미공개·비공개 정보에 목마르거나,

거래·계약 시 또는 단체·개인 간 각 종 MOU 체결 시

기타 공권력의 사각·소외 지대에 놓여 고립무원에 처했을 때 등등

우리국민이 집구하러 부동산중개사무소 찾아 가듯이 자연스럽게 탐정 사무소를 찾아 간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공인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아서 찾아 갈레야 갈 데가 없고 급하고 답답하면 신용정보법을 위반하는 형식적 불법심부름센터나 형법·특별형법 등을 위반하는 실질적 불법 심부름센터를 가리지 않고 노크한다.

옛말에 “우선 먹기는 곳감이 달다”고 의뢰하는 동시에 불법의 공범과 협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나중 문제다.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러한 궁핍하고 급박한 그리고 큰 일에 가슴떨리는 의뢰인의 든든한 지원군을 자처하는 ○○심부름센터, ○○민간조사, ○○컨설팅 등은 불법의 공범화되어 신고할 수 없는 의뢰인의 약점에 편승 돈만 먹고 튀거나, 성과금을 걸고 조폭까지 동원 살인 폭행 등 불법을 자행하거나, 의뢰인과 피의뢰인을 넘나들며 공갈 협박 흥정하거나, 학교폭력 현장에 진출 돈 주면 때린 애 때려 주거나, 개인정보불법제공, 불법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 등 직업 윤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의 불법 탈법 행태는 실로 일반의 상상을 초월한다.

돈만 주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든 다 하는 불법 심부름센터·홍신소·민원해결사 등 무통제 무책임 무납세 불법탐정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정신적이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수요층을 공략하면서 수임료 과다청구, 부실보고서 통보, 동일 건 쌍방 수임 등으로 의뢰인을 기만하거나 의뢰인 개인정보 유출 및 피의뢰인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 등 사생활 침해는 물론 심지어 조폭과 연계된 불법탐정들까지 성업 중에 있다.

이렇듯 의뢰인의 답답, 억울, 곤경 상황에 편승한 불법탐정의 묻지마 수임이 도를 넘어 피의뢰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시적 비가시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사회 문제화 되고 있음에도 경찰은 중대 사건 사고에 매몰되다 보니 불법 탐정 단속은 뒷전에 있다.

실제로 대형 포털의 불법탐정 광고 범람에 대한 변협이 침묵, 일부 신문 방송의 불법탐정 공개 인터뷰 및 동행 취재 보도, 이혼, 혼인, 약혼, 동거, 고용 계약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행동 소행 정보조사 시장 팽창(일본 탐정시장의 최대 영역, 20% 점유)등 불법탐정에 대한 사회적 목인 분위기와 OECD형 사설탐정 수요 급증도 경찰의 불법 탐정 단속의 후순위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팔아 4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홍신소업자, 통신사업자(대리점), 콜센터 직원 등을 검거했지만, 이는 전국에 4천여 개로 추정되는 불법탐정 업소가 저지르는 만연된 불법행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특히 간통죄 폐지 이후 이혼과 사실혼 배우자 및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 소송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공격과 방어용 증거수집이 절실해지자 이에 편승한 불법탐정의 불륜 증거(정보)조사 시장은 급팽창하면서 사생활과 위치정보 등을 불법 수집한 불법탐정의 보고서가 의뢰인의 이름으로 둔갑해 법정에 버젓이 제출되고 효력을 발생하자 불륜증거 잡기 의뢰인이 계속 증가하는 악순환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학계 등 식자층에서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망을 불법탐정이 아닌 합법적인 등록탐정이 이어준다면 시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와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보호망은 그만큼 두터워질 것이며 OECD의 예에 비취 청소년들의 관찰력, 추리력, 창의력, 탐구력 및 인성 정의감도 제고돼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억제에 기여하는 부수 효과도 거양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탐정 흉내 사이버 심부름센터 거르자”...국회, 탐정관리법 발의

(중앙일보 기사)

10일 국회에서 지난 8월 합법화한 탐정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탐정업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탐정사법)'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신용정보법에서 탐정업 금지 조항이 사라진 뒤 국내에서 활동하는 탐정사는 8000여명이다. 탐정 관련 민간단체는 20여개, 자격증 종류는 31개에 달한다. 이 의원은 "탐정에 관한 법률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탐정사무소와 관련 단체가 난립하고 있다" "관련 자격증을 대량 남발하면 기존 심부름센터나 흥신소 종사자도 탐정으로 활동할 수 있다"며 "무분별한 사생활침해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탐정하려면 경찰청 등록해야"

국회 발의한 탐정사법은 탐정의 업무 범위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설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탐정이 되려는 사람은 경찰청장이 허락한 민간자격관리기관에서 실시하는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또 탐정사가 경찰청장이 지도하는 탐정사협회에 반드시 가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전과자나 파산한 자는 탐정이 될 수 없다는 규정도 들어갔다. 여기 따르면 실형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과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등은 탐정사 등록을 할 수 없다.

탐정사가 업무 중 의뢰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책임을 다하도록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탐정사 자격 관리를 맡는 경찰청장은 이를 어기는 탐정업체의 설립인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명수 의원은 "현실적으로 국가의 수사력은 시간적·물리적으로 한정돼 있다"며 "실종 가족의 소재 탐지, 지식재산권 피해 상황 등을 파악해야 할 때는 경찰이나 검찰에

② 미등록 탐정 분야

이웃나라 일본은 한해 250여만 명이 탐정을 찾고 있고 경제·사회 복잡성의 증가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100여년 이상의 관습적 합법 탐정 역사를 가진 일본은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어도 탐정과 의뢰인 간 비용 문제, 부실 보고서 문제 등 계약 트러블이 심화되어 2006년 탐정법을 제정했고 2016현재 탐정법 제정의 유용성이 크게 인정받는 가운데 20대 국회 공인탐정법 제정에 있어, 법조 3륵에 버금가는, 치안 3륵의 한 축인 탐정을— 기존 두 개의 축인 경찰법·경비업법이 일본 법제를 원용한 것 같이 —일본의 네거티브 정보수집 탐정법제를 원용한다고 하는 것은 치안의 효율성 제고와 탐정업과 경비업의 상호보완 발전 등에 비춰 볼 때 당위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일본과 법제·경제·사회·문화 환경이 비슷한 우리나라에 있어 국민이 심부름센터에 의뢰한 건수는 얼마나 될까? 수치로 통계가 잡힌 것은 없지만 일본의 년간 탐정 의뢰인수에 견줘보면 근사치는 어렵잡을 수 있다.

일본 인구 1억 2500만 명과 우리나라 인구 5000만 명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도 한 해 100여만 명이 불법 심부름센터를 찾는다고 봐야한다.

이러함에도 우리나라는 불법 심부름센터가 몇 개소나 되는지 이를 찾는 국민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표현이 보다 적절할 것이다. 그래야 법치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그나마 피해갈 수 있으니 말이다.

이처럼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하는 의뢰인은 물론 複數(복수)의 피 의뢰인 등 수백만 명의 자국민이 드러내놓고 불법의 표적이 되거나, 사실조사 불가능 및 정보 비대칭으로 고통 받고(국민적 피해), 다국적 탐정이 기업 및 국민의 정보와 국부를 가져가는데도(국가적 피해) 국민의 권익 수호자인 국회의 입법은 20여 년째 표류하고 있다.

이제 21대 국회는 탐정이 법제화되어도 그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된 포지티브 방식(탐정 업무 범위 최소화)이라면 국민의 다양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및 위해방지 욕구는 관행대로 불법심부름센터로 향할 것이며 이런 수요가 있는 한 불법 심부름센터는 여전히 호황을 누릴 것이다.

즉 돈만주면 수단·방법가리지 않고 다하는 불법의 속성상 부유층 고객은, 의뢰 이유를 묻고 따지는 탐정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불법심부름센터가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요즘 경찰의 단속에 내몰린 조폭들이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린다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이들에게 돈만 주면 청부살인, 납치, 폭행, 협박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조폭들은 직접 불법 심부름센터를 하거나 폭력과 협박을 행사하며 여타 불법심부름센터를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내 가고 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위정자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법제정도 급하지 않다. 제정하더라도 탐정 활동 범위를 제한하려는 쪽이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포장된다.

OECD가 탐정의 업무범위와 대상을 굳이 탐정법으로 규제하지 않는 이유는 명확하다.

법조 시장도 수요와 공급의 시장 원리가 지배하는 것인데 탐정 수요를 일부만 허용하게 되면 나머지 수요는 불법 심부름센터로 향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회복 권리 구제 위해방지 등 폭 넓은 탐정 수요가 공권력 사각 지대에 놓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국민의 법외 의뢰가 반복될 시 탐정들이 법외 업무를 취급하는 등 부실화되면서 악화(불법탐정)가 양화(등록탐정)를 구축하는 그레삼의 법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렇듯 날로 증가하는 불법 탐정의 심각한 인권 유린과 사생활 침해 및 살인, 납치, 폭행, 협박 등 일상화된 탈법은 어찌할 것인가?

사회는 복잡다단해 지고 → 탐정 수요는 계속 늘고 → 짝퉁 탐정인 불법심부름센터는 확산일로이고 → 애꿎은 피해자는 속출하고 → 국가신인도마저 위협받고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이런 방치된 난제를 제도적 틀 속에서 관리 감독하겠다고 만든 법이 이명수 탐정사법으로 불법탐정은 단속하고 정보조사업무 유경험자와 대학원의 연구 경력자, 청년학생 등을 민간자격시험을 통해 전문 탐정사로 선발하는 것이다.

법제화가 되어도 초기에는 미등록 탐정은 살아남으려고 수단 방법을 다 할 것이고 탐정사들은 각 종 규제에 묶여 국민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사례가 다수 발생될 것인바 불법의 신속성이나 묻지마에 익숙한 의뢰인들을 탐정사들이 흡수하려면 소관부처(경찰청 생활안전국)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법제화 초기 과도기에는 탐정의 영업형태를 법인 내지는 합동(3인 이상)으로 규정)

③ 스토킹 피해방지 분야

사회 문화적 환경이 우리와 유사한 일본은 2000년 제정된 스토킹 행위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 ① 쫓아다니기 잠복하기 쳐들어가기
- ② 감시하고 있다고 알리는 행위(전화 문자 전단지 등)
- ③ 집요한 면회나 교제요구
- ④ 난폭한 언동 (언어폭력, 자동차경적 연속취명 등)
- ⑤ 무언전화, 장난전화, 팩스전송
- ⑥ 지속적 오물송부
- ⑦ 명예훼손(유언비어 유포 등)
- ⑧ 성적수치심침해(외설적 글 사진 전송 등)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음에도 피해여성 스스로 증거확보가 어려워 스토킹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법률의 실효성이 떨어진 가운데 스토킹 규제법의 보완입법 성격인 탐정법이 제정(2006년)되어 스토킹 처벌이나 피해회복을 위한 증거 수집과 스토킹 피해방지나 위기관리가 탐정사의 대표적 업무로 부각되면서 피해여성들의 스토킹 격퇴 의뢰가 경찰서보다 탐정사무소를 향하는 추세이다.

이는 2018년 경찰의 스토킹 피해상담 7만7천 건(전년대비 6.9% 증가) 중 피해접수가 2만1천 건에 그친 점에 비춰 볼 때, 나머지 5만6천 건의 상당수가 피해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정보(증거)수집 등을 의뢰하기 위해 탐정사무소를 찾아간 데서 입증되는 것이다.(피해자는 여성 87.9% 남성 12.1%, 스토킹은 교제상대 등 92.5%가 지인)

피해여성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증거수집과 사실조사 대행은 OECD의 탐정영역으로 특히 일본의 스토킹격퇴 전문탐정과 교류하며 스토킹 격퇴 기법개발 공조나 해외 여행객 범람시대에서의 국제적 스토킹 대응에 대한 상호보완적 대처 방안도 모색하게 될 것이다.

요컨대 미완의 대기 탐정사는 스토킹 등 사회적 기생충이나 공공의 적 킬러 전문가로 국민은 공격수를 원하면 자격시험이나 교육에 참여하고 수비수를 원하면 피해증거수집 보고서나 피해방지 서비스를 받는 공수 양면을 취사선택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자유와 행복추구권 실현에 바짝 다가설 것이다.

④ 기업 위기관리 분야

기업의 오너 리스크, 보안, 계약, 협약 및 고의 부도·파산 등 관련한 현장의 정보수집 분석 보고서나 은닉재산을 찾아내는 기업 탐정은 증가일로이다. 또한 기업의 인사팀의 의뢰를 받아 직원의 고용 승진 징계 등 인사 자료나 직원이 제출한 경력자료를 크로스체크하는 기업탐정도 증가세다.

변호사들은 탐정을 미행 잠복 추적 촬영 등 증거수집 단순 노동력이나 보조축으로 활용하려는 현실에 비추어 기업관리 탐정은 변호사와 대등한 업무영역으로 일본 등 OECD에서는 정착된지 오래이다.

⑤ 통일치안 분야

공인 탐정시대가 열리면 대한민국의 정치면에서는 선거관이 한층 정확화될 것이다. 경찰·검찰, 불법심부름센터보다 기초사실조사가 수월하고 활동이 자유스러운 탐정에 의해 선거관이 강한 견제를 받기 때문이다.

또한 경제면은 과도한 변호사 선임 비용이 OECD수준으로 현실화 될 것이다. 증거수집 전문가인 탐정들의 현장활동이 개시되면 변호사의 위상과 역할은 축소되어 변호사 착수금과 수입료가 인하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간경비와 탐정의 상호보완적 결합으로 민간보안산업이란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면서 일자리 창출과 영화, 출판 등 관련 산업의 동반 발전 등 이른 바 창조 경제도 선도할 것이다.

사회면에서는 탐정의 관찰력과 정보 수집 능력에 힘입어 국·내외 사람 찾기(범죄, 비범죄 망라)와 물건찾기 능력이 높아질 것이고,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은 낮아질 것이다. 민·형사 사건 증거자료수집이 용이해져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현상도 타파되는 것은 물론, 위증, 무고 등 거짓말 범죄로 인한 피해와 생활 민원 등 국민 고민도 술술 풀릴 것이다.

자식의 행동조사나 문제행동방지에 기여, 학교폭력 등 각종 청소년 범죄가 감소되면서 맞벌이 부부와 출산율이 증가하고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심부름센터도 크게 위축될 것이다.

문화·교육면으로도 도움이 된다. 명탐정 코난, 셜록 등 영화·애니메이션, 소설, 게임 등에서 보듯이 탐정 법제화와 추리 탐정물은 청소년의 인성 창의성 계발과 종합적 사고력 함양에 크게 기여한다.

통일치안에 있어서는 OECD와 같이 비가시적·비긴급성·비출동성 치안 영역이 자연스럽게 탐정의 영역화 됨으로써 가시적·긴급성 경찰활동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관 증원 효과도 나타나 112 신고 출동 시간이 단축되고 강·절도 등 5대 범죄 예방·검거율이 제고되는 등 획기적 치안 성과가 도출될 것이다.

※ 통일 대비 남북 통합 원원 전략 보고서에 의하면 불시에 찾아오는 비계획적 통일이 되면 식량난 타개와 최저생계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 180여만 명이 남한으로 유입되고 장기적으로는 500여만 명이 서울 및 평양으로 몰려드는 현대판 엑소더스(Exodus) 현상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통일 초기 의식주 대책 없는 180여만 명의 남한 유입과 100여만이 넘는 북한 주민이 평양으로 유입되는 가운데 ✓ 대한민국 전역은 기아선상에 놓여 있는 북한 주민의 생계형 범죄와 反 통일세력에 의한 집단 폭력 시위 ↑ ✓ 이에 대처할 경찰의 인력과 정보력 ↓ 특히 북한 지역의 인적·물적·지형적 치안정보력 ↓ ✓ 통일 국가경제 ↓ 남북한 민족일체감 ↓ UN 평화유지단 요청 여론 ↑ 등 급기야 통일의 빛은 바래고 국가 신인도는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치안 대책 없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쪽박인 것이다. 그러함에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한 통일 치안 대책이 없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역대 정권은 통일 치안에 대한 절박한 고민 없이 통일 정책을 전가의 보도처럼 들먹이고 있다.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통일치안 예비경찰을 확보하였음에도 지금 북한보다 여러모로 안정된 동독 지역의 치안을 안정시키는데 3년이나 걸렸다.

그렇다면 계획적 통일을 견인해 낸 독일보다 모든 면에서 열악한 대한민국에 비계획적 통일이 찾아올 시 남한 지역은 차치하고 북한 지역 치안 유지는 한계에 봉착할 것인데 그 대안은 무엇일까 ?

요컨대 그 대안은 치안의 보완제인 OECD형 탐정에서 찾아야 한다.

통일에서 비롯되는 경찰 인력 수급 난항으로 북한 치안 정보 수집에 난항을 겪을 때 그리고 경찰 정보망(휴민트) 구축은 장기간 소요됨에 비춰 볼 때 탐정의 신분 은닉·위장성과 탐문 관찰 감시 추적 등 탐정의 대표적 기법에 편승한 정보 수집 및 기초사실조사의 우월성과 수월성과 즉시성은 북한 전역의 민심, 유언비어, 특히 동향 등 치안 정보를 실시간 수집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⑤ 청소년 인성·창의성 계발 분야

탐정이 불법인 대한민국에서는 탐정을 동경하는 수많은 청소년들이 설 땅이 없다. 지금 대한민국은 청소년들의 불(不)건전적, 반(反)창의적, 비(非)교육적 게임 광풍으로 학부모와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으면서도 게임을 하지 말라는 실효성 없는 소리 대신 오히려 게임(스마트 폰 등)으로 사제간, 부자간, 모자간에 소통하면서 청소년들의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아직 마땅한 대안은 못 찾고 있다.

탐정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안으로 떠 오른다. 탐정이 청소년들의 창의력, 상상력, 학습력, 탐구력, 관찰력, 분석력, 추리력, 판단력, 모험심, 정의감, 도전욕 및 인성 계발에 지대한 공헌을 해 오고 있음은 OECD 탐정 100~200여년 역사에서 익히 보아온 터이다.

사물의 본질을 꿰뚫는 관찰력 → 추리력 → 통찰력에 의한 순차적이고도 직감적인 판단은 컴퓨터는 할 수 없으며 창의성을 가진 인간만이 할 수 있다.

즉 탐정은 불의에 대한 정의, 문제에 대한 해결, 강자에 대한 약자(의뢰인) 보호, 범죄(인) 예방 검거 및 경찰과의 협력 등 인성과 창의성 없이는 그 수행이 불가능한 직업으로 청소년의 인성과 창의성 계발에 추리 탐정 소설·영화·애니메이션·만화·연극·게임·캐릭터·로고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는 게 OECD 각국의 교훈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탐정이 불법이어서 이와 같은 탐정 문화나 학문, 산업은 말 그대로 불모지나 다름없으며 OECD 34개국 중 가장 낙후돼 있다.

미, 영, 일 등 OECD 33개국이 탐정을 통한 청소년 인성과 창의성 계발에 성공을 거두고 있음에도 대한민국만 마이웨이이다.

이제 교육부, 교총, 각급 학교, 학부모는 나서야 한다. OECD와 같이 탐정 법제화(합법화)로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탐정 법제화를 촉구해야 한다.

⑥ 공익신고 분야

경찰은 작년에 마약공급루트 추적과 신종 던지기 판매수법 현장을 파고들어 마약사범 1만2613명을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문제는 유명연예인 등의 전유물로 여겨져 온 마약사범이 40만 명에 이를 정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마약사범을 비롯한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침해하는 공익침해범죄는 미(未) 적발건수가 적발건수의 수십 배에 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익침해 범죄가 의외로 사회를 갹아먹는 암적 존재가 될 공산이 높다는 의미다.

이처럼 숨어있는 '암수(暗數)범죄'를 발본색원하려면 경찰, 지자체나 인사이드 고발에 의한 단속만으로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이에따라 민간자격시험과 교육 등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역량을 갖춘 아웃사이드의 양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공익신고활성화 차원에서 보건범죄단속 특별법, 환경범죄 가중처벌특별법,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 학교급식법, 아동복지법, 대기환경 보전법 등 284개 법률 벌칙 해당행위와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자격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외부고발을 견인하는 공익침해신고 전반의 민간자격신설을 금지 공고한 것은 아무래도 문제가 많아 보인다. 즉 공익신고를 내부고발에만 의존하다 보니 기본적으로 한계가 클 수 밖에 없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효과도 큰 외부고발의 전문신고 루트를 사실상 억제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율적 감시와 신고만 강조되다보니 사법처리는커녕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고발 실적마저 저조한 실정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지향하는 공익신고 활성화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민간자격 신설 금지 공고 내용은 자율적 감시 및 신고 유도라는 법령상 포상 보상제도의 취지에도 위반될뿐 아니라 전문신고인(과파라치) 양산으로 사회질서에 오히려 큰 혼란을 자초하게 될 소지도 없지 않다. 경찰출신 등 해당 경향이 많은 민간분야 공인탐정이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는 아마도 공익신고 민간자격의 활성화를 두려워하는 이해관계자들의 공색한 논리에 휘둘리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기도 한다. 공익침해범죄의 해법을 놓고 냉정하게 한번 살펴보자.

아울러 경찰 출신 등 해당 경력자들이 실시간으로 공공의 적을 대상으로 정보수집·잠복감시·미행추적·신고제보 등을 행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된 듯 싶어 안타까울 뿐이다. OECD회원국들의 경우, 공인탐정제도는 1980년 이후 사익(私益)지원탐정과 대비되는 공익(公益)지원탐정의 영역으로 일찌감치 자리매김됐다는 점도 떠올려볼만 하다.

이런 점을 두루 헤아려볼때 지난 2014년 발표된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침해 부패행위 신고 민간자격 신설금지 공고가 행여나 로비와 외압에 휘둘린 부산물이 아닌자 우려되기도 한다. 한걸음 양보해 설령 2014년 당시 권익위원회의 그같은 공고가 부분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익형량의 원칙에 비춰볼 때 그것이 전문적 공익신고로 담보되는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이익 등 포괄적 행복추구권이나 생존권보다 더 크고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아울러 정부의 일자리 창출이나 네거티브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을 따름이다.

요컨대 권익위원회가 차제에 5년 전의 부산물인 ‘2014 공익침해행위 신고 민간자격 신설금지 공고’를 철회할 것을 공식 촉구한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공익을 '공세적'으로 보호하는 민간자격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도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⑦ 보건안보 감시 분야

- 코로나 19 등 국가 전염병은 어떤 범죄보다도 국가와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은 새삼 강조할 나위도 없다.

그래서 이를 국방 안보와 비견되는 보건안보라 칭하는 것이다.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국가 전염병 자가 격리 대상자나 행방불명자 감시, 소재 탐지 및 반출이 통제된 가축·계란에 대한 외부 반출 감시를 경찰과 보건당국이 전담해 왔으나 과거 단순 사회구조와 달리 오늘날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물류의 흐름이 초고속화 되는 등 그 현상과 대상이 국가의 통제 범위를 넘어서면서 전국 곳곳에 보건안보 사각지대가 발생되어 국민의 불안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국가가 통제 불능의 무력감에 빠져 들었다.

메르스를 겪은 국민의 95%는 “국가가 나를 보호해 주지 못해 스스로 나를 지켜야 한다” “메르스 발생으로 나와 가족이 감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느꼈다”는 연구 논문 결과이다.

보건안보는 보건당국, 경찰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2015 메르스 2017 AI 2020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서 여실히 입증되었다.

반복되는 특별 단속도 경찰, 식품안전처, 지자체가 합동 단속을 표방하나 단속 인력의 절대부족으로 선언적 단속, 실효성 없는 단속에 그쳤다.

잠적한 감염자나 격리자 등 행방조사에 관한 한 경찰은 일시적 수색이나 전국 수배 조치 등 형식적 정의에 치중할 뿐 현장에서 상시 감시하고 장기간 발품을 팔아 소재를 탐지하는 등 실질적 정의 구현은 요원하기 때문이다.

즉 경찰의 사람 찾기는 대통령 탄핵 심판 불출석(잠적) 증인에 대한 소재 탐지에서도 보듯이 적시된 소재지에 있나 없나만 확인할 뿐 추적 조사, 탐문조사, 장기간 조사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의뢰인(정부당국, 지자체, 병원 등)과의 계약에 의해 주소지는 물론 연고지, 거주 예상지를 쫓아 잠복 감시 탐문(수소문) 추적하는 신분 위장 탐정의 고전적 행방조사 방법이야 말로 보건안보감시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이다.

도둑 하나를 열이 못 지킨다는 말이 있듯이 피 의뢰자나 피 감시대상이 개인사나 시급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관리구역이나 감시망을 벗어난 사례가 즐비하고 살 처분된 가축이나 통제구역의 가금류, 계란 등이 전국에 실시간 유통되는 등 국가의 통제 불능과 무력감에 전 국민이 불안에 떠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이는 자가에서 장기간 격리되는 대상자의 전문성 보안성을 요하는 긴급 사무 나 일상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고 전염병에 노출된 소, 돼지, 닭, 오리를 밀반출하거나 위장 살 처분 후 내다 파는 행위에 대한 정밀 감시 추적 시스템이 부재한 때문으로 이에 대한 대책 없이 보건 감시 명령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탐정 지역협회에 의뢰하여 해결하고 반출이나 이동 금지 조치된 가축들도 탐정들이 정보조사 및 원천 감시함으로써 국가 자가 격리 명령 및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등 전염병으로 인한 사회적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명령위반에 대한 상시 감시, 비노출 감시, 근거리 감시, 추적 감시 및 정보조사에 최적인 탐정 법제화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민과 관의 크로스체크로 전염병 최대 최다 최장 발생국이라는 오명과 반복되는 국가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 작금의 코로나19 국제적 확산 국면에서 격리(조사)대상자 무단이탈, 방역·역학조사 업무방해 및 다중이용시설, 집회 집합 관리자의 도덕적 해이로 지역사회의 불안이 증대되고 법률과 행정명령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방역단계 상향, 입국자 검역 강화, 신고센터 개설 및 처벌강화 등 감염법 위반 무관용 원칙을 공표했다. 이의 보완책으로 경찰청이 등록 결정한 탐정업 관련 민간자격과 경찰 민간경비 간치안 3륜 구축이 수반돼야 하며 이를 토대로 탐정사의 정보력 경비력이 코로나 19 치안을 지원해야 작금의 정부 정책의 실효성이 제고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외적 실상이 이러함에도 정부의 코로나 관리 대책의 하드웨어적 부문은 오랜 관성에 매몰돼 퇴직 경찰 등 정보력과 경비력을 겸비한 민간부문 사회방위 자원의 재활용 재생산이라는 전략 전술은 보이지 않는다. 등록민간자격 탐정사는 본연의 역할인 국민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는 물론 국가적 재난 상황을 심화시키는 범인성 바이러스 확산 층의 자유방임적 반(反) 사회적 행태를 신고, 고발하기 위한 공권력 보완재 역할을 적절히 수행함은 탐정사의 직무 범위와 사회상규에도 부합된다.
- 자가 격리대상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한 외부 행동 조사·위치추적은 경찰과 보건당국에 의해 전담되고 있으나 언론 보도에서 보듯이 그 대상자가 수천 명을 넘어서면서 일부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등록탐정이 법제화된다면 자가 격리대상자에 대한 외부로의 이동 경로 등 행동조사 의뢰를 맡거나 행방불명인 자에 대한 사람 찾기 의뢰를 맡음으로써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대응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완재로서 그 역할을 십분 수행해 낼 것이다. 사람 찾기는 각 경찰서의 112 위치추적이라는 과학적 방법도 있지만, 휴대폰 미소지자 등에 대해서는, 관찰력과 추리력·정보력을 겸비한 탐정에 의한 탐문·수소문이라는, 고전적 방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격리대상자도 단순한 심부름은 가족 등 지인에게 맡기겠지만, 민감한 정보조사등 보안성 심부름은 가족이라도 맡기기에 곤란한 경우에 탐정에게 의뢰할 것이다. 이렇듯 과학수사의 아버지라 불리는 셉록 홈스가 활동하던 100여 년 전과 달리, 오늘날 탐정의 주 영역은 과학수사 등 수사 영역보다는 개인과 기업의 피해회복 권익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 및 기관과 국가의 일손 부족 보완 등 비 수사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3. 나가며

이상의 4대 분야별 탐정업 직무 범위(4대 분야는 두부 자르듯이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고 상호 중첩되기도 함)에서 보듯이 탐정은 민사 민원 사실조사와 살면서 부딪히는 일상사의 문제와 해결지향점을 찾는 정보수집과 사실조사 대행 전문가로 그 수요는 사적 공적 영역 전반에 미치는 네거티브(업무범위 최대화)한 것이다.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는 협의로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미이나 사실상 직업수행의 자유(영업의 자유)까지 포괄하는 것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일반적으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침해의 정도가 덜하다고 할 수 있고, 국가의 안전과 질서유지라는 대명제에 비추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무한정 보장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가 가능하나 이를 제한할 때도 헌법 제37조 2항이 명시하는 국가안전, 사회질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해 헌법이 규정하는 과잉금지 원칙 내에서 제한해야

따라서 탐정 불법화 시대의 20대 국회와 달리 탐정이 합법화된 21대 국회에서는 탐정의 직무범위를 포지티브(업무범위 최소화)한 영역에 가두려는 20대 국회 이전의 탐정 관련법의 반복적 재생산은 중단해야 하며 수사와 무관한 탐정을 수사 기능의 틀에 가둔 경찰의 대실책도 바로잡아 탐정법 제정의 첫 단추를 새롭게 끼워야 한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변협이 상투적으로 주장하는 “탐정(업)은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관을 위한 직업으로 인권 침해 요소가 상당하고 탐정(업) 수요는 수사기관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탐정제보다 경찰을 늘려 대응” 등 궤변²⁾과 이와 연계되는 법무부의 탐정업 소관청 주장을 일거에 격파할 수 있다.

2) 2018.5.28. 법무법인 에이치스 홍세욱 변호사: 공인 탐정이 도입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구실로 수사기관이 응당 부담하여야 하는 업무를 민간영역에 이양시켜버릴 위험성이 크다. 특히 미아, 실종자 수색 등의 문제는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로서 수사 인력을 보충하는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이를 단순히 민간영역에 떠넘기려는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이며 국민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일 뿐이다.

나아가 수사기관과 유착관계가 없는 개인정보의 수집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검찰과 경찰 수사관 출신 탐정들이 현직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이용하여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전관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제도 도입에 앞장서는 ‘대한공인탐정연구협회’ 역시 경찰청 제 2017-수사 01호로 등록된 사단법인으로서 경찰청 등 국가수사기관과 긴밀한 관계임을 부정할 수 없다. 공인탐정제도는 퇴직 수사관의 활로가 마련되는 것 외에 그 도입의 필요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인 것이다.

요컨대 21대 국회의 탐정입법은 국가권력기관 개혁과 맞물리는 수사경찰 행정경찰 분리 국면에서 탐정의 직무영역이 행정경찰 영역으로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정립(이관)되어야 수사 탐정의 우려를 불식시켜 법사위 통과가 가능해질 것이다.

즉 21대 국회의 도입하려고 하는 탐정법의 방향은 대한변협이 왜곡하는 수사 탐정이 아니라/ 수사권도 없고/ 경찰과 부딪힐 일도 없는/ 살면서 부딪히는 비 수사 측면의 고충과 애로를 해결하는 행정경찰 영역임을 법문에 적시해야 하는 것이다. (탐정대국 일본의 탐정업 관리감독은 경찰청 수사국이 아닌 생활안전국)³⁾

이에 21대 국회 탐정사법은 이를 부칙⁴⁾에 보완하고 법사위의 소관청 시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경찰청의 탐정업 담당부서 직제개편이나 공익탐정 활성화를 위한 공익탐정 수입료 국가(지자체) 부담제도 시행령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3) 나영민(경찰수사연수원 교육과장) 2020.11.11. 윤재옥 의원 탐정법 공청회: “탐정업의 신고 접수처리, 지도단속, 행정처분, 교육 등과 같은 업무는 예방경찰의 영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발생한 범죄 수사를 하는 수사기능에서 담당하다는 것은 다소 이상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탐정업 관리업무를 생활안전기능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찰내부의 탐정업 관련 업무를 수사국에서 생활안전기능으로 이관해 추진하는 것이 탐정업 관리법 입법추진의 동력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안기능에서는 경비업 등의 관리제도운영 및 입법 추진 등의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탐정업과 경비업이 결합한 민간보안산업이 활성화되는 추세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4) 입법 전략: 경찰청 탐정 담당 부서를 생안국으로 변경하지 않는 한, 20대 국회 탐정입법 과정과 전혀 다를 바 없이 입법공해만 일으키는 내실 없는 공회전만 반복될 것으로 생안국에서 이명수 탐정사법을 백업하는 탐정사협회 법인 등록을 심사하여야 할 것임.

일본은 탐정과 의뢰인 간에 수입료나 보고서의 부실 등으로 인한 절차적 트러블이 증가하자 이를 관리하기 위해 2006년에 이르러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이러한 탐정법은 탐정업무의 범위 등 실체적 규정이 없는 절차적(형식법) 규정이며 국가 자격시험에 관한 규정이 없어 기존의 등록(신청) 민간자격 그대로 시행.

※ 대한탐정연합회 탐정사 관리법 입법 촉구문

퇴직 경찰서장의 2년여 단독 헌법소원으로 대한탐정연합회가 민간자격 관리기관으로 경찰청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고 이를 근거로 20대 국회가 신용정보법 탐정 금지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그 시행(2020-8-5) 이전과 달리 탐정관리법 제정은 21대 국회가 의무적으로 풀어내야 할 최대 현안이 되어버린 것이다.

이제는 수십 년 반복된 "회기 시작 탐정법 발의/ 회기 끝 자동 폐기"라는 뻔한 결론으로 끝내려 하다가 입법의 미비로 발생하는 탐정(업) 부실 관리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다.

OECD는 이미 사익을 대변하는 사설탐정을 넘어 공익탐정의 시대로 진입한 지 오래이다. 한국도 경제적 사회적 격차로 인한 정보격차와 더불어 공익침해 현장단속의 손길이 딸리는 마당에 이를 커버하는 정보조사 경력직 등록 탐정의 존재가 필수 불가결하다.

바야흐로 경찰은 창설 75주년에 이르고 있다. 그들은 국민의 경찰로서 윤리적 토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원했든 그렇지 않든 35년 국비로 정보수집 분석과 사실관계 파악 전문가가 되어 -OECD 경찰이 그렇듯- 등록 탐정 자격(매니저급)에 가장 근접한 자들이다. 이전 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 구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평등권의 구현과 바로 직결되는 것이다.

각설하고 21대 국회는 수만의 전·현직 경찰 등 탐정 공급 층과 수백만에 이르는 공권력 소외(사각)지대 탐정 수요층의 염원을 담아 OECD 的 네거티브(업무 범위 최대화) 탐정 관리법 제정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헌법소원으로 탐정 금지법 개정을 견인하고 국내 등록 탐정 시대를 열어젖힌 대한탐정연합회는 21대 국회의 탐정사법 입법을 공개 촉구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정수상 2015 명경찰 명탐정 “누가 공인탐정을 두려워 하는가”(초판)

정수상 2017 정보조사론(3판)

정수상 2019 탐정사 자격시험 수험서(8판)

정수상 2019 탐정사 자료집(3판)

정수상 2006 (후기) 민간경비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논문

정수상 2012 ~ 2021 조선일보 문화일보 등 언론 기고문

정수상 2012 ~ 2021 SBS 연합 MBN 등 인터뷰 기사

이동훈 1999 위기관리의 사회학, 제2장 위기와 위기관리

중앙일보 2020.11.10. “탐정 흉내 사이버 심부름센터 거르자”...국회, 탐정관리법 발의

뉴스경남 2020.11.09. 대한탐정연합회 국회에서 “탐정 관련법” 제정 촉구 간담회 가져

오하라마코토 2009. 탐정 흥신소 101번/ 탐정의 뒷 이야기

쿠루미자와고우시 2009. 베란다형사 노여움의 표적

일반사단법인 2016(평성 28년 1월 1일) 일본조사업협회보 No.78

이명수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안번호 5157

일본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 평성 18.06.08. 법률 제60호, 최종경신:평성 23년 6월 3일 법률 제61호

일본 탐정업 적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평성 19.02.22 내각부령 제19호, 레이와 06.21. 내각부령 제12호

탐정업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안) 토론

전병용(전 경남경찰청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총론]

제2조(정의) 제1호에서 탐정업무의 범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다고 Negative System을 취하여 폭넓게 인정한 것은 선진적이다. 단 아래 8개 조항 관련 검토 의견을 내고자 한다.

[각론]

1. 제5조(결격사유)는

현재 유사업종의 불법행위 실태를 보면, 가장 악질적 행위유형은 ‘뒷조사 의뢰사실을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금품갈취하거나 성추행/성폭행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했던 자에 대해서는 탐정업 종사의 영구 또는 장기간 배제가 필요하다.

2. 제6조(탐정사 자격시험 등)

탐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을 획득했다는 것일 뿐 탐정실무를 잘 할 수 있다는 보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한 교육훈련은 물론 공인회계사 시보나 변호사 등의 사례에 비추어 적어도 6월 ~ 1년 정도의 인턴과정이 필요하다.

3. 제4장(탐정법인) 제23조(준용규정)

제2항(탐정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은 탐정사가 법인의 채무와 불법행위 배상책임에 대해 무한책임을 지는 규정으로서 유한회사의 예를 따를 수 있는 범주법인에 비해 구성원에게 너무 불리하다.

4. 제27조(계약의 체결) 제2항[계약서 설명의무]

설명 의무를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두루뭉수리한 설명이 되어 의뢰인에게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제3호(사실조사의 내용, 기간 및 방법),

제4호(사실조사 결과의 보고 방법 및 기한), 제5호(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정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제6호(수수료의 액수와 지급 시기 및 방법),

제8호(조사결과에의 위법행위 위한 사용금지), 제9호(작성/취득 자료의 처분)에 대해서는 각각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 후 각각 서명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5. 제28조(수집/조사의 제한)에서

탐정업자는 국가 안보/비밀(제1호)이나 기업 비밀/연구개발(제2호)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업 비밀 등의 내용을 조사해서는 안 될 것이나 누군가 이들 사항을 침해하려는 동향까지 파악하지 못하게 한다면 공익탐정 영역의 지나친 위축을 가져 올 것임.

더군다나 제45조(벌칙) 제3항 제3호에서 제28조 제2호를 위반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연구개발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실조사하는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처벌이 매우 강력하다. 탐정활동의 지나친 위축 방지를 위해서는 제28조 제2호의 범위를 국가안보/비밀과 기업 비밀/연구개발의 내용을 조사하거나 정보수집을 금지하도록 축소해야 할 것임.

이것은 공익탐정 활동분야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함.

6. 제30조(탐정업의 수행원칙) 제6항에서

탐정업자는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위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제45조 제2항에서 벌칙을 일반인보다 강화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이들 범죄를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 등에 있는데 탐정에게는 더 가중 처벌하는 내용이다.

생각건대, 이들 범죄에 대해 탐정에게만 가중처벌할 이유는 별로 없다고 본다.

또한 탐정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약간의 위력과시, 속임수, 사인도 할 수 있는 현행범 체포 등이 따를 수 있는데 이러한 엄벌규정을 두면 수사기관의 긴급체포 등 강력한 조치의 대상이 되어 무죄방면될 때까지 고초를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재고되어야 한다.

다만 ‘뒷조사 의뢰사실을 알리겠다.’고 의뢰인을 협박/금품갈취하거나 성추행/성폭행하는 악질적 형태의 범죄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을 별도로 두어 엄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7. 제36조(탐정사 및 사무원 교육)는

교육을 매년 2회 이상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너무 자주하여 형식적으로 흐를 우려가 있으므로 1회로 축소하고 대신에 실무경험 전수 위주의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교육과 탐정윤리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8. 제37조 (탐정사협회의 설립 등)의 규정에서

협회의 경찰청장 인가 기준 등 협회 난립방지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서 경찰청 실무자 입장에서는 항의성 민원 받기 싫어 모두 인가해주자고 청장에게 결재를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경우 자격증 남발 등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므로 건실한 협회만이 인가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한 인가 기준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음.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5

탐정과 민간경비업
연계방안

5. 탐정과 민간경비업 연계방안

1) 탐정과 민간경비

포탈사이트에 법조 3륵을 치면 “변호사 판사 검사로 법조의 3대 축”이라는 설명이 뜨는데 치안 3륵을 치면 그 개념에 관해 뜨는 것이 없고 대한탐정연합회장의 기고문만 쪽 뜨면서 “경찰 탐정 민간경비”가 치안 3륵 임이 기고문 내용에서만 적시되고 있다.

한국의 법조 3륵은 세 바퀴가 안정적으로 구축된데 반해 한국의 치안 3륵은 “공인탐정”이라는 한 바퀴가 쏙 빠진 채 불량품인 불법 심부름센터가 대체되어 제 속도를 못 내고 있으며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러다보니 치안도 경찰의 노력에 비해 저평가될 수밖에 없지만 특히 탐정과 상호보완적이어서 탐정과 뿔 레야 뿔 수 없는 민간경비는 1976년 용역 경비업법에 의해 스타트한 이후 2017년 말 현재 직업 경찰관 수를 증가하면서도 업무수행 상 필수불가결한 신고출동 정보수집 사실조사 등 측면에서의 경찰 의존도가 높아 국내외 평가는 떨어지고 있다.

이는 경비업의 파트너인 탐정의 정보수집이나 사실조사 없이 현장경비를 하고 있는 한국 경비업이 절름발이 형태로 축구에 있어서 공격은 포기하고 수비나 하는 격이기 때문이다.

공격에 해당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 없이 수비에 해당하는 경비경호를 하다 보니 정보부재에 놓여 경비업 전반에 걸쳐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머물 수밖에 없고 양적 질적으로 공경비인 경찰을 증가하는 미국 일본 등의 초고속 성장 민간경비에 비해 한국의 민간경비는 외화내빈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

개인 및 요인에 대한 신변보호와 경호, 다중운집 시설 안전 경비, 집회 시위 군중행사 등의 혼잡 경비, 시설 내(內) 절도 손괴 경비, 교내외 학교폭력 감시, 데이트 폭력 및 스토킹 방지 신변보호와 경호, 선거유세 경호경비 등에 있어 관련 정보 없이 의뢰 현장이나 인적 물적 대상을 수비한다는 것은 야구 축구 등 각 종 경기에 있어 감독이나 코치 등 사령탑 없이 선수들로만 경기에 임하는 것과도 다를 바 없다.

1962년에 시작된 일본 경비업이 64년 동경 올림픽 선수촌 경비, 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경비 및 88 서울 올림픽 경비(SECOM)를 계기로 그 명성이 국내외적으로 알려지면서 양적 질적으로 고도 성장기에 들어선 가운데 72년 일본 경비업법 제정과 76년 한국 경비업법 제정 시간차가 4년 차에 불과함에도 그 성장속도가 엄청난 격차를 보인 것은 일본은 민간경비를 보완하는 위해방지 정보조사 탐정업이 실재하고 우리는 없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적 규정 준수나 대외 보안을 우선시하는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업은 신속한 의사결정이나 대응에 한계가 있어 디테일하고 신속한 정보조사는 보다 유연하고 비관료적인 탐정과 호흡을 맞추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한국 탐정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신용 정보법 위헌결정 후 국회입법이 별도의 탐정법으로 가기보단 40여년 앞서 제정되고 수차 개정되며 시행착오를 거친 경비업법을 전부 개정하는 방향(민간보안 산업법)으로 가야 소관청 문제가 극복되는 것은 물론 탐정과 민간경비 간 유기적 협업이 가능하고 탐정과 경비업이 어우러지는 민간보안산업 시장의 기반이 조성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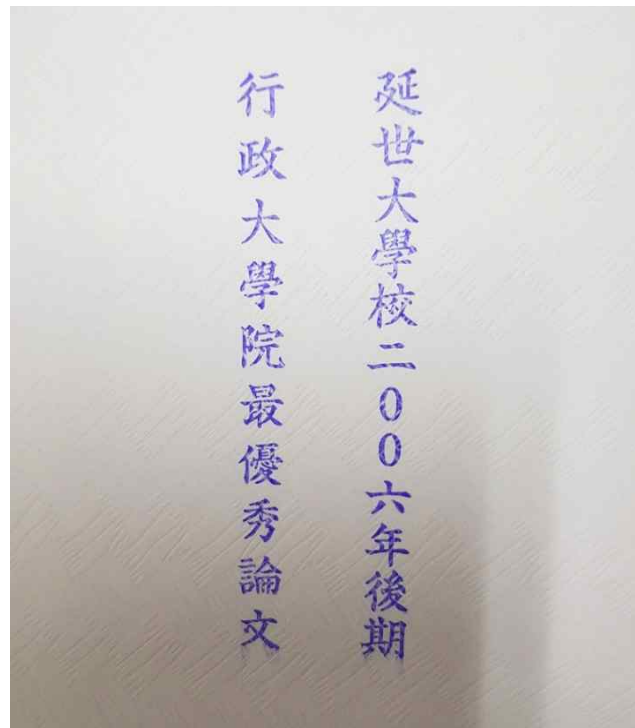
이는 미국 영국 등 OECD 각 국 민간경비업의 대세이며 경비업법과 탐정법이 별도로 존재하는 일본도 경비업법에 비해 30여년 늦게 제정된 2006 탐정법이 의뢰인과 탐정간의 트러블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법 성격이고 업무의 실제적 내용은 30여년 먼저 제정된 경비업 법과 연계되어 있어 사실상 경비업법과 탐정법이 분리되었다 볼 수 없는 것이다.

요컨대 OECD는 법조 3륜에 버금가는 치안 3륜을 완벽히 구축하여 치안과 민간경비의 획기적 성장을 가져오고 있음을 직시하여 우리도 민간경비와 탐정이라는 불가분의 관계를 접목시켜 치안강국을 건설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간보안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2) 자치경찰 시행 초기 국면에서의

민간경비 內實化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 지구대 112신고 출동과 接木되는 機械警備와 탐정을 中心으로 -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警察·司法行政 專攻

鄭 首 相

자치경찰 시행 초기 국면에서의
민간경비 內實化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指導 田 炳 龍 教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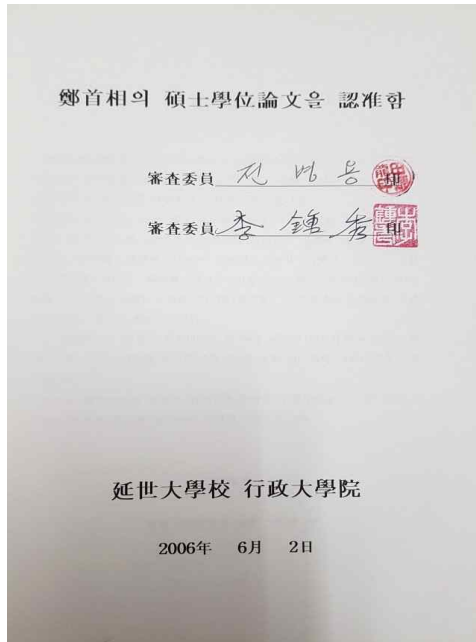
이 論文을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日

延世大學校 行政大學院

警察·司法行政 專攻

鄭 首 相



<감사의 글>

2년여 본 논문의 기초를 닦아주시고 논문학기 주심지도를 해주신 전병용 교수님과 본 논문의 분석틀을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본 논문의 총체적 질을 제고시켜 주신 이종수 교수님께 머리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논문을 위한 자료 제공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김태석 박사(양천署), 본 논문의 하드웨어적 구성부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진태경·전석만·임무학·심재명·김영구·권인상·유정자·안병만·함준식·김광덕·원민재·박수길·유한철·강성수·김성희(양천署), 김재철·류기선(서부署), 유순기(용산署), 박영태·박성영(종로署) 등 사랑하는 후배들과 이종극(마포署)동기께 감사드립니다.

또 민생치안에 여념이 없으면서도 본 논문 설문에 진지하게 응해주신 양천·서부·용산·마포署 지구대 및 本署 선·후배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행정대학원 안용식 원장님과 김상준 부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의 관심과 지도에 고개숙여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06. 6.

경찰·사법행정 전공 정수상

목 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1. 연구의 범위	3
2. 연구의 방법	4
제2장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과 발전과정 및 본 연구의 분석틀	7
제1절 민간경비의 의의 및 공경비와의 구분	7
제2절 민간경비 성장의 이론적 배경	8
1. 수익자부담이론	8
2. 공동화이론	9
3. 이익집단이론 및 경제환원론	9
제3절 미국 민간경비 발전과정 및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11
1. 연혁 및 발전과정	11
2.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11
제4절 일본 민간경비 발전과정 및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15
1. 연혁 및 발전과정	15
2.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16
제5절 우리나라 민간경비 발전과정 및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24
1. 연혁 및 발전과정	24
2. 민간경비산업 현황과 전망	26
제6절 본 연구의 분석틀	32
1. 先行研究檢討	32
1) 美·日 민간경비와 韓國 민간경비 비교고찰	32
2) 현 시기 한국 민간경비에 대한 경찰관·가입자·언론의 비판적 시각	33
2. 분석틀	39
제3장 한국의 민간경비 내실화 방안에 관한 설문조사 분석 및 논의	42
제1절 지구대 등 경찰관 설문조사 분석평가	42
1. 설문절차 및 분석방법	42
2. 설문결과 분석 및 평가	43

제2절 소 결	75
제4장 자치경찰 시행 초기 한국의 민간경비산업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핵심과제	79
제1절 자치경찰 시행 前後 민간경비 현상 분석 및 전망	79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79
2. 자치경찰 시행 前 민간경비 현상 분석 및 전망	82
3. 자치경찰 시행 後 민간경비 현상 분석 및 전망	83
제2절 경비업법 현황 및 문제점	84
1. 경비업법 법적 지위	84
2. 민간경비원 법적지위	85
3. 민간경비 내실화를 가로막는 경비업법 독소적(毒素的) 조항	86
제3절 자치경찰 시행초기 군소 민간경비업체 난립시 규제강화(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9
1. 규제강화(내실화) 방안	9
1) 경보수신 대응체제 및 오경보 최소화 조치 강구	9
2) 군소경비업체 경비원, 경비차, 자본금 등 비례 영업구역 허가	96
3) 민간경비업체 일본 수준의 경비업연감 발간 및 공개의무화	97
4) 경찰청 민간경비 관리·감독부서 확대 운영	98
5) 경찰·전문가 합동 공익적 규제위원회 설치	100
6) 자치단체 민간경비 내실화 관련 조례 제정	102
7) 가입자 보호를 위한 무인경비 표준약관 강화	103
2. 활성화 방안	103
1) 민간경비원 신분·권한 경비업법 명문화	103
2) 경비업 업무범위 확대 및 세제지원	105
3) 경비원 업무능력 제고 등 전반적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강화 및 보수 현실화	108
4) 군소민간경비업체 상호 빅딜·합병·업무제휴·행정지도	111
제4절 민간경비 소외계층·지역 배려방안	112
1. 이론적 배경	112
2. 민간경비 소외계층·지역 배려방안	116
제5절 소 결	118
제5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8
부록 I: 1차 설문조사지	135
부록 II: 2차 설문조사지	142
TABLE OF CONTENTS	10

표 목 차

<표 2-1> 민간경비업 성장추이(발전과정)	62
<표 2-2> 2004년도 민간경비업체 전국 분포 현황	82
<표 2-3> 미국, 일본, 한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의 체비교 (2001. 3월 현재)	53
<표 3-1> 민간경비원(에스원, 캡스, KT텔레캅 등 기계경비) 경보 수신 후 현장도착 소요시간	43
<표 3-2> 지구대 경찰관 민간경비 경보수신 후 현장도착 소요시간	54
<표 3-3> 민간경비원의 경보현장도착 소요시간	74
<표 3-4> 민간경비원의 경보현장 출동인원수	84
<표 3-5> 민간경비차량 순찰중 지구대 일일방문횟수	94
<표 3-6> 민간경비의 치안기여도	6
<표 3-7> 경찰관 경비업법(시행령)상 출동시간 숙지여부 조사(1차설문)	15
<표 3-8> 경찰관 경비업법(시행령)상 출동시간 숙지여부 조사(2차설문)	15
<표 3-9> 가입자 경비업법(시행령)상 출동시간 숙지여부 조사	25
<표 3-10> 지구대별 월간 오경보 현황 조사(1차설문)	45
<표 3-11> 지구대 팀별 오경보 현황 조사(2차설문)	45
<표 3-12> 민간경비 확인통보제도 활용 여부	55
<표 3-13> 민간경비의 오보율 실태조사	75
<표 3-14> 민간경비 오보율 홍보 신뢰도 조사(1차 설문)	85
<표 3-15> 민간경비 오보율 홍보 신뢰도 조사(2차 설문)	95
<표 3-16> 오보의 주요인 현황	6
<표 3-17> 민간경비 오경보 사후 조치 현황	6
<표 3-18> 민간경비업 업종별 확대시행 여론조사	16
<표 3-19> 자치경찰시행과 민간경비 내실화 연관 여부 조사	26
<표 3-20> 우리나라 민간경비 내실화 시기 예측 조사	3
<표 3-21> 비공익적 행사경비 경찰 역할 범위 여론 조사	46
<표 3-22> 구청 집단민원 경비 관리 책임 주체 여론 조사	55
<표 3-23> 퇴임경찰관 민간경비업 내실화 기여 가능성 여부 조사	66
<표 3-24> 퇴임경찰관 민간경비업 진출 의사 여부 조사	66
<표 3-25> 퇴임경찰관 민간경비업 진출시 적합업종 조사	76
<표 3-26> 미국경찰의 비번날 파트타임 잡에 관한 지구대 여론	86
<표 3-27> 민간경비업, 군소업체 대폭참여에 대한 적합성 여론 조사	86
<표 3-28> 부실경비업체 처벌강화 필요성 여론조사	96

<표 3-29> 보안장비의 기계경비의 효율성 비교 조사07

<표 3-30> 금융기관 경찰배치 적합성 여부 여론 조사17

<표 3-31> 전문경비지도사 자격증 제도 필요여부 조사27

<표 3-32> 민간경비원 범죄연루시 처벌 강화 필요성 조사27

<표 3-33> 민간경비원 총기휴대 적합성 여부 조사37

<표 3-34> 민간경비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 조사47

<표 3-35> 민간경비 일반현황 공개여부 조사47

<표 4-1> 사업년도 개시일 현재 진행 중인 소송69

<표 4-2> 사업년도 중 새로 제기된 소송79

그림 목 차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틀14

<그림 2> 민간경비인력의 구조적 악순환 1

국 문 요 약

自治警察 施行 初期 局面에서의

民間警備 內實化 및 活性化 方案에 관한 研究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鄭 首 相

- I. 본 논문은 우리나라 민간경비업 특히 기계경비업의 외화내빈(外華內貧) 현상이 주민과 경찰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점에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총·각론적 대안제시에 주력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일본 등 민간경비 선진국의 경비업법의 입법례 및 운용실태 등을 알아보고 우리나라 민간경비업법의 문제점 및 개선책 도출에 활용코자 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민간경비업(법)의 모태인 일본 민간경비업의 지속적인 발전 노하우를 찾아내어 이를 캐치 업(Catch up)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논리를 전개하였고, 그 논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최근 자료를 각주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 II. 제2장에서는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 및 미국·일본 등(특히 일본) 민간경비 선진국의 발전과정과 민간경비산업 현황·전망 등 민간경비 일반론을 양적으로 최대한 압축시켜 살펴본 후 본 연구의 주요자료인 경찰관설문조사를 객관적·실용지향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틀에서는 선행연구로 민간경비 선진국의 운영실태를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운영실태와 비교분석하고 아울러 현 시기 한국민간경비 운영상 문제점을 경찰관·가입자·언론의 비판적 시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편 민간경비관련 단행본 및 석·박사학위 논문에서 원론적이고 보편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일반론을 최대한 압축시킨다는 본 논문의 특성상 독일의 민간경비 일반론은 제2장에서는 다루지 않았으나 경찰 예방치안업무

와 국내 안전업무의 민간경비 대폭 이양 및 통일 국면에서의 민간경비 위기관리 역할 수행 등 우리나라 민간경비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부분은 본론이나 결론에서 그 장점을 지향하였다.

제3장에서는 자치경찰제 시행전인 현 시기에서의 우리나라 민간경비의 문제점인 높은 오보율(誤報率), 누장출동, 1인 출동, 민·경 협력 방법체제 미구축 등에 대해 양천·용산·서부·마포경찰서 지구대 직원중심으로 설문조사(survey)한 후 그 내용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기계경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누장출동, 1인 출동을 개선하기 위한 5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 설문조사결과 및 한국 민간경비(기계경비)의 문제점과 내실화방안을 국내외 문헌중심으로 종적으로 심도 깊게 연구하는 가운데 특히 자치경찰 시행 초기 난립이 예상되는 군소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규제강화(현 시기 기존 민간경비업체 포함) 및 활성화 방안을 시기 구분없이 동시적으로 제안하였으며 한편 한국민간경비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한국경비업법 독소적 조항을 개선키 위한 경비업법 전면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제3장과 제4장은 종·횡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으며, 제3장과 제4장의 소결론(제안)은 공히 사실상 본 논문의 결론적 고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소결의 시기적 고찰에 있어 제3장은 현 시기인 2006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제4장은 2007년 자치경찰시행 시기 및 그 이후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한편 민간경비는 수익자부담의 원칙 내지는 경제적 기득권자를 지향하는 시스템인 만큼 경제적 약자인 민간경비 소외자에 대한 공경비(경찰)의 변함 없는 역할 필요성도 제시하였다. 이는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간의 치안의 불균등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民間警備와 公警備(경찰)가 상호 윈윈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民間警備 內實化와 接木되는 것이다. 또한 민간경비가 발달할수록 民間警備 疏外 對象·地域으로의 犯罪 轉移現象이 사회문제화 될 것인 만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Ⅲ. 본 논문은 자치경찰 시행 초기 국면에서의 민간경비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도출이라는 연구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美·日 민간경비 따라잡기 종합전략”을 대결론으로 설정하면서 이의 실현을 위한 정부(경찰), 지자체, 민간경비업계의 동시적·자율적 분발을 촉구하고 이를 견인하는 차원에서의 경비업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에 앞서 본론(제3장,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 민간경비(기계경비)와 경찰의 예방치안 협력 부실화가 마치 경찰 때문인 양 호도한 일부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객관적 타당성과 현장성 결여를 지적하였으며 이에 따라 누장출동, 1인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6

대탐연 자산
「명경찰명탐정」과
「공인탐정정보조사론」

6. 대탐연 자산 「명경찰명탐정」과 「공인탐정정보조사론」

「냉철한 판단력/예리한 직관력/이면을 꿰뚫는 관찰력 등 35년 경찰경험」 탐정에 꽃히다 !!!

‘명경찰 명탐정’ 책 내는 정수상 고양경찰서장

2015-10-14 00:14 서울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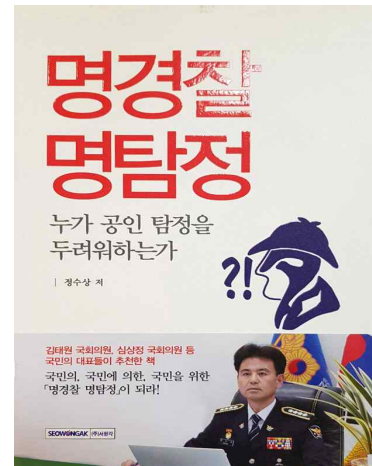
탐정 제도 당위성·경찰 협업 등 설명... 취임 뒤 주민 소통·범죄 예방 강화

‘수처작주(隨處作主),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어라.’ 정수상(58) 경기 고양경찰서장이 “대민 행정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과 함께 후배들에게 종종 하는 조언이다. 그는 이달 하순 경찰의 날 70주년에 즈음해 ‘명경찰 명탐정’을 펴낸다.

‘공인 탐정 법제화와 수사권 현실화 앞에 우리가 너무 무기력했던 것 아닌가’ 하는 자성과 회한이 들어 후배들에게 남기는 일종의 ‘경험서’로 볼 수 있다. 책에는 탐정의 유래부터 활동 영역·유형·기법·법제화 당위성, 탐정이 국가 및 국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 탐정의 국제화·산업화, 경찰과 탐정의 경계와 협업 등 거의 모든 사안이 망라돼 있어 ‘탐정에 대한 백과사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훌륭한 경찰관이 갖춰야 할 3대 요소(지력, 체력, 사명감)’와 ‘관찰하는 습관’에 대해서도 강조돼 있다.

정 서장은 지난 1월 19일 취임해 “고양경찰이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치안 현장을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별걸 다 하는 서장’이란 별명이 붙은 그는 친근한 경찰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3월 경찰서 정문 담벼락을 허물고 화단을 만들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애를 먹는 민원인들을 보고는 본관 앞과 민원실 앞 2곳에 민원인 전용 주차 공간을 확대 설치했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살피기 위해 ‘찾아가는 주민간담회’를 열었고 경찰서에 안전 북카페도 만들고 있다.

도농이 공존하는 고양시에서 그는 농작물을 도둑맞지 않도록 특별순찰구역을 지정해



민간탐정 필독서 출간

헌재와 경찰청을 관통하고 탐정사에 꽃히다 !!!

Prologue

셜록 홈스는 미스터리(mystery)사건 현장에서 베일에 싸인 사건 전모를 밝혀내거나 범인을 지목해 냄으로서 실존 인물이 아님에도 일약 세계 최고의 명탐정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홈스가 런던, 동경, 서울 그 어디에 있던 미스터리 살인 사건을 술술 풀어내는 자연과학적 수사 활약상은 보기 힘들 것이다.

그것은 셜록 홈스의 자연과학적 조사 기법이 “빛, 냄새, 먼지, 성문 등 육안 미식별 증거까지 포착할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수사 장비를 보유한 21C 경찰의 과학수사 능력과 이에 필적할 만한 최고의 법의학 전문가들”의 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셜록 홈스의 사회과학적 관찰 추리 통찰 등 오감에 의한 조사기법은 100여년을 지난 오늘날도 여전히 교훈적이고 위력적이며 모범적이다.

이를 계승하는 일본, 영국 등 OECD 탐정은 공권력 사각(소외)지대에 놓여 있는 정당한 의뢰인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정보조사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한 정보조사를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치안의 보완적 역할과 증거재판주의의 보강적 역할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요컨대 탐정 불모지 대한민국 공인탐정의 주 영역과 역할도 복잡다단한 사회 곳곳의 민사 민원 행정 형사 영역에서의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대행 서비스” 역할 등 OECD 탐정 역할과 영역을 학습하고 지향할 것이다.

이에 본 저는 총론 격인 탐정학 개론에서, 개인은 물론 공적 분야로 확산되는 OECD 정보조사 탐정업의 발전사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정보조사 공인탐정의 합법 역사와 불법 역사를 재조명하는 가운데 “OECD 정보조사 탐정 캐치 업”을 위한 대한민국 정보조사 공인탐정의 중장기 발전 좌표를 제시하고 각론 격인 정보조사론에서, 이를 담보하고 실천하기 위한 “사회과학적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론(정보조사론)→ 생산론→ 보고



명경찰 명탐정

『명경찰 명탐정』은 정순경에서 ‘경찰서장’으로 35년 치안현장의 리얼 리포트를 담아낸 책이다. 저자 정수상의 35년 치안 노하우를 담고 있다.

명경찰 명탐정 Prologue

「1980 순경 투신 → 2009 총경 승진 → 의성·일산·고양경찰서장 역임 → 대한민국 제1호 공인 탐정 합동 사무소장 겸 대한탐정협회장(?)」 정순경에서 경찰서장까지 35년간에 걸쳐서 겪은 산전수전 공중전의 경험 및 필살기를 후배·후학에게 팁으로 전해 주는 한편 치안 경험이 많은 경찰관들이 정년 또는 중도에 무의미하게 퇴장하지 않고 인생 1막에 연이은 인생 2막을 자신 있게 펼칠 공인 탐정 법제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저의 집필에 착수하게 되었다.

아울러 정순경에게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명한 국민계 35년간 주요 치안현장 보고를 드리게 됨도 빠뜨릴 수 없는 집필 이유인 것이다.

돌이켜 보면 수사권 현실화와 공인 탐정 법제화 앞에 무력하기만 했던 35년이 아니었던가 하는 회한도 스쳐가지만 “시작이 전부다”라는 마인드로 국가와 국민의 명령을 엄중히 알고 충실히 봉직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이 앞선다.

우리 격언에는 시작이 반이라 하지만 불후의 명저 「손자병법」 제1편 始計(시계)에서는 시작이 전부라는 사상이 관통하고 있다. 하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듯이 시작의 중요성은 우리 속담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35년 전 필자가 순경으로 투신할 때나 지금이나 경찰을 지탱하는 원동력은 「오류 없는 법집행을 위한 지력」, 「순찰·잠복·추격·격투 등 긴박하게 돌아가는 치안현장의 격무를 감내하기 위한 체력」, 「국가 안전 확보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한 사명감」이 기본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 없는 대명제일 것이다.

다만 이에 덧붙여 또 한 가지 반드시 주목할 것이 “관찰하는 습관”이다.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은 연중 단 1분 1초도 휴전 없는 치안현장에서 순찰·수사·조사 등 각종 치안 활동 중 관내 구석구석에, 범죄현장·사고현장에, 치안상 문제점이 있다고 전제하고 관찰하는 습관을 몸에 붙여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는 습관이 습관화되면 치안에 관한 현황·문제점·대책을 찾아내는 해안

(판단)도 몸에 붙게 되는 것이며, 계속 되풀이 한 관찰하는 습관은 제2의 천성이 되어 어느 날 능력·재능으로 변신할 것이다.

맹목적인 로봇 순찰이 아닌 번뜩거리는 매의 눈매로 국민을 보호하는 로보캡(ROBOCOP, 가상의 사이보그, 최강 경찰의 상징) 순찰, 로보캡 치안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며 대한민국 국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탐정 법제화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습관화된 관찰력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라는 경찰의 목적 달성(명경찰)은 물론, 관찰과 추리의 대가 셉록 홈스와 같은 명탐정 반열에 오를 탄탄한 기반을 다져 줄 것이다.

각설하고 본 저가 전국 치안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10만여 후배 경찰관들의 경찰 지휘부 진출과 탐정직 진출, 전국 170개 경찰 관련 학과 4만여 후학 및 80만 전·의경 출신들의 경찰직 진출과 공인 탐정직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면(청년 실업 해소), 또한 탐정을 동경하는 수많은 누리꾼들에게 이정표가 될 수 있다면 무한한 보람으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게임 몰입을 적대시하는 대신 오히려 게임으로 소통하며 학생들의 인성·창의성 계발을 시도하려는 교총 및 초·중·고교 등 각급 학교에서 탐정 소설·영화·만화·애니메이션 및 한국형 탐정 캐릭터 창출을 적극 선도하며 ‘학생들의 인성·창의성 계발이 담보되는 추리 탐정 게임’ 아이템(본 저 참조) 개발에 발 벗고 나섰으면 하는 소망도 간절히 해 본다.

아울러 본 저는 국가적·국민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공인 탐정을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현황·문제점·대책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현직 경찰 최초의 탐정 전문 서적일 뿐 아니라 공인 탐정 법제화 전후 탐정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수험서로도 십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경찰과 탐정의 경계와 협업, 한·일 탐정 비교분석, 불법 탐정 대응 논리 및 탐정 윤리, 탐정과 경비업의 상관관계 및 융합 효과, 탐정의 의의·유래, 탐정 활동의 영역·유형·기법 및 당위성,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치안 등 탐정의 국가·국민에 대한 기여 역할, 탐정의 국제화·산업화, 탐정과 재난 극복 상관관계, 탐정과 통일치안 등 현장 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OECD 지향적인 실무 응용문제(객관식)가 다수 추출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모쪼록 후배·후학 여러분의 건승을 빌면서 뇌 과학이 입증하는 명언을 통해 “우리의

목표”를 되짚어 본다.

“이루고 싶은 목표를 반복하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영향을 미쳐 반드시 현실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우리가 이루고 싶은 목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공인 탐정 법제화” → “민간 보안 산업화”로, 미·영·일 등 OECD 33개국에서 100년 이상 검증되어 OECD 국민들의 신뢰를 얻은 공인 탐정 법제화만이 불법 탐정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확산을 막고, 합법 탐정이 없음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 확산을 막는 등 2050 클럽에 7번째로 가입된 대한민국의 국격 훼손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불시에 찾아올 통일 대한민국에서의 치안력(경찰) 보완재로써 ‘서울 등 수도권’과 ‘평양 일대’에서의 사상 초유의 무질서와 혼란을 막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14. 10. 04. 공인 탐정 법제화를 꿈꾸며, 정수상

한국고용정보원은 약 4,0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입료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능력 있는 탐정은 억대의 수입도 예상된다.

2014-03-18, 문화일보

※ 경찰 관련 학과 현황(2014-12-31 기준)

- 전문대학 71개교 85개 학과 32,229명(교육부 대학정책과 입학정원 39개교 2,282명)
- 4년제 대학 33개교 39개 학과 9,112명(교육부 대학정책과 입학정원 54개교 2,462명)
- 대학원 43개교 46개 학과 497명(석사 377명, 박사 120명)
- 총 170개 학과 41,838명

CONTENTS

인생 1막 정순경에서 “경찰서장”으로, 35년 치안현장의 리얼 리포트!

「시신 없는 살인 사건」무죄(실종 사건화) ← 2011 → 유죄(판례: 살인죄)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이는 부자(父子) 20/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수사, 명(明)·암(暗) 22/ 아동
진술의 진실성과 그 한계(2005, 연세대 등 학계 최초 보고) 28/ Reid Technique(오감 관찰 기법)
활용 실패 29/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 외 제공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 31/ 당시 검찰 수사 마인드의
허와 실 34/ 기고문 ‘공인 탐정 법제화 시급하다’ 36/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38

순사 피 말리기 전술 vs 대한민국 치안 1번지 사수

순사(경찰) 피 말리기 전술 40/ 반제민전의 촛불 시위 선동 42/ 평화 시위 표방(소위 촛불 문화제)
43/ 과격 시위 및 유모차 투입 전술 vs 휴먼트 선방 44/ 창경 이래 최대 치안 위기 극복 46/ 아물
지 않은 상처, 의경 살인 미수범 자수하라! 47/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49

‘2002 월드컵 사전행사 안면도 국제 꽃박람회’ 교통관리 신의 한 수

‘170만 vs 안면도 외나무다리 건너기’ 퍼즐

오판의 시작 53/ 오판의 심화 55/ 신의 한 수(뒤집기) 57/ 당연한 귀결 62/ 안면도는 알고 있다! 63
/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65

2006 종로서(署) 청와대 진입로 안전화 성과 및 의의

BH를 100미터(?) 앞에만 두고 67/ 명탐정을 지향하는 명경찰 69/ 상처뿐인 영광 70/ 후배·후학에
게 드리는 팁 71

‘98 경찰 차량 정비 예산 절감’과 ‘15 경찰 차량 정비 보안 강화’ 간 함수관계

경찰관서 최초 독립 경정비창 설치 72/ 경찰차량 위탁관리의 허와 실 74/ 기고문 ‘국격 훼손 불법
탐정, 근절책 시급하다’ 76/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78

1page 보고서의 대(大)위력

코칭하는 리더 80/ 이제는 슬립화가 대세 82/ 탐정 활동의 최종 결과도 살아있는 보고서 83/ 후배·
후학에게 드리는 팁 84

‘1981년 이운상 군 유괴 살인 사건 수사 대실책’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범인에 대한 공개 경고 86/ 베테랑 형사의 대실책 87/ 대통령 보고 누락 88/ 아! 탐정, 그
때나 지금이나 89/ 기고문 ‘公認 민간 탐정 시대 열려야’ 90/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91

치안 성과↑100 경찰관 사건 사고↓0 ‘만점 코칭론’

청사 환경 개선의 놀라운 치안 성과 92/ 명령하는 상사가 아닌 코칭하는 리더가 되자 96/ 체력은 경찰력 99/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길 줄 알면 프로, 그렇지 못하면 아마추어 103/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104

순경 출신 사기제고 중심 조직 진단 및 재설계 방안

‘무궁화 꽃봉오리’ 리그 vs ‘무궁화 꽃’ 리그 109/ 나그네 조직에서 수처작주 조직으로 113 - 관련 특집기사 ‘퇴임 앞둔 어느 경찰서장의 수처작주’ 120 - 관련 기고문 ‘공인 탐정 도입, 이제 시간이 없다.’ 122/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123

인생 2막 35년 치안 노하우, 공인 탐정 법제화에 꽃히다!

탐정 大국 일본 vs 탐정 無국 대한민국

합법 vs 불법 127/ 산업 vs 신직업 134/ 네거티브(업무범위 최대) vs 포지티브(업무범위 최소) 139/ 네거티브 일본 탐정 ‘황새’ 139/ 포지티브 한국 탐정 ‘뱀새’ 141/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144/ 필자 2006 후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최우수 논문(일부) 147

누가 대한민국 공인 탐정을 두려워하는가?!

2015 대한민국 불법 심부름센터 성업 중 150 - 관련 기고문 ‘민간 탐정 법제화 시급하다’ 153/ 불법 심부름센터 단속은 언 발에 오줌 누기 156/ 누가 공인 탐정을 두려워하는가 158 - 관련 기고문 ‘누가 대한민국 공인 탐정을 두려워하는가?’ 163/ 대한민국 신직업 공인 탐정 vs 법조 블로킹(밥그릇 수비) 166/ 수적천석(水滴穿石) 175/ 대한민국 공인 탐정 시대 활짝 열려야 178/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181

공인 탐정 법제화 → 대한민국 업그레이드

정치 187/ 경제 190/ 사회 195 - 관련 기고문 ‘MERS’와 ‘탐정’ 203/ 문화 207/ 교육 212 - 관련 기고문 ‘청소년 인성·창의성 계발과 탐정’ 220/ 법률생활 222 - 관련 기고문 ‘유병언 소재 탐지와 OECD 탐정’ 224/ 치안 - 총론적 변화 226/ 치안 - 각론적 변화 233 - 관련 기고문 ‘공인 민간 탐정 법제화되면 잔존 4대악 씨 마른다’ 244/ 통일 대한민국 치안 246 - 관련 기고문 ‘공인 탐정 법제화로 안전시대 열어야 250/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라스트 팁 252

부록 - 공인 탐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평가·종합·해석

- ★ 공인 탐정 법제화 관련 정보 보안 외사 경찰관 설문조사 결과 256
- ★ 탐정 법제화 관련 고양경찰서 전 경찰관 설문조사 결과 262
- ★ 중부대학교 경찰 관련 학과 사립 탐정 법제화 관련 설문조사 결과 268
- ★ 설문조사 각 분석·평가·종합·해석 273

Epilogue

“선배님 책 한 권 쓰시지요!”

광우병 촛불 시위 106일을 위시하여 서울 치안 무력화 시도 도심 게릴라 시위 100여 일 등 20대 군생활보다 더 혹독한 시련으로 점철된 종로서 정보과장 3년을 마치고 총경이 되어 종로경찰서 정문을 나서는 터에 동고동락을 같이 한 후배들이 한 말이었다. 그래, 쓰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현실이 어디 그러랴.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심신도 지쳐있고 쓰다 보면 사실을 쓴다고 해도 여기저기 눈치도 봐야 하고... 언젠가 쓸 날이 오겠지 하며 그날을 기다려 왔다.

창경 70주년(2015. 10. 21)의 딱 절반에 해당하는 35년 경찰 생활(1980~2015)을 국민적 시각에서 회고하고 인생 후반전인 미니멈 20여 년을 탐정적 시각에서 내다보는 「명경찰 명탐정」은 이렇게 점화되었다.

35년 전 순경 제복을 입고 태권도 4단 실력으로 도주하는 야간주거침입절도범을 보기 좋게 한방에 검거한 것이 이리저리 입소문이 나서 다들 형사과로 가는 줄 알았는데 건문보고 실적 우수로 정보과에 스카우트, 선배님께 두 번 특진 양보, 입직 8년 만의 뒤늦은 경장 시험 승진, 이후로도 줄곧 시험 승진을 했지만 업무 평가에서 상위권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았고, 시험 공부한다고 업무를 소홀히 해 본 적은 추호도 없었다.

본청 정보 분실 사상 초유의 승진 시험 합격자였다. 그러나 업무 평가에서도 항상 톱 2에 들었다. 만약 업무를 소홀히 했다면, 치열한 현장 경험이 없었다면, 본 저를 집필할 자신감이나 용기가 있었을 리 만무할 것이다.

오히려 격무부서에서 주어진 책무에 재미를 느끼다 보니 승진 공부를 할 때 습득력이 배가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았다. 일과 시험은 따로국밥이 아니고 비빔밥임을, 섞어찌개임을, 동전의 앞뒷면임을 명심해야 욕먹지 않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이는 후배·후학들의 지향점을 밝혀주고자 함이다.

전국적으로 민주화 열풍이 몰아치던 1980년 벽두 시작한 경찰, 이제 민주화가 아닌 선진화가 전국을 강타하고 민주·반민주는 논외로 밀리고 있다.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는 것이 지천명(知天命)의 나이에 들어선 내 신념이다. 그런 이유로 본 저에서는 좌우 이념을 논하지도 않았다. 여야 정치를 논한 바도 없다. 다만

진보나 지방 권력·경찰 시스템 혁신 등이 언급된 것은 그것이 오랜 기간 내 책무 속에 있었고 그 실상을 현장에서 처절하게 체험했으며 누구보다도 오랫동안 정확하게 지켜 보았기 때문이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매사 국가(경찰) 행정 발전과 국민 권익을 위한 날 선 비판이 지향점이고 종착점이다. 이러한 비판적 지지는 비판이 아닌 지지에 방점이 찍힌다는 것은 통설이다.

본 저와 관련된 기관·단체(원)의 곡해의 소지가 없기를 간곡히 말씀드린다.

나아가 본 저가 대한민국 치안 관계자, 경찰 관련 학과 대학생, 경찰 지망생, 탐정 지망생, 의경 지망생 및 진로를 잃고 좌절하는 누리꾼들과 청소년들의 미래 좌표 설정에 다소나마 도움이 된다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에 OECD와 설록 홈스를 능가하는 명탐정이 탄생되기를 기대해 본다.

즐거를 마치면서 ‘남에게서 빌린 것을 빼고 나면 정작 내게 남는 것은 아주 조금 밖에 없다. 모든 연구는 필연적으로 과거에 빚을 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대문호 괴테의 말에 새삼 숙연해지고 엄청난 상상력의 출처 및 근원으로 ‘신문’을 지목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인터뷰에 절대 공감하는 바이다.

돌이켜 보면 도저히 엄두가 나지 않았던 35년 경찰 업무 경험 관련 자료수집과 방대한 탐정 자료수집에 마다하지 않은 그리고 나의 열정을 북돋워준 특히 공인 탐정 법제화를 갈망하는 수많은 경찰 후배 동료들과 시신 없는 살인사건 수사 기억을 보완해 준 박상복 수사관, 일본 탐정 원서(Q&A 探偵・興信所 110番 등) 번역 지원 김명호 작가, 대한민국 명탐정 로고 창출에 필자와 호흡을 맞춘 박동수 경사, 표지 구상에 참여한 서양화가 Tiffany Cha, Jennifer 공인 탐정 법제화 설문조사에 응해준 경기2청 산하 정보보안관, 중부대학교 경찰관련 학과 후학들, 본 저를 추천해 주신 심상정 국회의 원님, 조미현 현암사 대표님, 심학경 교육장님, 중부대 임동오 전 총장님, 본 저 탈고 가 있기까지 힘과 용기를 불어넣은 고양경찰서 협력 치안 단체 박창만 연합회장님, 심재석 회장님, 전홍은 회장님, 김수란 회장님, 고봉규 대표님, 진덕임 회장님, 정주홍 회장님, 조계종 16교구 본사 고운사 호성 스님, 대오 경승 위원장님, 여여스님, 오성재 경목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우고, 편집·교정·홍보 등 전방위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서원각 정보영 대표이사님과 편집 김수진 님, 디자인 정현정 님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고양경찰서·일산경찰서·의성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생활안전협의회연합회, 청소년발전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학부모 폴리스, 어머니폴리스, 대디폴리스, 의경 어머니회,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모범운전자회, 전의경 동지회, 경우회, 경승위원회, 경목위원회 등 경찰협력단체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15. 10. 21 고양경찰서장실에서
공인탐정과 함께하는 인생 제2막을 꿈꾸며

공인탐정 정보조사론 CONTENTS

1편 탐정학개론

제1장 OECD탐정 정보조사 개론	1
제2장 일본탐정 정보조사 개론	13
제1절 일본 정보조사 탐정의 관습적 발원 및 발전	3
제2절 일본 정보조사 탐정의 사회적 발원 및 발전	14
제3절 일본 정보조사 탐정의 국가적 발원 및 발전	15
제3장 미국탐정 정보조사 개론	22
제1절 미국 탐정 수사권 발원 및 발전	22
제2절 미국 정보조사 탐정 발원 및 발전	23
제5장 영국 탐정 정보조사 개론	29
제1절 유럽 정보 조사 탐정 발원 및 발전	29
제2절 영국 정보조사 탐정 발원 및 발전	31
제5장 한국 탐정 정보조사 개론	40
제1절 조선 정보조사 탐정의 발원 및 발전	40
제2절 일제의 조선 정보조사 탐정 봉쇄 (대한민국 불법 탐정 기원)	45
제3절 불법 탐정 정보조사 개론	49
제4절 헌법소원 국면의 정보조사 개론	57
제5절 한국 공인 탐정 좌표	72

제2편 정보조사(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론

제1장 정보조사 기법론	87
제1절 사회과학적 정보조사 기법	87
제2절 정보조사 자료 추적 기법	98
제3절 정보조사 의뢰 면담 기법	100
제4절 정보조사 출처 분류 기법	111
제5절 정보조사 관찰 추리 통찰 기법	115
제6절 정보조사 미행 추적 이동감시 기법	129
제7절 정보조사 탐문 면담 기법	140

제8절 정보조사 채증 잠복 고정감시 역감시 기법	148
제9절 정보조사 공조 위탁 기법	157
제2장 정보조사 대상과 범위 - 기법 본위 분류	163
제1절 행동 소행 정보조사	164
제2절 행방 정보조사	182
제3절 평판 정보조사	189
제4절 비윤리 기업 정보조사	192
제5절 보건 안보 정보조사	196
제6절 공적 분야 정보조사	203
제7절 위해방지 정보조사	209
제8절 재외국민 보호 정보조사	216
제9절 기타 정보조사	217
제3장 정보조사 대상과 범위 - 가치 본위 분류	224
제1절 사회 전반적 영역	229
제2절 교육·문화적 영역	254
제3절 정치·경제적 영역	260
제4장 정보조사 생산론	265
제1절 정보 선택 및 기록	267
제2절 정보 평가	268
제3절 분석 (재평가) 및 종합	288
제4절 정보 해석	270
제5장 정보조사 보고론	275
제1절 보고의 의의 및 방법	275
제2절 보고서 작성 기법	276
제3절 보고서 작성 기법 (실례)	281
제4절 보고서 통보 및 보고	287
제5절 보고서 보안	289
제6장 헌법소원청구·언론 기고·기관 통보 자료	294

Epilogue

일산, 고양, 의성 경찰서장을 역임한 필자가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근간으로 헌법재판소에 탐정업 원천봉쇄 신용정보법 위헌 확인 심판을 청구한 역사적 순간을 기리면서 퇴직 공안직 공무원이나 신 직업 탐정을 갈구하는 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헌결정을 건인해 내고 공권력 사각 소외 지대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 방지 위기관리를 위한 대한민국 공인탐정업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본 저 집필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의 실현을 위해, 우선적으로, 우리 법제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탐정법과 정보조사 기법을 원용하여 대한민국 신 직업 탐정을 운용하고 관리 감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판단한 필자는, 일본 조사업 협회 연수에 나섰고, 사설탐정 정보조사론을 다룬 서적을 구입하고자 일본 조사업 협회 측에 추천을 구했으나 에노모토 전무이사로부터 “동경 서점에는 탐정 정보조사론 실무서가 없다”는 답변에 접하고 반신반의하며 동경의 서점을 둘러보았으나 우리나라 탐정 자격시험 수험서나 실무서의 지표로 삼을 수 있는 탐정 실무서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즉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탐정 수 세계 최고 그리고 100여 년 전 명치유신부터 탐정업을 발전시켜온 탐정 대국임에도 국가가 주관하는 공인탐정 자격시험이 없고 각 탐정 협회별로 사설탐정 자격증을 발행하다보니 탐정업을 뒷받침하는 정보조사론은 각 협회나 사설탐정 학원의 교육자료 등 대외비 자료로만 활용되고 탐정 정보조사론 시판 서적이 없는 난감한 현실에 봉착한 것이다.

돌이켜보면 그 당시 국내 최초의 공인탐정 수험서와 실무서를 겸한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론(정보조사론)을 집필한다는 야심은, 이렇듯 일본 등 OECD 정보조사 탐정 자료수집의 한계적 상황에 봉착하게 되었고, 급기야 집필 중단이라는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억울하고 답답하며 곤경에 처한 범외지대 국민의 피해회복, 권리구제, 위해방지, 위기관리와 퇴임 하자마자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찰 공무원 등 정보조사 전문 인력의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난공불락의 목표를 쟁취하기 위한 열정과 사명감은 이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를 근간으로 탐정 대국 영국 미국 등 OECD탐정에 대한 분석 종합 재해석에 돌입한

결과, 오늘날 OECD 정보조사 탐정의 근원이 영국의 가상 명탐정 셜록 홈스의 정보수집과 사실조사를 향한 관찰 추리 통찰력에 기인한다는 것을 새삼 인식한 가운데 일정 수사권을 전제로 한 범죄수사 지향적 셜록의 자연과학적 조사기법은 뒤로하고 수요가 급증하는 정보조사 지향적 셜록의 사회과학적 조사기법 연구가 필요하다는데 방점을 찍었다.

요컨대 일본 최대 탐정협회인 일본 조사업 협회의 정보조사 기법과 명경찰 명탐정(2015, 정수상) 민간경비 활성화 연구(2006 후기 연세대 최우수논문, 정수상), 필자의 35년 경찰 경험(25년 정보수집 분석 생산)과 셜록 홈스의 사회과학적 정보조사 기법과의 연리목(連理木)的 접목이 본 저의 지향점이자 실체이다.

이에 “이면까지 볼 수 있고 본 것 이상 안다”는 정보조사의 경구를 새삼 강조하면서 공안직 OB 등 대한민국 초대 탐정 제위의 분발을 촉구하고, 국민과 정의 본위의 지덕체를 완비한 그리고 사회과학적 셜록 홈스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명탐정 출현을 기대하는 바이다.

아울러 본 저가 탐정업 발전 ↑ 민간보안산업 발전 ↑ 공권력 및 변호사 사각·소외 지대 해소 ↑ 정보적 약자 구제 ↑ 청소년 인성 창의성 계발 ↑ 등 대한민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의 가치 창출과 융합 발전에 기여하길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끝으로 본 저 집필에 큰 힘이 되어 주신

윤후덕 국회의원님, 현암사 조미현 대표님, 서원각 정보영 대표님, 아주경제 최종복 국장님, 경인일보 김재영 본부장님, 서울신문 한상봉 국장님, 여래사 여여스님, 안효승 경찰발전위원장님, 정용선 청장님, 윤철규청장님, 박진우 경찰대학장님, 유태열 청장님, 황운하 청장님, 최종상 총경, 류재웅 총경, 곽영진 총경, 이연태 총경, 서금희 경정, 백두흠 경정, 임경호 경정, 박영태 경정, 이현석 경감, 박동수 경위 제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신용정보법 탐정 봉쇄 조항 위헌결정을 견인하시는 송두환 한결 대표 변호사님과 탐정업 교육자료 협조에 마다하지 않은 일본 조사업 협회 오토 회장, 에노모토 전 무이사, 명탐정 오부나이 제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04-28(3쇄) 조선 5현 정여창(일두) 선생 16대손 몽조 정수상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7

장기미제 실종(살인)사건
수사의 허와 실

7. 장기미제 실종(살인)사건 수사의 허와 실

시신 없는 살인 사건

무죄(실종 사건화) ← 2011 → 유죄(판례 : 살인죄)

최근 자주 거론되고 있는 ‘소질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고, 환경이 그것을 발현하게 한다’라는 생물사회학적 범죄이론은 경청할 만하다.

본 사례는 이웃과 격리된 채 외딴 공간에서 수십 년째 살고 있는 원시적 가족의 비정상적인 결속력이 살인과 사체 유기, 증거 인멸로까지 이어진 소위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환경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및 부자간·부부간·모녀간에 전개되는 범인성 가족의 범죄 심리를 잘 엿볼 수 있다.

이 가족의 중심에 있는 팔순 노인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이는 인물로, 고령에도 불구하고 건장하고 우락부락한 외모에 쩌렁쩌렁한 목소리, 60세에 쌍둥이 아들을 낳는 등 괴력의 소유자이다. 두 차례나 체포되어 장시간 조사 받는 과정에서도 피로한 기색을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형사들에게 “과학 수사해”라고 여유를 부릴 정도의 이상 성격 소유자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복용 같은 심신상실적 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언론이 이를 이슈화시키자 2011년 이후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2011년 이전과 달리 3차례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목격자 등 여러 정황 들에 비춰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된다면 시신 발견 여부가 유무죄의 경계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사체 미발견 등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으나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2013.07.11, 대판).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본 사례는 명백한 살인죄에 해당함에도 2002년 당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즉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당시의 법

리에 밀려 사법 정의에 반하는 실종 사건화된 것이어서 수사기관의 재수사 추진 및 조속한 탐정 법제화 등을 통해 완전 범죄의 벽을 부수고 사법 정의를 확립함은 물론 피살자 유족의 평생의 한⁵⁾을 달래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반사회적 인격 장애를 보이는 부자(父子)

읍내 한 구석에 위치한 ‘갑⁶⁾(건강하고 험악한 인상의 82세 노인)의 집에 세 들어 사는 ‘을(왜소하고 병골인 54세 독신 이혼남)은 ‘갑의 집 주변이 음침하고 공포스런 분위기여서 이사를 결심하고 있었다.

이사 당일 오후 3시경 세입자 ‘을’은 전세금을 돌려달라며 집주인 ‘갑’과 실랑이를 벌였고 이는 집안 마당에서의 말싸움으로 이어졌다. 이전에도 벌써 몇 차례 전세금 반환을 독촉하며 ‘갑’과 언쟁이 있었던 차에 이사하는 그날까지 전세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결국 고성어 오가며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팔순 노인이지만 완력이 강한 집주인 ‘갑’은 약골이며 병들어 골골하는 오십 대 중반의 세입자 ‘을’을 가격했고, 이에 ‘을’이 악을 쓰며 대항하자 ‘갑’의 이십 대 초반 아들이 나와 ‘을’을 밀쳐 쓰러뜨렸다. 그 순간 ‘갑’이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을’을 몇 차례 내리쳤다.

이때 싸우는 소리를 듣고 6~7m 전측방에 사는 5세 아동이(유치원생) 장난감 망원경으로 창문을 통해 ‘갑’의 집을 보게 되었고 부자가 합세한 살인 장면을 또렷이 목격하였다.

그리고 아동은 엄마에게 “엄마, 앞집 할아버지하고 누나(?)가 아저씨를 죽였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5) 경찰서장, 지청장, 지원장 앞으로 보낸 피살자 딸(여대생)의 탄원서 제목
‘아빠를 죽인 짐승 같은 노인과 그 범죄 가족을 처벌해 주세요’

6) 이 우발적 살인 사건은(우리나라 살인 사건 39%는 우발적 살인 - 2014. 11. 12 MBC 뉴스데스크) 10여 년이 지났지만 살인 용의자는 ‘갑’ 피살자는 ‘을’로 지칭하는 등 사건 관련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성명, 지명 등 신상이 특정 될 수 있는 사항은 일체 거명치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살인 피해자 유가족들은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낯선 곳으로 이사를 하거나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숨어 지낸다.

그러나 OECD에서는 중요 사건 피해자들의 실명을 그대로 쓴다. 이는 제차 같은 희생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의미에서이다. 유가족들도 역지로 주위의 시선을 피해 숨어 지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언론이나 연구 보고서, 저서 등에 실명을 사용하여도 상관이 없다. 또한 OECD에서는 장기 미제 사건이나 실종 사건의 경우 공인 탐정을 고용해서 사적 추적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도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됨으로써 바야흐로 공인 탐정에게 의뢰하는 사적 추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한편 고등학교에 다니는 ‘을’의 아들과 대학생 딸은 아빠와 떨어져 엄마와 살고 있었는데 근처에 사는 할머니로부터 몸이 시원찮은 아빠가 전세금을 받으러 갔는데 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팔순 노인 ‘갑’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러나 ‘갑’과 ‘갑’의 아내와 아들은 ‘을’이 전세금을 받으러 왔다 갔다는 말만 되풀이할 뿐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딱 잡아뗐다.⁷⁾

그래서 ‘을’의 아들과 딸은 동네를 수소문하고 돌아다녔고 ‘갑’의 이웃집 아주머니로부터 ‘갑’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듣고 아빠가 다쳐 근처 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해서 읍내 병원도 돌아다녔다. 그래도 ‘을’을 찾지 못하자 일단 과출소에 가서 아빠가 집주인에게 폭행을 당했는데 행방불명되었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다음 날 날이 밝자 ‘을’의 전처와 아들·딸은 ‘갑’의 이웃집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평소 ‘갑’에 대해 공포심을 갖고 있는 이웃집 사람들을 찾아가 눈물과 호소로 애원하며 들은 것을 얘기해 달라고 매달렸다. 이 과정에서 목격 아동의 엄마로부터 어제 오후 ‘갑’의 집 쪽에서 남자 비명소리가 들렸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급기야 과출소에 아빠가 살해된 것 같다는 신고를 하게 된 것이다.

시신 없는 살인사건 수사, 명(明)·암(暗)

이 사건의 최초 신고는 현장에서 폭행 정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 살인사건이 아닌 - 그 이후 가출 혹은 실종 정도의 개념으로 과출소에 신고되어 사건 발생 3~4시간 후인 밤 8시경에 형사들이 현장에 입장하여 수사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하였고, 아니 더 솔직히 얘기한다면 폭행이 있었다고는 하나 살인사건일 것이라는 판단을 전혀 못했기 때문에 가출 정도로 안이하게 생각하고 대처했었던 것이었다.

7) 화성 ‘시신 없는 살인’ 피고인 혐의 전면 부인 “집주인 실종 안타깝지만 난 몰라”

2015-09-02, 경기신문 및 경기 각 지방지

물론 ‘을’의 가족도 형사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는 않았고 몇 시간 후면 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이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다음 날도 갈 곳이 전혀 없는 ‘을’이 돌아오지 않자 ‘을’의 가족들은 불안해졌고 살인 의심 신고를 받은 형사들은 현장 주변을 빠짐없이 수색하며 탐문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전술한 5세 아동의 목격 진술, 빨래 널던 이웃집 아주머니의 목격 진술, 인근 슈퍼 주인의 진술, ‘을’의 가족의 추가 진술(가족들 모르는 곳에 가서 하루라도 잠을 잔 적도, 잘 곳도 없다 등)을 접하면서 아차! 하는 느낌⁸⁾이 들었고 그때 서야 영장을 발부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살인 용의자인 ‘갑’의 집안 뒤뜰 담장 밑에서 ‘을’의 손목시계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웃의 시선을 피하고 외부로 통할 수 있는 지점에 피살자의 손목시계가 떨어진 것으로 보아 사체를 담장으로 넘겨 차나 경운기 등에 신고 모처에 유기했을 것으로 판단, 담장 너머 공터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공터에 재배 중인 호박잎 등에 묻어 있는 미세한 혈흔을 발견하고, 혈흔을 감정한 결과, 피살자 ‘을’의 혈흔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우발 살인사건 수사로 급전환되면서 집안 곳곳을 재수색하였으나 지지분한 집안 분위기와 판판으로 살인 추정 장소인 앞마당이 나뭇잎 하나 없이 깨끗이 청소되어 있고 수돗가와 부엌도 말끔히 물청소 되어 있었다. 이에 루미놀 시약 분사 감식(지방 경찰청 현장 감식)을 하여 그 결과로 양성반응은 나왔으나, 혈흔 확인에 실패하는 등 특별한 단서를 찾지 못하게 되었다. 살인 용의자인 ‘갑’은 - 집안의 부엌, 수돗가 등을 말끔히 청소한 이유에 대해 집안 다른 곳 분위기와 안 맞는 점을 지적하며 - 돌출적 질문에도 안색 변화나 당황함 없이 키우던 개를 자주 잡아먹어 물청소를 했다는 대답으로 일관하며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리드 테크닉(Reid Technique) 활용 실패]

8) 컴퓨터 만능시대에서 직감은 비과학적·비이성적·불합리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지만 직감은 수년·수십 년에 걸친 노력과 경험의 산물로써 사물의 이면과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관찰력+추리력)
역사상 위대한 발견·발명은 대체로 직감과 통찰력의 산물!
논리와 이론은 본질 파악에 시간이 걸리지만 직감은 순간과 찰나에 본질 파악!

- 필자와 「현장이 답이다」의 다카하라 게이치로 견해

직감은 때로는 그 어떤 증거보다도 확실! - 명탐정 설록 홈즈

그래서 사건 발생 3일째부터는 살인사건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해 목격자에 대한 추가 진술 확보에 주력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순순히 진술에 응하던 목격자들이 정작 진술 조서를 작성하려 하자 경찰서 출석을 거부하였고 특히 가장 확실한 목격자인 5세 아동의 부모가 진술을 거부하여 살인사건 피의자 특정마저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이면에는 경찰서 출석으로 인한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닌 살인 용의자인 ‘갑’에 대한 공포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사이코패스적⁹⁾ 성향 ‘갑’이 그간 동네 사람과 시비가 붙으면 죽기 살기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못살게 굴어 마을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어 있었던 것이었다.

특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이 장기적으로 미궁에 빠질 경우 그간의 소행으로 보아 ‘갑’이 진술인의 아이에게 해코지를 하고 진술인을 못살게 괴롭힐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었다.

더군다나 ‘갑’은 사건 직후 옆집 2층에서 빨래를 널던 아주머니, 동네 슈퍼 아주머니, 인근 빌라 3층 옥상에 있던 학생(‘갑’의 집 마당에서 할아버지, 아저씨, 머리를 뒤로 묶은 사람이 싸우는 것을 봤다는 참고인 진술조서 협조) 등 예견되는 주변 목격자들을 대상으로 쇠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무언의 공갈 협박 작전(진술하려면 해봐라. 시체가 없으니 나는 나온다는 식)에 돌입하였으며 목격 아동 아버지의 직장(공개된 영업장)에까지 찾아가 정면에서 침묵하며 응시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서울에 사는 큰딸까지 불러와 가족의 결속력을 과시하는 가운데 6·25 때 사람을 수없이 죽여 사람 하나 죽여 없애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협박성 언동을 흘리면서 목격자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해 들어갔다.

9) 사이코패스: 상대방의 고통, 분노 감정에 대한 공감이 전혀 없어, 죄책감 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공포감을 주는 행동을 하고 되레 성내는 사람

그런데 형사들은 이런 주도면밀한 살인 용의자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만만히 보고 “용의자 가족 중 누군가가 목격자 진술을 들이대면 볼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긴급 체포 후 사체 미발견이라는 벽에 부딪혀 석방, 다시 체포영장으로 체포 후 역시 석방을 반복하는 사이 용의자와 그 가족의 철저한 묵비권 앞에 무력감만을 드러내고 말았다.

확실한 심증과 물증과 목격자가 있는 명명백백한 살인사건(2011년 이후 판례)임에도 살인 용의자와 그 범죄 가족의 사체유기, 증거인멸에 경·검이 여지없이 놀아나고 있었다.

아! 조금만 빨리 수사에 착수하였다면... 범죄 가족의 실체를 조금만 빨리 알았다더라면, 특히 5세 목격 아동이 할아버지와 누나(?)가 아저씨를 죽였다는 말의 의미를 보다 일찍 깨닫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있었다.(수사 결과 아동이 본 누나는 ‘갑’의 아들이었으며 그 아들은 여자처럼 갈색 머리를 뒤로 묶은 헤어스타일과 유니섹스 복장 등 정면에서 유심히 보지 않는 한, 특히 판단력이 미숙한 5세 아동이 순간적으로 보았을 때 누나로 본 것은 진술의 진실성 여부를 논할 가치조차 없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다. 형사들도 형사계에서 조사받는 뒷모습만을 봤을 때 여자로 봤으니...)

어쨌든 경찰은 수사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갑’과 같이 사는 막내딸 그리고 서울로 출가한 큰딸을 수사하는 사이, 그 당시는 혐의가 없어 형사들의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던 범인의 아들에게 사체를 인멸할 시간만 내준 꼴이 되고 말았다.

주민 여론을 취재한 지역 언론까지 ‘갑’을 유력한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는 가운데 ‘갑’은 경찰서에 두 번씩이나 체포되었다 풀려난 후 보란 듯이 동네를 활보하고 다녔고 이에 목격자와 동네 주민들은 점점 공포에 움츠러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지방청에서는 범인을 못 잡아도 좋으니 팔순 노인을 짜다가(취조하다) 사고 치지 말라고 하는 등 힘 빠지는 소리나 해대니 답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울먹이며 다 이야기하겠다는 반응을 보이던 ‘갑’의 막내 딸이 엄마를 보고 나서 진술하겠다고 하여 만나게 해 줬더니 태도를 돌변하여 목비권으로 돌아서고...

이런 와중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에서 형사들이 얼굴 들고 다닐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던 중 피살자 ‘을’의 전(前) 세입자로 ‘갑’의 공갈·협박에 시달리다 두려움을 느껴 전셋돈도 못 빼고 타지방에 가서 살고 있는 독신 아주머니와 목격 아동의 부모를 비롯한 공갈 협박을 당한 모든 피해자의 진술을 확보하고, 사체는 못 찾았지만 관례에 의해 높은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목격 아동의 살인장면(범인) 특정 진술을 확보해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궁극적으로 2002년 당시에는 시신 없는 살인사건은 사실상 기소할 수 없었다. 즉 ‘심증은 가나 물증이 없다’는 사법 논리에 밀려 살인죄로 기소하지는 못하고, 특수 협박 및 공갈 등으로 기소하여 법원이 이례적으로 팔순 노인을 구속시키는 사법 사상 초유의 판결을 견인했으며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 장애) 팔순 노인, 즉 ‘사실상 살인범’에 대한 일말의 응징이라는 상징적 성과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언론이 이슈화시키자 2011년 이후 대법원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이전과 달리 3차례나 유죄 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 이유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간접 증거, 정황 증거, 목격자 등 여러 정황에 비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는 것으로 즉 사체 미발견 등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으나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 인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13.07.11, 대판).

살인 일부가 불명확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해 공소 사실을 특정할 수 있어 공소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 할 수 없고 경험칙과 논리 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략)... 특히 피해자 시신이 없고 범행 장소를 정확히 밝히지 못한 시신 없는 살인사건처럼 간접 증거가 개별적으로 범죄 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에 의해서 범죄 사실이 인정된다(2011.12.02)는 논리에서이다.

이렇게 볼 때 본 사례는 명백히 살인죄로 기소했어야 맞는 것이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지 못한 것은 수사를 지휘한 검찰의 수사 오류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¹⁰⁾

10) 2014 국정감사에서 경찰 및 검찰의 증거 확보를 위한 능력 향상 노력 미흡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아동 진술의 진실성과 그 한계(2005, 연세대 등 학계 최초 보고)

사건·경험·목격에 대한 아동의 기억은 성인에 비교해 우월한 것인가, 아니면 열등한 것인가? 아동이 경험·목격한 것을 시간이 흐른 후에 정확히 표현하고 기술할 수 있는가? 즉 아동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서는 상반된 견해¹¹⁾가 있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 능력은 증인 자신이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그 기억에 따라 공술할 수 있는 정신적인 능력이라 할 것이므로, 유아의 증언 능력에 관해서도 그 유무는, 단지 공술자의 연령 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의 지적 수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함은 물론 공술의 태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경험한 과거의 사실이 공술자의 이해력·판단력 등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범위에 있는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제1심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 된 피해자인 유아의 증언 능력을 인정하였다.¹²⁾

본 사례에서는 6~7미터 옆집에서 큰소리가 들리자 5세 아동이 장난감 망원경으로 ‘갭’의 집을 보게 되었고 ‘갭’의 부자가 ‘을’을 돌로 내리치는 적나라한 살인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그러고는 바로 엄마에게 “엄마, 옆집 할아버지하고 누나가 아저씨를 죽였어”라고 한 것은 목격과 진술의 동시성, 그 진술 대상이 엄마인 점, 목격 대상이 자주 보던 인물인 점, 특히 헤어스타일, 복장 등 여자 행색을 한 ‘갭’의 아들을 - 5세 아동의 관점에서 보이는 그대로 기억의 선입견이나 사전지식에 의해 채색되거나 왜곡되지 않고 - 여자로 본 점 등에서 5세 아동 진술의 진실성은 높다고 보여 진다.

다만 실제로는 남자인데 여자로 잘못 본 것은 5세 아동의 인지 능력의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간 판례나 학계에서는 유아의 증언 능력의 진실성에만 초점을 맞춰왔지 이렇게 유아 진술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본 수사 사례에서 보듯이 사건 초기 아동 진술의 진실성에만 매몰되어 남자를 여자로 특정하고 즉 집에 있는 아들은 배제한 채 두 딸에 대한 행적 수사에 치중하다가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수사망에서 벗어나 있던 ‘갭’의 아내와 아들이 사체를 빼돌릴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11) 박광배, 법심리학, 학지사, 2002, 109면

12) 대판 1999.11.26. 99도 3786.

Reid Technique(오감 관찰 기법)¹³⁾ 활용 실패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외로 말의 비중이 적다(19%)는 수사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는 리드의 심문 기법은 손짓, 몸짓 등 비언어적 행동이 차지하는 비율이 의사소통의 80%를 차지한다는 데 착안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범죄 용의자 행동 분석의 정확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리드 테크닉을 공식 수사 기법으로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인이 거짓말을 할 때는 특징적인 신체 현상이나 부자연스런 행동이 유발된다는 수사 경험에 입각하여 범죄 용의자에게 범죄 전·후 결정적 현상 등에 대한 돌출 질문¹⁴⁾을 던지고 안색·자세 등을 살피거나 하는 수사 기법은 이미 사용해 왔다.

다만 본 사례의 살인 용의자인 팔순 노인 ‘갑’은 확신범 성향을 보이는 자로서 6·25 때 사람을 많이 죽여 봐서 사람 하나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본인의 말대로 살인에 대한 죄책감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다. 리드 테크닉을 이용한 형사들의 송곳 질문에 안색하나 변하지 않고 정면을 응시하며 꼳꼳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오히려 과학수사를 하라고 받아칠 정도로 이른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을 정도의 냉혈인이었다.

재래식 화장실·부엌, 전등도 없고 그 흔한 TV 하나 없는 원시적이고 폐쇄된 환경의 우두머리(가장)로 평생을 살아오다 보니 형성된 이상 성향으로 보인다.

‘갑’의 범죄에 가담한 아내와 아들도 ‘갑’과 똑같은 냉혈인 적 이상 성향을 나타내었고 다만 폐쇄된 집을 벗어나 바깥 외출을 가장 많이 한 막내딸은 경찰서 현관에서 피살자 ‘을’의 딸이 울고 있는 장면을 보고는 안색이 상기되고 동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13) 오감(five senses) 즉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중 특히 시각, 청각, 촉각에 의한 관찰 기법
‘그저 눈으로 보는 것은 관찰이라고 할 수 없다.’
‘이면을 꿰뚫어 보는 예리한 관찰력은 베일에 싸인 어떤 범죄라도 해결할 수 있다.’

- 명탐정 셉투 홈스

14) 도스토예프스키, 『죄와 벌』의 콜드 리더(Cold reader) 포르피리의 맹점 심리를 이용한 수사 기법에서 유래. 이후 인기 외화 ‘형사 콜롬보’에서 주연 피터 포크가 결정적 현상들을 돌출 질문함으로써 범인의 방어 심리·알리바이를 파괴하고 범인을 검거하는데 활용

막내딸은 조사 과정에서도 형사들의 설득과 권유에 얼굴이 빨개지거나 말이 끊기거나 시선을 피하거나 하는 등 리드 심문 기법에 반응을 보였다. 그러던 차에 엄마를 보게 해주면 진술하겠다는 말에 엄마를 보도록 한 것이 사이코패스적 성향을 가진 엄마의 강압이 작용되는 기회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 막내딸도 묵비권을 행사하게 되었고 결국 막내딸에 대한 리드 심문 기법 활용도 실패로 돌아갔다.

막내딸의 엄마 면회 요구를 차단하고 9단계 리드 심문 기법을 보다 전문적으로 활용했다면 사건 해결이 가능했다고 보인다. 즉 막내딸은 살인 현장에는 없었지만, 살인 당시는 대낮으로 이웃집을 의식, 사체를 외부로 빼돌릴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적어도 사체는 막내딸이 귀가한 이후 시간대에 외부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리할 때, 원시적이고 폐쇄적인 가족의 특성상 전 가족이 말을 맞춘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막내딸도 사체 유기 장소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정도 사건의 전모를 알고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게 사건 해결 외 제공할 수 있는 수사 서비스

피해자에 대한 최대의 수사 서비스는 사건 해결이겠지만 장기 미제 사건 혹은 실종 사건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사건 해결 외에 피해자에게 장기적으로 수사 상황, 수사 의지 등을 설명해 주는 수사 서비스는 대단히 중요하다.

본 사례에서도 피살자의 모, 자녀, 전처, 여동생, 매제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사체는닉·유기가 예상되는 장소에 대한 수색을 요청해 왔다. 물론 경찰이 잠수부, 수색견을 동원하여 발생 장소 인근은 물론 차량 등 이동을 감안, 원거리에 있는 저수지·산야·공가 등 대다수 용의 지역을 수색하였으나 피살자 가족들이 이에 대한 재수색 및 제3의 장소에 대한 수색을 요청해 온 것이다. 이때 수색에 지친 형사들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을 자제시키고 찾을 수 있다는 신념을 각인시키며 수사과장 지휘 아래 군견, 잠수부, 전경대 등을 동원하여 산악 수색, 저수지 추가 수색에 임하였다. 심지어 피살자 가족들이 무당에게 점을 보고 와 무당이 알려 준 장소에 대한 수색 요구까지 들어 주었다. 그러나 시간은 흘러가고 사체가 발견되지 않자 검찰, 지방청에서는 실종

사건화 하자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

형사들의 의욕이 상실되고 수사과장 마저 의지가 약해지면 피살자 가족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는. 그래서 경찰서장, 지청장, 지원장 앞으로 보낸 피살자 딸(여대생)의 눈물 어린 탄원서¹⁵⁾를 형사들에게 재각인시키고 특히 완전 범죄란 있을 수 없고 수사 의지 부족·수사 기법 부족에서 완전 범죄화가 가능해지는 현상을 강하게 주시시켰다.

일일수사계획에 피살자 측 의견을 포함시키고 피살자 가족에게 수사 결과를 설명해 주는 등의 수사 서비스에 피살자 가족들은 사체를 발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을 원망하거나 수사를 불신하거나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장기간 경찰이 최선을 다해줘 고맙다는 말도 듣게 되고 특히 살인 용의자 ‘갑’이 살인죄로 기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인 전후의 공갈·협박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구속시킨 것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내었다.

필자는 이 사건을 ‘사법 정의 구현과 실종 사건화’의 모순 고발이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세상에 알리는 동시에 공소시효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리고 2011년 이후 사체 없는 살인 사건 유죄 판결¹⁶⁾이 잇따르는 현실을 적극적으로 감안하여 강도 높은 재수사(검찰청지청 기록 보존계 열람·등사 재수사→기소→국민참여재판)를 촉구한다.

이는 사건 해결 외 수사 서비스가 아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조속히 탐정을 법제화시켜 공인 탐정에게 의뢰해서라도 반드시 그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¹⁷⁾

아울러 본 지면을 빌어 전국적으로 -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 2000년 이후 살인 추정 실종 사건에 대한 재수사도 강력히 촉구하는 바다. 이 역시도 경찰력 한계(인원·예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 박근혜 정부의 신직업인 공인 탐정이 나설 수밖에 없다. OECD는 그렇게 하고 있다.

15) ‘아빠를 죽인 짐승 같은 노인과 그 범죄 가족을 처벌해 주세요’ - 피살자 딸의 탄원서 제목

16) 2008.4 친한 동생이 투자금 반환을 독촉하자 살해 암매장, 대법 징역 13년 선고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신청 결과 배심원 9명 전원일치 유죄 판결(13년 이상)
2010.6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노숙자 살인 후 보험 가입자인 본인 사망으로 위장
대법, 항소심 무죄에 대해, 유죄 취지 파기 환송, 부산고법 1심대로 무기 선고
2012.8 회사 사장 살해 시신 없는 살인 사건, 12년 만에 공모 살인 2명 모두 유죄
대법, 징역 4년 원심 확정

17)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날카로운 관찰과 추리로 경찰이 이미 포기한 미제 사건을 해결... 관찰과 추리로 어떤 비밀이든 밝혀 낼 수 있다.
- 명탐정 설록 홈즈

이제 필연적으로 등장할 대한민국 공인 탐정을 두려워하는 자는 과연 누구일까? 이와 같은 장기 미제사건 범인은 물론 무고범(상습 고소·고발 등), 생활범죄꾼, 재심 대상 사건 진범, 개미 투자자 울리는 코스피·코스닥 부실기업(찌라시 의존 기업) 등 일일이 나열하자면 지면이 부족할 것으로 본 저 인생 2막 ‘명탐장’ 편에서 후술하겠다.

당시 검찰 수사 마인드 허와 실

검사의 현장 검증은 지방청 감식이 있던 다음 날 낮 시간대였는데 첫 일성이 ‘시내 한 가운데 이런 음산한, 귀신 나올 듯한, 움막집 형태 가옥이 있었나’ 하는 것이었고, 피의자 특정의 결정적 열쇠를 낀 5세 아동 목격자의 목격 위치·목격 시간대 등이 경찰의 보고와 일치하여 사체만 찾으면 구속시키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담당 검사의 현장 검증 결과였다.

그러나 사체가 발견되지 않고 시간이 흐르자 살인 사건이 아니니 특별히 지휘 받을 사건도 아니고 일단 경찰 자체적으로 실종 사건¹⁸⁾으로 처리하던지 하면 될 것 아니냐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

말하자면 사체가 없으니 살인 사건으로 특정지을 수 없는 것이고 2002년 당시에는 실종 사건으로 처리되었던 수사 관행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대다수 형사들의 수사 의지는 상실되었고 심지어 일부 형사는 검찰의 판단이 현실적이라는 데 공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러나 뻔히 살인 사건인 줄 알면서 경찰과 대책을 논의하고 지휘하던 검찰이 한발을 빼고 경찰이 알아서 실종 처리하라는 식의 마인드는 당시였으니까 가능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18) 우리나라 실종자 수: 2009~2013년까지 5년간 접수된 성인 실종(18세 이상) 25만 7천 명 중 현재까지 미 발견이 2만 2,842명으로 세계적 수준이다. 미 발견은 생사가 불분명한 상태로 시신 없는 살인 사건에 연루된 실종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음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사례 시기인 2002~2003년 실종자수는 2,781명이다.(경찰청 전산 자료)

세월호 기관장 박○○, 시신 없는 살인 사건, 살인죄 징역 30년 선고

2014.04.16. 세월호 침몰 과정, 부상 동료 2명 외면 도주 및 유기 혐의

만에 하나 이 사건이 실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살자 가족이 누군가에게 대항시킨다면 불법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조사업자의 신용정보조사 외에는 누구든지 특정인의 소재를 탐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후배·후학에게 드리는 팁

- ★ 본 사례는, 2005년 후반기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과정에 출강한 이용혁 교수(건국대 경찰학과)의 기말 리포트 평가에서 “이렇게 훌륭한 수사 사례는 처음 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A+를 받은 생생한 수사 지휘 사례이다.
- ★ 경찰이나 탐정이나 사건 해결의 키는 현장 자료수집에 있다 할 것이다. 공인 탐정이 법제화되면 탐정의 - 공권력 대비 - 기초 사실조사 우월성으로, 사고 현장자료 수집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과 탐정의 협업은 경찰 기소의견 송치사건에 대한 검찰 무혐의 처분 감소 및 시신 없는 살인사건 등 장기 미제 사건 해결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15. 07.24, 2000년 이후 발생 사건 모두 소급 적용, 태완 군 황산 테러 사건 등 1999년 이전 사건은 영구 미제) 후에도 탐정이 법제화되지 않으면, 경찰의 업무 부담만 가중되고 장기 미제 사건 해결률은 미비하여 경찰 비난이 가중될 것임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¹⁹⁾

이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각 언론의 보도²⁰⁾도 21대 국회 탐정 법제화 불가피라는 필자의 일관된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다.²¹⁾

19) 전국 미제 사건 전담팀 모두 50명
 서울 11명 빼면 지방청 2~3명 꼴
 다른 사건 터지면 그 사건 지원 근무 불가피
 장기 미제 사건 끝까지 추적 사실상 불가능

20) 공소시효 폐지 관련 일선 형사 및 검사 출신 변호사 및 로스쿨 출신 경찰 인동
 “공 들어 장기 미제 사건 해결해도 현안 사건 해결과 동급으로 취급하니 힘 빠진다”
 “공소시효 폐지는 형사의 집념을 일깨우는 반가운 소식이지만 이렇다 할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 수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사건 발생 직후에 집중적 수사를 벌여도 얻지 못한 증거나 관련자 진술을 시간이 무한정 주어진다 해서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 든다”
 “변호사는 직업 특성상 한쪽만 편들어야 하지만 경찰은 사건의 실체에 더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다”
 “경찰 수사 현장 상황 녹록치 않은 것이 현실, 과연 얼마나 많은 장기 미제 사건이 해결될지 미지수”
 “찾은 보직 변경 등으로 한 사건 끝까지 추적 불가능”
 “정부가 강한 의지 갖고 수사 지원하지 않으면 공소시효 폐지해도 달라질 것 없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된다지만... 제도 뒷받침돼야”

2015-07-23, 동아일보
 2015-07-24, NAVER

21) 2000년 8월 전북 익산 택시기사 피살사건: 2003년 11월 포천 여중생 살인사건 등 장기미제 살인사건 및 2002년 필자의 수사지휘 사례인 ‘시신 없는 살인사건’도 수사 재개 가능성 열릴 듯

※ 19세기 말 영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마 ‘잭 더 리퍼’의 신원이 탐정 러셀 에드워즈의 집요한 탐문 수사 끝에 126년 만에 밝혀졌다.

‘잭 더 리퍼’를 연구해 온 탐정 에드워즈는 2014년 발간한 책 「네이밍 잭 더 리퍼」에서 폴란드 출신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가 진범이라고 밝혔다.

증거자료는 술이었는데 술은 당시 사건 현장을 지휘하던 심슨이 주워 보관했는데 심슨의 후손들은 이 술을 빨지 않은 채 상자 안에 보관해 왔고 이를 탐정 에드워즈가 2007년 경매를 통해 손에 넣어 살인 현장에서 수습된 술에 묻은 DNA를 추적한 결과 영국으로 이주한 폴란드 출신 이발사 아론 코스민스키가 진범이라고 밝혀낸 것이다.

경찰은 코스민스키를 용의 선상에 올려놓고 조사를 했지 증거불충분으로 진범으로 밝히지 못한 채 126년이 지난 2014.09.11.까지 최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여기서 잭은 불특정 남성을 지칭하는 것이며 리퍼는 칼잡이를 지칭한다.)

탐정사(매니저급/ 1급) 자료집

08

탐정규제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소송 성과

8. 탐정규제 신용정보법 위헌확인 소송 성과

1) 보도자료

“사설 탐정 도입하라”...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

“사설 탐정 도입하라”...국내 첫 헌법소원 제기

2016-07-25 07:45:29 연합뉴스

[앵커]

설록 홈즈 같은 사설 탐정, 영국이나 일본 등에선 하나의 직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엄연히 불법입니다. 사설 탐정 제도를 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누군가의 뒤를 쫓고 위치를 추적합니다. 이들은 누군가의 의뢰를 받아 움직이는 흥신소 직원들입니다. 현행법상 수사권이 없는 자가 남의 사생활을 조사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설 탐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정수상/전·현직 경찰관 공인탐정연구회 회장> “공권력이 사실상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국민들의 피해 회복이나 권리구제, 위해 방지를 위한 사실조사와 정보수집 이렇게...”

최근 실종자와 미아, 치매 노인 등이 늘면서 합법적인 탐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흥신소 등이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개인정보 등을 침해하는 사례도 많아 더욱 법의 테두리 안으로 끌고 와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달에는 사설 탐정 도입을 막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라며 처음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경찰도 사설탐정제 도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민간에 수사권을 넘기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아 사설탐정 도입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신용정보법 위헌심판 청구 연합 보도자료

헌법 소원 청구이유

본 청구인은 2016년 6월 30일 정년퇴임을 앞두고 —35년 경찰경력 중 20여년을 정보 수집 및 생산 그 외 10여년을 수사 생활안전 등에 종사한 경험을— 공권력 사각·소외 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과 특히 피해회복과 권리구제 및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에 애타는 많은 국민들의 답답하고 억울함을 풀어줄 탐정업으로 접목하고자 연구하던 중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 정보법)제40조 제4호 제5호, 제50조 3항 3호가 신용정보업자이외에는 미아·가출인·실종자·시기꾼 등 사람찾기를 업으로 하거나 탐정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일본 등 OECD와 견주는 탐정업을 준비하는 본 청구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이 심히 침해되고 있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임.

한편 2013년 3월 23일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ECD 33개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 등을 속히 도입토록 지시한 바 있어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법·제도 인프라 구축을 기다렸으나 4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탐정법의 정부입법 등이 지연되는 최대이유가 신용 정보 법의 상기 독소 조항임을 최근 숙지하고 특히 금융거래의 광범위성 때문에 신용정보범위가 무제한 넓어져 신용정보법 상기 조항이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 배치됨을 발견한 것임

현재 2016 헌마 473 사건 청구 이유 (추가)

청구인은 2016년 6월 30일자로 35년 경찰생활을 마치고 - OECD 경찰과 같이 - 정보 수집과 사실조사 및 위해방지 경험을, 공권력 소외지대와 사각지대 국민의 억울 답답함을 해결하고 생활 안전을 제고시키는 탐정 서비스업으로 접목시키고자 2016-06-13 탐정업 로고와 캐릭터 등 상표권 특허출원 확정공고까지 받았으나(특허청장 제 41-0362253호, 대체적 분쟁해결 서비스업등 15건 등록) 신용정보법 제40조가 이를 원천봉쇄하고 있어 2016년 7월1일 ~ 현재 실직 상태에 있습니다.

이는 수십만 퇴직 경찰은 물론 현직 경찰 및 탐정 관련학과 졸업생들도 같이 겪는 사

레이며 이 중 극히 일부 퇴직경찰은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고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며 사실상 영업 중에 있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에 가깝다.

그런데 이 문제의 근원인 신용정보법의 근원이 일본 강점기 규칙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일제는 조선반도를 강점한 후 보부상이 조선반도에서 만주 독립군으로 일본 군사정보 및 조선의 동향을 전하고 군자금과 군수물자를 운반한다는 첩보를 입수하자 조선 초 부터 전국을 떠돌며 보파리상을 하던 보부상 조직을 와해시키고 동향을 감시하는 가운데 1911년에 이르러 조선 총독부령으로 신용고지업 취체 규칙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이는 신고된 신용업자이외에는 누구도 정보 수집이나 사실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보부상의 독립군 지원 역할을 차단하는데 보다 숨은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反 대한민국적인 일제의 신용고지업 취체규칙이 → 해방 대한민국에서 → 1961년 흥신업단속법으로 → 1977 신용조사법을 거쳐 → 1995년 신용정보법으로 이어진 가운데 → 2016 현재 신용정보법 제40조 4항 5항이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대한민국 탐정업(법)을 사실상 가로막는 독소조항이 되기에 이르렀다, 즉 일제가 조선 탐정(보부상)을 와해시키고 감시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 100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공인 탐정 활동을 가로막는 법으로 오히려 강화된 가운데 헌법상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직업 선택의 자유가 심히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탐정업이 불법으로 규제됨으로 인해 - OECD 국민 대비 - 피해회복 및 권리구제와 위해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사실조사 서비스를 원하는 국민들의 알 권리와 행복 추구권이 침해되고, 증가하는 실종자·미아·치매노인·가출인 가족은 직장과 샵터를 떠나, 스스로 탐정이 되어, 전국을 헤매고 있어 이들의 가족붕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탐정·경찰 관련 학과 등 청년 학생, 수십만 퇴직 경찰, 정보·수사 업무 경력자, 민간탐정자격 취득자 등 창업 준비 중인 국민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심히 침해되고 있는 가운데 공권력 사각·소외 지대의 급박하고 절박한 국민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탐정을 찾음으로 인해 불법의 공범화, 개인정보 유출 심화, 공갈 협박의 대상화 및 의뢰비와 추가 비용 손실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행복추구권은커녕 국민의 안전마저 심히 위협받고 있다.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전문가인 정보·수사 파트 경찰관과 위해방지 전문가인 정보·경비·생활안전·교통 파트 경찰 퇴직자는 35년여 국비로 닦은 경험과 전문성을 사장시킨 채 대다수가 실직 상태로 접어들며 퇴직 임박한 현직 경찰들도 대부분 패닉 상태에 빠져든다.

이유인 즉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 전문가라는 자부심을 연결시킬 대표적 직업인 탐정이 봉쇄돼 있어서 인생 2막이 시계 제로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공무원은 재직경험이 퇴직 후로 연결되는 통로가 다 마련돼 있는데 경찰공무원에게만 원천 봉쇄되어 있다.

평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는 경찰공무원에게는 공염불이다. 이는 퇴직 경찰만의 문제가 아닌 인생 2막이 없는 현직 경찰 사기저하 및 치안 부실화로 인한 국민 피해 등 범국가적인 문제로도 비화되고 있다.

OECD 34개국에는 있고 대한민국에만 없는 탐정업!

청구인 등 수 만 명의 창업을 가로막고 있는 신용 정보 법 제40조 독소 조항의 위헌 심판을 청구합니다.

대한민국 법치의 마지막 보루인 헌재에서는 이런 국가적·국민적 피해를 방치 내지는 조장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 40조 독소 조항의 위헌성을 직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신용정보법 제40조 4, 5는 공정한 고지 및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집행의 방지라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하고 있어 이의 위헌 여부도 가려주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8일 청구인 정수상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보충서

사 건 2016헌마47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4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수상
국선대리인 변호사 송두환

위 사건의 국선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보충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청구취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문 제4호, 제5호, 제50조 제3항 제3호는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해된 권리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제1항 평등권

침해의 원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후문 제4호, 제5호, 제50조 제3항 제3호

청구이유

1. 사안의 개요

- 가. 청구인은 1980. 5.경 경찰공무원(9급)으로 최초 임용되어 서울 마포경찰서 등지에서 경찰업무를 수행하고, 2009.경에는 종로경찰서 정보과장으로 근무하고, 그 후 총경으로 승진한 후 강남경찰서 감사관, 경북 의성경찰서장, 대구경찰청 생활안전과장 등으로 봉직하였으며, 2016. 6. 30. 정년퇴임하였습니다(참고자료 1. 경력증명서).
- 나. 청구인은 경찰관으로서 36년간의 근무기간 중 20여년을 정보수집 업무, 범죄수사 업무, 생활안전 업무에 종사하였고, 따라서 정년퇴임 후 민간인 신분이 되게 되면 그 동안 쌓은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른바 탐정 업무 등을 영위함으로써 공권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민들의 피해구제, 권리회복, 위해방지 등 활동으로 봉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습니다.
- 다. 그러던 중 청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줄여 씁니다) 제40조 후문 제4호, 제5호, 제50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줄여 씁니다)에 의하여 이른바 탐정업무가 원천적으로 금지되고 있고, 또한 정보원, 탐정, 기타 유사한 명칭의 사용도 금지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라. 그런데, 그 동안 몇 차례에 걸쳐 국회에서 경비업법 개정안 또는 탐정업법 제정안 등의 형식으로 탐정업을 허용, 관리하는 내용의 입법발의 시도가 있었고, 2013. 3. 23.에는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OECD 33개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만 없는 탐정 제도를 속히 도입하도록 지시하였다”는 보도도 있었기에, 청구인은 조만간 관련 부처에 의하여 탐정업을 가능케 하는 내용의 법·제도 인프라 구축이 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 마. 청구인은 탐정업에 관한 규제가 조만간 풀리면 경찰관 퇴임 직후에 탐정업무를 개시하고자, 그에 관한 3종의 서비스 표를 미리 고안하고 특허청에 출원하여 서비스 표 등록원부에 등록하기도 하였는데(참고자료 2의 1 서비스표등록원부, 2, 3, 4

각 서비스 표 등록증), 그 이후 탐정업의 허용과 관련한 아무런 조치도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 바. 청구인은 2016. 6. 30. 경찰관의 직에서 정년퇴직을 하게 되었고, 청구인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할만한 다른 어떤 방도도 찾기 어려워, 최종적으로 경찰청에 ‘특허청 서비스 표 등록원부에 등록을 마친 탐정업을 개시할 경우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단속되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이른바 탐정업무는 금지되고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참고자료 3의 1 민원질의, 2 접수증, 3 민원회신).
- 사. 결국, 청구인은 이러한 교착상태의 근본원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이며,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받고 있음을 깨닫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2. 적법요건

가.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청구인은 경찰관의 직에서 정년퇴임한 현재, 그 동안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영위하고자 하는 탐정업을 이 사건 법률조항 때문에 직업으로서 선택,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이 청구인의 기본권침해가능성, 자기관련성, 현재성 등 요건을 갖추고 있음은 분명하다 할 것입니다.

나. 직접성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이른바 탐정업의 원천적 금지 및 정보원, 탐정 등 명칭의 사용금지 의무는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릴 필요 없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시행 자체로 직접 발생하는 효과이므로, 이 사건이 직접성의 요건을 갖춘 것 또한 분명합니다.

다. 보충성

이와 같이 법령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는 경우는 그 법령 자체의 효력을 직접 다투는 소송을 일반법원에 제기하는 길이 없고 별도의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바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은 보충성의 요건 또한 갖추고 있습니다.

라. 청구기간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위금지의무를 구체적으로 부담하게 된 것은 청구인이 경찰관의 직에서 2016. 6. 30. 정년퇴임한 후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구체적으로 의욕하게 된 때부터라 할 것인바, 이를 예측하여 2016. 6. 13.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의 요건을 갖추었음이 명백합니다.

마. 권리보호이익

청구인에 대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행위금지의무 부과라는 법률효과는 현재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은 권리보호의 이익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바. 소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 청구이유 추가 접수(2016-07-18)

탄핵심판 증인 잠적과 탐정 기고문(아래✓) 등

✓ 현재는 탄핵 심판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고 소재 불명으로 강제구인마저도 어려워지자 최후적 조치로 경찰에 소재 탐지를 촉탁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이 나오지 않고 잠적하자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

2017-01-15 CHANNEL A 뉴스 등

탐정사 자격관리 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간자격 발급기관 대한탐정연합회가 관리하는 생활정보탐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제2019-003312호) 자격검정(이하 검정) 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저비용 고효율)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험위원”이라 함은 출제위원, 감수위원, 관리위원, 감독위원, 채점위원 등을 말한다.
2. “답안지”라 함은 전산작업 또는 수작업에 의하여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3. “답안카드”라 함은 광학 문자 판독기로 채점되는 필기시험 답안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검정을 시행하는 생활정보탐정사(약칭 탐정, PDA) 민간자격관리기관 대한탐정연합회(KPDA) 소속 직원과 산하 관리단의 검정 관련 업무 종사자(시험위원 등) 및 검정응시자 등에게 적용한다.

제2장 업무구분

제4조(조직 및 검정업무의 구분) ① 대한탐정연합회(장) 산하에 사무총장, 사무1차장, 사무2차장, 검정시험관리단을 두며 관리단(단장 대한탐정연합회장) 산하에 상설 관리팀 및 비상설 출제감수위원, 감독채점위원을 두어 민간자격 검정업무 전반을 주관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
2. 검정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검정업무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시험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5. 검정시험문제의 출제·감수·인쇄·관리·운송에 관한 사항

6. 필기시험 답안지의 채점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

7. 검정사업 일반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장 검정기준 및 방법

제5조(민간자격의 취득) 생활정보탐정사 등록민간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대한탐정연합회 주관 검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자격종목 및 등급) 자격 종목은 생활정보탐정사이며 등급은 매니저급과 탐정사1급이다.

제7조(직무내용) ① 도난 분실 학교폭력 스토킹 등 살면서 부딪히는 비법률적 생활문제 해결정보를 지원하거나 공개정보수집·분석,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권력 소외(사각)지대의 개인이나 기업의 피해회복(권리구제)과 위기관리(위해방지) 정보를 지원하는 전문직으로 치안에 협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법을 엄격히 따른다.

② 등급별 직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자격명	등급	등급별 직무내용
탐정사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정보의 분석(추리) 종합 해석 및 판단서 작성
	탐정사1급 (PrivateDetective)	정보의 수집 평가(사실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8조(검정의 기준) 검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탐정사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집정보 → 분석 → 해석 → 판단 능력 수집, 평가한 정보의 신뢰도(사실부합여부) 타당도(목적부합 여부) 제고 및 보고서작성 지도 능력
	1급 (Private Detective)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탐정 관계법 숙지 OECD 탐정 개론 숙지 정보수집 및 사실조사 능력 보고서작성 및 보안관리 능력

제9조(검정 방법) ① 검정은 필기시험으로 시행한다.

② 필기시험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과목은 1차 탐정학개론, 탐정관계법개론, 2차 정보(증거)조사론, 정보분석 및 보고론 등 4과목으로 하되 매니저급은 1차 2개 과목 면제, 2차 2개 과목만 응시한다.
2. 시험형태는 객관식 사지선다형이다.
3. 과목별 시험문항 수, 등급별 시험시간 및 합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4. 시험 점수는 각 과목 각 문항 4점으로(100점 만점) 균등하게 부여한다.

[별표 1]

등급	시험과목	문항수	시험시간	합격기준	
탐정사1급 (PD)	탐정학개론	25문항	30분	전 과목 총합 평균 60점이상 합격(절대평가)	
	탐정관계법개론	25문항	30분		
	매니저급 (PM)	정보(증거)조사론	25문항		40분
	정보분석 및 보고론	25문항	40분		

제10조(응시자격) ①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등급	응시자격
매니저급 (Private Manager)	- 연령: 35세 이상(원칙) - 학력: 제한 없음 - 자격: 1. 본 종목 관련 저술경력자나 석·박사 논문 보유경력자 2. 경찰, 검찰, 군, 국정원, 경비업, 언론계 종사자 등 10년 이상 경력자와 행정사, 변호사, 법무사, 경비지도사 등 본 종목 관련 국가·민간 자격증 소지자 3. 본 종목 관련 해외 실무 10년 이상 경력자 4. 탐정사 1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과자 5. 정보·수사·생안·경비 경찰 및 특수경비 3년이상 경력자, 대한탐정연합회 임원 정회원 3년 이상 경력자 6. 서강대 등 최고위과정 수료자(3년제 과정 포함) ※ 원서접수 시 관련 공인(증빙)자료 제출자에 한해 응시자격 인정.(운영규정 제14조) 개인정보보호법 등 중대범죄 전과자 응시자격 불인정(선언규정).
탐정사 1급 (Private Detective)	- 연령: 18세 이상 - 학력: 제한 없음 - 자격: 제한 없음

제11조(검정의 일부 면제)

- ① 필기시험 1차 합격, 2차 불합격한 경우, 이후에 시행되는 시험에 있어서 연속 응시자에 한하여 1차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 ② 매니저급은 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제12조(합격결정 기준)

- ① 탐정사 1급은 필기시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 ② 매니저급은 2차 과목 평균 60점 이상자를 합격자로 한다.
- ③ 대한탐정연합회(KPDA) 주최 최고위과정(정규대학 평생교육원) 수료자 중 평가시험(입학 11주차 이후)을 통과(합격)한 자는 매니저급 자격을 부여한다.

제4장 수험원서

제13조(검정안내)

- ① 검정일시 장소, 검정의 종목, 자격등급별 제출서류, 검정방법, 시험과목, 수험자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검정안내서를 배포(게시)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 ② 관리단은 수험자로부터 검정시행에 관한 문의가 있을 때 정확하고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제14조(수험원서 등)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수험원서 및 등급(매니저급)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관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원서접수)

- ① 관리단(대한탐정연합회 중앙회)방문 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10시~ 17시)로 하고, 이메일 팩스 접수는 마감일 24시(자정) 한, 우편접수는 마감일 발송소인까지 유효하다.
- ② 수험표는 원서접수 후 교부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응시현장 교부를 원칙으로 한다.
- ③ 관리단은 원서기재 사항 및 등급별 응시자격 관련서류를 확인하고 접수받아야 한다.

제16조(수험번호 부여) 수험번호는 정기 수시 검정시험별로 접수 순위 혹은 지역별 등 적절하게 부여하며 온라인으로 사전 통보하거나 오프라인 응시현장에서 통보한다.

제17조(응시료) ①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이미 납부한 응시료의 반환은 홈페이지(www.kpda.net) 환불규정에 의한다.
- ③ 응시료는 관리단(대탐연) 공용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④ 검정응시료는 매니저급, 탐정사1급 각 50,000원으로 한다.

제18조(접수현황 및 수험자 파일보고)

- ① 관리단은 원서접수 종료 후 등급별 접수현황, 검정 수수료 내역 등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관리단은 원서접수 마감일에 수험자 연명부, 1차 필기시험 면제자 명부 등 수험자 파일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정시행자료 등의 게시)

- ① 관리단은 수험 일시장소 등의 시행 자료를 게시(홈페이지, 밴드 등)하여야 한다.

제5장 검정시행 준비

제20조(수험사항 공고 및 통지) 관리단은 원서접수 시 자격종목, 시험일시, 수험자 주의사항 (수험 당일 신분증 지참 등)에 대해 사전공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장 준비)

- ① 시험장 총괄관리는 관리단장이 한다.
- ② 관리단은 검정시험 시행에 적합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장 출제 및 보안

제22조(출제·감수위원 위촉)

- ① 시험문제는 생활정보탐정사 자격시험 문제집(서원각 6쇄 ~)을 근간으로 출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감수위원은 필요 시 위촉 할 수 있다.

제23조(출제·감수위원 위촉기준)

- ① 출제위원 또는 감수위원의 위촉기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찰 정보, 수사 기능 20년 이상 재직한 자
 2. OECD-탐정 자격증 소지자로서 20년 이상 경력자
 3. 해당 종목분야 저술 경력자(1000권 이상 판매 실적을 갖춘 자)
 4. 대학 등에서 해당 종목분야 20년 이상 연구 경력 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분야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제24조(출제문제의 감수)

- ① 시험문제 1차 과목은 관리단장과 감수위원이 공동으로 감수할 수 있고 2차 과목은 관리단장 단독으로 감수한다.
- ② 시험문제(100문)는 보안상 문제는행 전체(1100문~1200문)에 대한 사전 감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25조(출제문제 원고의 보안관리 등)

- ① 출제문제의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원고(과일)의 보안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관리단장은 출제문제 보안관리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7장 시험문제 인쇄 및 운송 및 보관

제26조(시험문제 인쇄)

- ① 시험문제 인쇄는 관리단장이 지정한 보안시설을 갖춘 곳에서 소정절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시험문제 인쇄 시에는 출입문과 창문을 봉쇄한 후 관계자 외에는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인쇄 장소 내에 모바일 기기는 소지할 수 없다.
- ③ 인쇄가 종료되면 현장에서 즉시 봉인한다.

제27조(시험문제지 운송 및 보관)

- ① 관리단장은 문제지 봉투 봉인 즉시 문제지 봉투를 인쇄 현장에서 직접 인수받아 운송 후 공개사무실이 아닌 독립된 별도의 보안사무실에 보관 및 시정 조치한다.
- ② 관리단장은 문제지 인수 시점부터 시험문제지 유출방지 등 시험문제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 ③ 문제지 봉투는 시험 시행 이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개봉할 수 없다.

제8장 검정시행

제28조(검정시험 사전점검) 관리단장은 정기시험 시행 전에 검정관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시험관리 업무를 최종적으로 점검한다(수시 단체 시험은 예외).

제29조(시험위원 전체회의)

- ① 관리단장은 시험시행 전에 시험위원 전체회의를 개최, 다음사항을 주지한다.
 - 1. 문제지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방법, 답안지 작성방법, 부정행위자 처리요령 등 감독위원 유의사항
 - 2. 등급별 시행방법에 따르는 수험자 유의사항 등

제30조(수험자교육)

- ① 시험실 감독위원은 배치된 시험실에 입장하여 수험자 유의사항, 시험시간 및 퇴실 가능 시간, 문제지 성명 기입 및 제출, 책상 위 신분증 비치, 시험 진행 요령,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답안지 작성요령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 ② 시험실 감독위원은 수험자에게 유사시 OMR 카드 채점을 위한 컴퓨터 용 필기구 사용을 고지한다.

제31조(수험자 확인) 시험실 감독위원(정 감독관)은 수험표와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대조하여 수험자의 본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동시에 결시생을 파악해 관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시험감독 배치 및 문제지 배부 등)

- ① 필기시험의 감독위원 배치는 [별표 2]와 같이 배치한다.
- ② 필기시험 문제지는 시험시작 전 예령과 동시에 배부, 수험번호 성명을 기재하고 문제지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시험개시 본령과 동시에 수험토록 하며, 적정 수험시간 경과 이후부터 답안지 작성이 끝난 수험자의 답안지와 문제지를 제출토록 한 후 퇴실시켜야 한다.

[별표 2] 감독위원 배치기준(수시 예외)

구분	시험위원	위촉인원	비고
필기시험(정기)	관리팀장	1명	필수
	시험실 감독위원(정)	1명	필수
	시험실 감독위원(부)	1명	필수
	시설관리위원	1명	재량
	시험장 감독위원	1명	재량

제33조(답안지) 감독위원(정)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지 회수용 봉투 표지에 수험 현황을 기재하고, 정·부 감독위원의 성명을 기명 또는 서명한 다음 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4조(문제지 등 회수) 감독위원은 시험 종료 즉시 문제지와 답안지를 회수 확인하여야 한다.

제35조(시험시행결과보고) 관리팀장은 검정시험 종료 후 이상 유무를 관리단장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장 시험위원의 위촉 및 임무

제36조(시험위원의 위촉) 필기시험의 감독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위촉한다.

1. 경찰 등 공안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2. 해외에서 해당 종목 관련 직종에 10년 이상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3. 해당 종목분야의 교육훈련기관에 10년 이상 재직하는 자, 재직한 자
4. 해당 종목분야에서 저술이나 기고 강의 등 연구 성과가 있는 자
5.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종목 분야 강사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 재직한 자
6. 10년 이상 해당종목분야 국외실무에 종사하는 자, 종사한 자
7. 기타 대한탐정연합회나 관리단장의 추천을 받은 자

제37조(시험위원의 임무)

①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리단장은 부여된 업무수행과 시험위원의 근무상태 등을 확인한다.
2. “관리팀장”은 시험장의 질서유지와 안정적 수험 분위기 관리 등 검정 전반적 업무를 담당한다.
3. “정감독”은 시험문제지, 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질서 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업무를 담당하며 응시자의 수험표와 신분증을 대조하여 날인한다.
4. “부감독”은 정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험준비 및 시험집행을 보조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5. “시설관리위원”은 시험장의 소음, 전기, 식수, 화장실 등 시험장 시설점검을 담당한다.

② 시험위원은 보안유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관리단의 임무 등) 일반적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시험문제지 시험장으로 운반
2. 시험실별 준비상태 최종 점검

3. 시험위원 보안서약서 징구(원칙)
4. 시험위원 전체회의 개최
5. 응시자가 지참한 신분증과 원서접수 내용 대조 확인
6.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 수량 확인

제10장 필기시험 채점

제39조(답안지 인계) 검정위원은 시험 종료 후 회수한 답안지를 매수확인 및 봉인 후 관리단에 인계하여야 한다.

제40조(답안지 이송) 관리단은 봉인된 답안지를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관리단 보안사무실로 이송하거나 OMR 카드 채점대행회사로 이송 할 수 있다.

제41조(채점과정) 필기시험의 채점은 관리단장 입장 하에 시험위원이 보안시설이 갖추어진 보안장소에서 채점(천공 수기)하거나 응시인원 등 감안하여 OMR 카드 채점 대행 회사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답안지 보관) 답안지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간 보관(보안사무실) 후 파쇄 처리한다.

제11장 합격자 공고 및 자격증 교부

제43조(합격자 공고)

- ① 관리단장은 검정종료 후 3일 이내에 합격자를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합격자를 공고할 때에는 개별통보(이메일, 모바일 문자 등) 혹은 대한탐정연합회(KPDA)홈페이지(www.kpda.net)에 게시한다.

제44조(자격증 교부 등)

- ① 자격증은 합격자 중 자격취득비 납부자 및 기본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교부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 참조)
- ② 자격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며 (최초 발급일 2020년 1월 1일) 발급 후 매 3년 마다 보수교육 수료 후 구 자격증은 반납하고 갱신된 자격증을 수령 함을 원칙으로 한다.(제49조 참조)

- ③ 자격증 분실 등 재발급 사유 발생 시 중앙회로 통보(신청)하여야 하고 재발급 비용은 자부담으로 하며 상습 분실자는 일정 기간 자격증 발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12장 부정행위자 처리

제45조(부정행위자의 기준 등)

- ① 응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정행위자는 당해 검정을 무효로 하고 3년간 검정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정지된다.
 1. 시험 중 타 응시자와 문제와 관련된 대화를 하는 자
 2. 시험 중 휴대폰 등으로 문제지와 답안지를 촬영하는 자
 3. 시험 중에 다른 수험자의 답안지 또는 문제지를 엿보고 자신의 답안지를 작성한 자
 4.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자
 5. 시험 중 시험문제 내용과 관련된 물건을 휴대하여 사용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자
 6. 휴대폰 부정사용자(정보검색으로 답안지를 작성한 자)
 7. 사전에 시험문제를 부정적으로 습득해 시험을 치른 자
 8. 다른 수험자와 성명 또는 수험번호를 바꾸어 제출한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자 및 치르게 한 자
 10. 기타 부정 또는 불공정한 방법으로 시험을 치른 자
- ② 시험 감독위원은 부정행위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퇴실시키고, 그 부정행위자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킨 후 서명 또는 날인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확인·날인 등을 거부할 경우에는 정 감독위원이 부정행위자 적발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부기하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날인한 후 관리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부정행위자 현장처리)

- ① 관리단장은 감독위원으로 부터 부정행위자 적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관계 증빙자료 등을 검토한 후 부정행위자에게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퇴실을 거부할 경우에는 112신고 조치하거나 고소 고발(업무방해)등 사법적으로 대응한다.

제47조(부정행위자 사후적발 처리)

- ① 수험자간에 성명, 수험번호 등을 바꾸어 표시하고 답안을 제출 한 때에는 양 당사자를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② 타인의 시험을 방해할 목적으로 수험번호 또는 성명 표시란에 타인의 수험번호 또는 성명을 기입하였음이 입증되었을 때에는 그 행위자만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한다.
- ③ 관리팀장은 부정행위 사실이 사후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적발된 증거자료를 첨부, 부정행위자로 처리하고, 해당 수험자에게 제재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문제지에 성명을 기입하지 않거나 문제지를 답안지와 같이 제출하지 않은 자는 부정행위자에 준하여 제재할 수 있다.

제48조(시험장 질서유지 등) 감독위원은 시험장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수험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중지시키고 퇴장시킬 수 있다.

1. 시험장에서 소란스럽게 하는 등 타인의 수험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2. 시험장 내의 각종 시설, 장비 등을 손괴, 절도하는 행위
3. 시험장 내 상호 시비 등 물의 야기 행위
4. 기타 시험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응시행위를 중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13장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

제49조(시기 및 방법 등)

- ① 검정 시험 합격 후 6개월 이내에 16시간 이상의 온·오프라인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나 코로나 등 감염병 발생 시와 천재지변 시, 응시자의 근무여건 등 감안하여 기본교육 전 과정을 동영상, 기본교육자료집, 전용밴드 게시자료 [탐정업 기고문 및 경찰청(직능원) 통보사항 등] 등에 기반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고 모든 기본 교육은 총 16시간 중 4시간에 해당되는 과제물(주제: 탐정업 창업구상/치안과 탐정/치안 3륜 중 택일 A4 1매 이상)제출로 종료된다.
- ② 서강대 탐정 최고위과정 청강(무료)은 지원자에 한해 개강 기간 중 가능하다.

- ③ 기본교육 불참 사유서는 관리단장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더라도 시험 합격 후 최장 1년 이내에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교육 불참 사유서(해외 장기체류, 장기입원 증빙서류 등)를 제출하지 않고 기본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는 생활정보지원탐정사 검정시험에 응시 합격하여야 자격증이 발급된다.
- ④ 취득비는 기본교육자료집 동영상 자격증서·ID카드 자격증·수료증서 발급비 자격개발비 등 소프트웨어 제작비 및 강사료 등 하드웨어 구축비 포함 총 30만 원이다.
- ⑤ 자격취득자는 원칙적으로 3년에 1회 보수교육(1일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현직 공무원과 미 창업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단 창업 시는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부 칙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8월1일)

검정업무 및 기본교육보수교육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업무처리기준 등을 명시한 생활정보탐정사 운영규정(민간자격검정 업무편람)을 공개한다.

(홈페이지 www.kpda.net, 게시 및 ‘생활정보탐정사 자격시험 예상문제’ 부록 수록)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9월1일)

경찰청 이행조건이나 본 운영규정 위반 시 자격증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19년 12월1일)

자격증의 최초 발효 시점은 2020년1월1일(최초의 보수교육은 2022년 하반기 시행)이며 매니저급 자격취득은 동시에 탐정사 1급 자격도 겸한 것으로 탐정사 1급 자격취득자 없이 단독 창업 가능.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 3월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시 정기시험과 비정기 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비정기 시험은 감염병 예방 규칙을 준수하고 본 규정 제8장~제11장 시험관리 규정에 준하는 적의

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11월1일)

감영병 확산 예방 등 정부지침(행정명령)을 준수하고 응시생의 안전을 고려하여 온라인 검정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온라인 검정시험은 시험 특성상 운영규정에 상당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부칙 (대한탐정연합회령, 2020년 11월26일)

신용정보법 제40조 탐정 금지 조항 삭제(1.9 국회 통과, 2.4 공포, 8.5 시행) 관련 경찰청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자격종목명 등 변경등록심사 결과 자격종목명이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생활정보탐정사(약칭 탐정, PDA)”로 /등급 명은 “탐색사1급” → “탐정사 1급”으로 각각 변경 시행한다.

부칙(대한탐정연합회령, 2021년 4월14일)

자격종목명 ‘생활정보탐정사’에서 ‘탐정사’로 변경등록

—끝—

「탐정사」 자격검정시험 수험서의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탐정이라는 용어 자체도 익숙하지 않던 때에 이 책의 저자는 탐정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및 중요성 그리고 각국에서의 운용실태 등에 대한 기고문을 다수 게재하여 탐정 불모지 한국에 탐정제도가 뿌리내리도록 그 기반을 닦아왔으며 신용정보법 위헌확인헌법소원을 거쳐 경찰청이 심사하는 탐정업 민간자격발급기관 등록을 받아냄으로써 불법 탐정 시대를 마감하고, 주무 부처의 등록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탐정 합법화 시대를 선도하는 등 국내 탐정업의 제도적 정착에 앞장서 온 가운데 작금의 21대 국회 ‘탐정업 관리에 관한 법률’ 입법도 견인하고 있다.

나아가 저자는 탐정제도에 대한 이해 및 탐정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등 자격취득을 위한 이론과 실무를 집대성한 「탐정사」 수험서를 2019년에 시중에 출간하였으며, 2020년 8월 5일 이후 국내 탐정 합법화 시대에 이르러 변화된 국내 탐정업 실상을 반영해, 2021년 이 책의 수정판(1차 2차 자격시험 분권)을 발간하게 된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책의 이론적 실무적 지식은 탐정 자격 취득을 위하여 필수적이며 탐정 활동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들이 망라되고 있어, 이 책을 통한 학습으로 선진 OECD 탐정을 따라잡는 원활한 탐정 활동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다고 보는 바이며

자고이래로 한 시대를 뛰어넘는 이론이나 제도의 발전은 누군가의 헌신적인 노력이 집적됨으로써 가능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을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탐정제도의 태동과 발전에 관한 한 이 책의 저자는 바로 그러한 아웃라이어라고 생각한다.

생활정보탐정사

모쪼록 이 책을 통하여 명탐정을 갈구하는 모든 학습자는 필수적인 이론과 전문적 정보조사 및 분석 보고능력을 습득할 것이고, 더불어 이 책은 한국 탐정제도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되는바, 이에 이 책의 출간을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 1월 4일

前) 서울경찰청장

現) 대한탐정연합회 명예회장 김정훈